

기본연구 | 25-04

# 디지털 융합 시대 정보통신법제의 통합과 재편에 관한 연구

권은정/김법연/김지훈/선지원/박상미

2025. 2





기본연구 | 25-04

# 디지털 융합 시대 정보통신법제의 통합과 재편에 관한 연구

권은정/김법연/김지훈/선지원/박상미

2025. 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서 언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혁신을 넘어 사회·경제 전반에 구조적 재편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5G, 클라우드,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핵심 기술들이 융합되면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산업 분류와 규제 경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와 데이터, 플랫폼과 인공지능이 융합되는 생태계의 등장은 산업 간 경계를 허물고, 기존 법과 제도의 대응을 촉구하는 새로운 도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와 디지털 기술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구축해 왔으며, 정보통신산업의 견고한 기반 위에서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행 정보통신 법제는 여전히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융합 환경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도적으로 포섭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법제도와 기술 생태계 간의 격차는 디지털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선도적 지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 거버넌스, 데이터 주권, 플랫폼 규제 등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법제 개편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본 연구를 통해 디지털 융합 생태계의 구조적 특성과 규범체계 전환의 필요성을 규명하고, 이를 반영한 정보통신법제의 재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권은정 연구위원이 총괄책임을 맡아 수행하였으며, 고려대학교의 김법연 연구교수, 법무법인 세종의 김지훈 수석전문위원, 한

양대학교 선지원 교수가 협동 연구진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본 연구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규제 철학과 거버넌스 모델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도 혁신과 안전, 효율과 형평을 균형 있게 추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규제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5년 2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원장 직무대행 김 정 언

## 목 차

서 언	1
요약문	9
제 1 장 서 론	13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4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5
제 2 장 현행 정보통신법 개관	17
제 1 절 국내 정보통신법제의 도입과 발전	17
1. 기술 발전과 상호 작용한 입법의 연혁	17
2. 디지털 융합 생태계와 정보통신법 체계 간 괴리	18
3. ‘규율 목적’에 근거한 법체계 재조명의 의의	19
제 2 절 시장 규제	20
1. 「전기통신사업법」 체계 고찰의 필요성	20
2. 전기통신역무와 사업자 분류 체계	21
3.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	26
4. 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역무, 그리고 탈퇴에 대한 규율	28
5. 통신역무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규율	46
6. 통신시장 경쟁 규제	50

7. 금지행위 규제	58
8. 통신시장의 설비 규제	68
<b>제3 절 이용자 보호</b>	<b>79</b>
1. 현행법의 체계	79
2. 주요 법률 규정 분석	83
<b>제4 절 특수 규제</b>	<b>105</b>
1. 분쟁해결제도	105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121
3. 전파법	129
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147
<b>제5 절 소 결</b>	<b>153</b>
<b>제3 장 디지털 융합 양상과 현행법의 대응 한계</b>	<b>155</b>
<b>제1 절 디지털 융합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특징</b>	<b>155</b>
1. 네트워크 융합	155
2. 서비스 융합	159
3. 지능화	166
<b>제2 절 시장 생태계와 법체계 간의 부정합성</b>	<b>174</b>
1.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의 부정합성	174
2. 데이터 보호 및 활용 관점에서의 부정합성	177
<b>제3 절 법체계 내의 부정합성과 한계</b>	<b>179</b>
1.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의 부정합성	179
2. 데이터 보호 및 활용 관점에서의 부정합성	182
3. 분쟁해결제도 관련 부정합성	185
4. 기타 특수 규제 관련 부정합성	186
<b>제4 절 소 결</b>	<b>190</b>

<b>제 4 장</b>	<b>디지털 융합 시장 규율을 위한 입법론</b>	<b>193</b>
제 1 절	비교법적 접근	193
제 2 절	법체계의 진화 양상	194
1.	이용자 보호 체계의 통폐합	194
2.	새로운 데이터 거버넌스 수렴	195
제 3 절	법적 수단의 쇄신	199
제 4 절	시사점	203
<b>제 5 장</b>	<b>정보통신법제의 새로운 지형 구상</b>	<b>205</b>
제 1 절	디지털 융합에 부합하는 법체계 통합 및 재판 방향	205
1.	법체계 융합과 행정조직 개편	205
2.	규제 기능 분담과 기술적 수단 활용	208
제 2 절	다원적·다층적 규제 거버넌스 모색	210
1.	디지털 융합 시대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210
2.	새로운 규제 거버넌스 수립 방향	210
<b>제 6 장</b>	<b>결 론</b>	<b>213</b>
	<b>참고문헌</b>	<b>216</b>
	<b>Abstract</b>	<b>225</b>

## 표 목 차

〈표 2-1〉	최초의 통신사업자 분류 체계 .....	22
〈표 2-2〉	1995년의 통신사업자 분류 체계 .....	23
〈표 2-3〉	1997년의 통신사업자 분류 체계 .....	24
〈표 2-4〉	현행 통신사업자 분류 체계 .....	25
〈표 2-5〉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특유한 규제 .....	29
〈표 2-6〉	기간통신사업 등록 세부 요건(시행령 별표1) .....	31
〈표 2-7〉	인수합병 인가 또는 인가 불허 사례 .....	57
〈표 2-8〉	현행법상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 .....	80
〈표 2-9〉	접근권한의 성격에 따른 고지 내용의 범위 .....	88
〈표 2-10〉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정보의 유형 및 규제 .....	90
〈표 2-1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주요 업무 및 겸직 금지 업무 .....	97
〈표 3-1〉	AIoT 응용 분야 및 사례 .....	166
〈표 3-2〉	LLM 또는 생성형 AI와 디지털서비스 융합 사례 .....	170

## 그림 목 차

[그림 2-1]	인터넷 생태계 구조도 .....	26
[그림 2-2]	경쟁상황평가 절차도 .....	52
[그림 2-3]	경쟁상황평가 평가 지표 종합 체계 .....	52
[그림 2-4]	인수합병 인가 절차 및 절차별 내용 .....	56
[그림 2-5]	금지행위 조사 및 결정 절차 .....	67
[그림 3-1]	인프라 구성 방식 .....	157
[그림 3-2]	디지털 시장 생태계에서 게이트키퍼 플랫폼과 데이터 흐름 ...	164
[그림 3-3]	FM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GAMMA 기업 현황 .....	173



## 요 약 문

### 1. 제 목

디지털 융합 시대 정보통신법제의 통합과 재편에 관한 연구

### 2.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국내 정보통신 분야 법령은 지난 약 40년간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하면서 ICT 시장 형성 및 성장세에 부응하여 누적적이고 추가적인 제정과 개정을 거듭해 왔다.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면서 각 법령상 규정을 삭제하거나 신설하는 입법 방식은 지난 10년에 걸쳐 급성장한 디지털 융합 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를 보이는 상황이다.

오늘날의 디지털 융합 서비스 생태계는 네트워크, 시스템, 서비스(앱/플랫폼), 데이터 층위로 구분되며, 각 층위 간에 데이터, 기술, 시장의 결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이다. 이와 같은 디지털 생태계 변화로 인하여 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별도로 규율하고 데이터 보호와 보안을 구분하는 분산된 정보통신법 체계는 동일 대상과 영역에 중첩된 규제를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동일 사업자에 대하여 다수의 법적 지위를 부여함에 따른 중복과 과잉 규제, 신유형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규율 공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 서비스 영역을 합당하게 규율하는 법적 수단을 재정비하는 법체계 쇄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전환 및 심화에 따른 네트워크, 데이터, 서비스 융합 양상을 기술과 규범 양 측면에서 파악하고, 정보통신 생태계 구조 변화를 법체계에 반영하는 차원에서 정보통신법제의 통합 및 재편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 3. 연구의 구성 및 내용

#### 1) 디지털 융합 생태계의 외연적·관계적 특징 분석

먼저, 기술과 서비스 간의 융합에 따라 네트워크-시스템-데이터의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경계가 허물어지고 데이터 활용과 유통에 따른 디지털 서비스 시장이 재편되는 현황을 파하고, 이와 동시에 인공지능 생태계가 가세하면서 사업자와 이용자 간에 형성되는 다면적 법률관계의 특수성을 식별하고 법적 함의를 밝힌다.

#### 2) 현행 정보통신법 체계 및 규정 분석

통신법과 정보법을 구분하는 이원적인 현행법 체계하에서 대표적인 관계 법률 7건(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데이터산업법, 단말기유통법, 전파법)을 중심으로 주요 규제와 제도를 검토하고 규율 목적에 따라 재분류한다.

아울러, 기간통신서비스 중심으로 시장 규제 영역을 확장해 온 통신법과 콘텐츠 규제 및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둔 정보법이 내포하는 법체계상의 부정합성 및 수단적 한계를 분석한다.

#### 3) 국내외 관련 입법 동향·사례 검토

디지털 융합 생태계를 적정하게 규율하기 위한 국내외 입법 논의와 사례를 비교 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글로벌 규제 입법의 경향을 도출한다.

#### 4) 정보통신법 체계 쇄신 및 규정 통폐합 방향 도출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재생산하는 흐름과 ‘네트워크-시스템-서비스-데이터·콘텐츠’ 영역 간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디

지털 융합 영역을 법체계적 시각에서 재조명한다.

시장 규제,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규제, 데이터 보호 및 활용 등 핵심적인 입법 목적을 기준으로 법이념적 기반과 규제 수단을 쇄신하여 법조문 체계를 재정립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결론으로서 디지털 융합 생태계의 구성 요소를 법적 규율 대상 차원으로 범주화하고 각 영역에 유효하게 작용하는 법적 수단을 체계화한 정보통신법제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 4.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디지털 융합 생태계 구조 변화를 실정법 체계에 반영하는 첫 단계로서 핵심 관계 법령에 분산된 정보통신법제의 통합 및 재편 방향을 제언하는 데 독자적인 의의가 있다. 현행 정보통신법 체계가 내포하는 중복되거나 사문화된 규정을 폐기하고 디지털 융합 시장에 부합하는 법적 규율 체계의 총론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당면한 입법 과제를 진행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연구의 배경

국내 정보통신 분야 법제는 지난 40년간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을 중심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유지하며 ICT 시장의 성장을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기술이 상호 결합되고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디지털 융합 생태계를 창출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기존 정보통신법제는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첩 규제와 규제 공백의 문제가 대표적이다. 예컨대, OTT(over-the-top) 서비스는 「방송법」(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과 「전기통신사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항)의 이원적 감독하에 놓이게 되어 수범자의 규제 부담과 규제의 비효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른 한편, 메타버스 내 가상자산 거래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 영역에서는 「단말기유통법」, 「전자금융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간의 간극으로 인해 규제의 공백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 밖에도 기술 발전 속도에 못 미치는 입법 지연은 언제나 문제로 지적된다. 2019년 데이터 3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AI 학습에 적용할 개인정보 활용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렇듯 기술 혁신과 법적 규율 — 특히, 규제 — 사이의 간극과 갈등은 오래된 현안이다.

오늘날의 디지털 서비스는 네트워크, 시스템, 서비스, 데이터 4개 계층의 분화된 구조를 띠고, 각 층위 간에도 AI와 클라우드를 엮고 융합이 활발하다. 이 경우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는 네트워크 인프라(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데이터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등), 콘텐츠 유통(정보통신망법 등)을 규율하는 개별 법령이

단편적으로 그러나 동시다발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 규제의 중복·과잉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지난 2024년부터는 생성형 AI의 상용화로 인해 데이터 수집·활용, 저작권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등의 쟁점이 한꺼번에 대두되고 있는데, 이처럼 새로운 디지털 융합 국면에 대하여 기존 법제의 추상적·분산적 조향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은 자명한 상황이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기획·수행되었다.

첫째, 디지털 법제 패러다임 전환의 뼈대를 세워야 할 필요성을 검증한다. 글로벌 디지털 플랫폼을 중심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EU의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2023), 중국의 「데이터안전법」(2021) 등 통합 규제 체계가 빠르게 확립되고 있다. 국내법상 디지털 시장 규제가 국내 플랫폼의 경쟁력을 약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 관련 법제 개편은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한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둘째, 4대 규율 목적 중심의 체계 재정립을 목표로 한다. 현재 분산되어 있는 정보통신 분야의 대표적인 7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데이터산업법, 단말기유통법, 전파법)의 주요 규정들에 대해 시장 규제,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구제, 데이터 보호 및 활용, 기타 특수 규제라는 네 가지 축을 기준으로 그 내용 및 한계를 검토하고, 디지털 융합 생태계와 법체계 간에 부정합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통합·재편하는 방안을 큰 틀에서 제시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

셋째, 규제의 효율과 효과를 담보하는 규제 거버넌스 개혁(정부조직 개편, 관계부처 협력 등을 포괄)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법체계 전환과 법적 수단의 쇄신을 꾀하고자 한다. 일례로,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능을 정부조직 차원에서 통합하여 중복 감독을 해소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제 개편 방향을 제시한다. 즉 사회 현실과 디지털 시장의 융합에 상응하는

규제 거버넌스의 개편이 불가결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 규율체계를 고찰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초연결 디지털 사회로의 진일보를 마주한 현시점에, 이러한 연구를 통한 정보통신법제 체계 재편 방안 제시는 단순한 규제 개선을 넘어 국가의 디지털 주권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로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기술 변화의 속도를 법제가 포용할 수 있는 이른바 ‘동적 입법 체계’를 선구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 강국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는 성장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디지털 기술의 상호 융합은 산업과 사회 전반에 근본적이고 유기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시스템, 데이터 간의 전통적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이들을 규율하는 현행 정보통신법제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부응하여 디지털 융합 생태계에 적합한 법체계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해 전개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법 체계는 통신법과 정보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하는 통신법은 기간통신서비스에 초점을 맞추어 시장 규제 영역을 확장해 왔으며,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대표되는 정보법은 콘텐츠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된 규율 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지능형 사물인터넷(AIoT) 등 신기술의 고도화 결과로 완전해진 디지털 융합 생태계는 이러한 전통적인 법체계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와 법률관계를 양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통해 연구를 수행한다. 첫째, 디지털 융합 생태계의 외연적·관계적 특징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기술과 서비스 간 융합에 따른 시장 재편 현황을 파악하고, 인공지능 생태계의 가세로 인해 형성되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 다면적 법률관계의 특수성을 식별하여 유

형화를 시도한다. 둘째, 현행 정보통신법 체계와 규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주요 법령의 입법 연혁과 현행 규정 및 제도를 교차 분석하여 누적적·보충적 입법 과정에서 발생한 체계상의 부정합성과 규제 수단의 한계를 도출한다. 셋째, 디지털 융합 생태계를 규율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국내외 입법 동향과 사례를 비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최종적으로 데이터의 수집·활용·재생산 흐름과 ‘네트워크-시스템-서비스-데이터-콘텐츠’ 영역 간의 유기적 관계를 반영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법 이념적 기반, 규제 목적 및 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법상 주요 규정을 재분류하고, 디지털 융합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을 유효적절하게 규율할 수 있는 법체계 설계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융합 시대에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정보통신법 체계 및 수단의 요체를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

이러한 연구는 단순히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급변하는 디지털 시장 생태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질서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디지털 융합에 따른 생태계 구조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법체계 내 규율의 공백 또는 중복을 식별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도출하는 본 연구는, 미래 디지털 시대를 관통하는 입법 프레임워크를 시사하는 것으로서 법 정책적 의미가 크다.

## 제 2 장 현행 정보통신법 개관

### 제 1 절 국내 정보통신법제의 도입과 발전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법제는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부응하여 꾸준히 변모해 왔다. 다만, 수차례 개정을 거쳐 입법적 도약을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대를 관통하는 디지털 ‘융합’은 디지털 ‘전환’을 초월하는 정보통신 생태계의 대통합 혹은 파격을 선보이고 있어 이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법 또한 대대적인 쇄신을 요하는 상황이다. 이하에서는 지난 40여 년에 걸친 국내 정보통신법제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현재 직면한 디지털 융합 시대의 도전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법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재확인한다.

#### 1. 기술 발전과 상호 작용한 입법의 연혁

통신망 확산으로 디지털 시대를 견인한 1980년대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의 제정을 필두로 국내 정보통신법 영역은 기술 혁신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발전해 왔다. 1990년대에는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제정되어 인터넷 보급 확대와 정보사회 기반 구축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정보통신망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기준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인터넷 확산 및 고도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2000년대를 지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및 파생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2007년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어 개인정보 취급위탁 시 이용자 동의를 의무화하는 등 보호 조치가 강화되었다. 2011년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독립적으로 제정되어 민간과 공공 부문을 아우르는 통합 규제체계가 구축되었고, 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관리 체계가 강화되었다.

2010년대 이후에는 빅데이터와 AI 기술의 부상에 대응하여 관련 법제가 다시 한번 변화를 겪었다. 2019년에는 ‘데이터 3법’의 개정을 통해 데이터 산업 활성화와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균형이 모색되었고, 2016년에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IoT와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실시간 데이터 처리 기준이 강화되었다.

## 2. 디지털 융합 생태계와 정보통신법 체계 간 괴리

이처럼 정보통신법제는 새로운 법적 수요에 부응하여 입법의 진척을 거쳐 왔으나, 여전히 이원적 체계를 고수한 채 기술 융합에 따른 디지털 생태계의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법체계 전환 없이 추가적·누적적 입법을 지속해온 결과, 규제의 유연성이 현저히 떨어질 뿐 아니라 규제 간의 충돌 문제도 빈번히 발생한다. 디지털 플랫폼이 증개·제공하는 미디어, 상거래, 운송, 헬스케어 등 각종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과 각 분야 법령의 중복 적용으로 사업자 지위가 모호해져 시장주체 간 경쟁 왜곡 현상과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유발하기도 한다.

기술 융복합 현상에 대응하는 입법 조치에 시간차가 발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다. AI를 법으로 규율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입법 논의가 EU의 「인공지능법(AI Act)」 시행으로 큰 폭의 진전을 이루었고, 국내에서도 「AI 기본법」을 비롯한 입법 작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무섭게 성장하는 생성형 AI와 관련하여 저작권 보호, 개인정보 보호, 피해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은 아직 미비하다. 즉 생성형 AI 서비스와 관련하여 새롭게 주어질야 할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지능정보화기본법」은 물론이고 「AI 기본법」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분절적이고 중복된 감독 체계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 부처 간의 정책 조율이 미흡하여 일관성 있는 규제 입법 및 적용에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주요 법률에 근거한 중복 감독 체계로 인해 사업자의 법 준수 비용이 가중되고 있는바, 장기적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경시할 수 없다.

### 3. '규율 목적'에 근거한 법체계 재조명의 의의

현행 정보통신 분야 다수 법령들은 각기 다른 규율 목적을 가지고 있어 중복 규제나 규제의 간극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규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시장주체(수범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및 규제를 가능한 범위에서 통합하고 시장 구조에 상응하게 법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보통신법의 양대 입법 목적으로 꼽을 수 있는 시장 규제와 이용자 보호 2개 범주로 양분하고, 우리나라 특유의 규제 체계를 떠는 「단말기유통법」과 「전파법」을 주요한 '특수 규제'로 포함시켜 다루었다. 현행법에 대한 이러한 분류 목적은 현행 법제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히는 규제의 중복 및 공백을 일차적으로 진단하는 데 있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 도출할 법체계 재편의 기준이자 방향으로 삼은 시장 규제, 이용자 보호, 데이터 관리, 특수 규제 4개의 규율 목적은 곧 정보통신법체 재정립의 초석이 되는 것으로, 규제의 효율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입법 메커니즘과도 관련이 깊다.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입법 메커니즘을 구상하는 접근법으로 첫째, 상위의 일반법 체계를 구축하여 4개 규율 목적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방안, 둘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소관 부처의 중첩된 기능을 통폐합하는 조직 개편 방안, 셋째, 규제 샌드박스 확대 및 사전 규제 비중 축소를 통한 유연한 규제 체계 구축 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 제 2 절 시장 규제

### 1. 「전기통신사업법」 체계 고찰의 필요성

「전기통신사업법」은 주로 통신사업의 기반, 즉, 유무형의 통신 하드웨어와 관련한 사항들을 담고 있다. 즉 ‘전기통신사업’ 자체의 관리를 비롯하여, 통신서비스의 내용과 관련한 부분을 포함하여 기간통신사업과 부가통신사업과 관련한 문제, 통신망 사용의 문제,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규제와 보호의 문제 등을 규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의 목적 역시 사업의 발전과 그에 따른 이용자 후생의 도모라고 선언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즉 서비스 내용에 대한 규율은 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보통신망법」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법적 문제 및 실무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은 주로 사업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내용에 대한 관리, 통신망의 안전 및 사이버 안전, 통신서비스 콘텐츠에 대한 문제, 통신 콘텐츠 문제 등이다.

**정보통신망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체로는 이와 같은 기준으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의 내용 분류를 할 수 있지만, 세부적인 영역에서는 중첩되거나 구별이 혼란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이용자 후생 보호와 같은 영역에서는 양 법 모두 같은 가치를 지향하고 있다. 더구나 통신서비스의 환경 변화에 따른 고찰도 필요하다. 지능정보사

회에서 이용자 개념의 변화, 5G 상용화 및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규제 방식 전환의 필요성, 데이터 활용에 따른 여러 문제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 전반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통신 기반과 통신을 이용한 서비스 사이의 규율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한 통신법 체계는 주로 통신망 관리에 규율이 치중되어 있고 양자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담고 있지 못하여, 개선이 필요하다.

## 2. 전기통신역무와 사업자 분류 체계

### 가. 정보통신역무의 국가 독점 시기

정보통신역무와 사업자에 대해 처음으로 규율하기 시작한 것은 1983년에 제정한 구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이다. 동 법은 ‘공중전기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기타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 이용을 위해 제공하는 사업자”라고 정의하고 있었으며, 공중전기통신사업자는 동 법에 따른 지정을 받아 역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통신역무 자체가 공행정 영역에 있었으며, 통신시장은 국가에 의한 독점 상태였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특별한 의무 분담이나 사업자 분류 체계가 불필요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데이터통신, 한국항만전화, 한국이동통신 등이 지정을 받아 통신역무를 수행하였다.

### 나. 정보통신역무에 대한 부분적 경쟁 도입 시기

1991년에 「전기통신사업법」이 제정되어 지금의 통신역무 분류 체계의 기본적인 원형이 구성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정 당시의 통신사업자는 정부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일반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아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던 ‘특정기간통신사업자’, 등록<sup>1)</sup>을 통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던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할

1) 등록의 성격에 대해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완화된 허가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어떤 견해에 따르든 허가에 비해 완화된 진입규제 요건이

수 있었다. 동법을 통해 처음으로 ‘기간통신역무’의 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등록만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시장 진입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1990년에 5개였던 부가통신사업자가 1991년에는 30개, 1992년에는 69개, 1999년에는 2,478개로 대폭 증가하였다.<sup>2)</sup>

〈표 2-1〉 최초의 통신사업자 분류 체계

기간통신사업자	일반통신사업자	지역적·기술적으로 제한되지 않은 서비스, 즉, 유선통신 서비스 등을 제공, 체신부 장관이 지정 예) 한국통신, 데이콤(국제전화)
	특정통신사업자	지리적·기술적으로 제한된 서비스 제공, 즉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 체신부 장관의 허가 예) 무선호출(서울이동통신 등) 및 이동전화(신세기통신)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 등록제 시행

자료: 저자 작성

3개의 유형으로 구분했던 최초의 사업자 분류 구조는 1995년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2분류 체계로 개편된다. 그 내용은 〈표 2-2〉와 같다.

라고 할 수 있으며, 신고보다는 강력한 진입 장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상세한 논의는 나선경·박민(2013), “행정 관련법령상 등록과 신고의 개념적 유형화”, 《공법연구》, 41(3), 한국공법학회, p.346 이하 참조.

2) 오승환(2006), 『전기통신시장의 사전규제 및 역무분류제도의 개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p.90. 2024년 9월을 기준으로 신고된 부가통신사업자 수는 14,969개에 달한다.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참조.

〈표 2-2〉 1995년의 통신사업자 분류 체계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 허가제 도입 예) 데이콤 TRS(95), 한국통신파워텔PCS(96), 한국통신프리텔한국통신엠닷컴등 시외전화 업체, LG텔레콤, CT-2, 서울이동통신 등 11개 이동통신업체
부가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 신고제 시행(부가통신사업에 대한 자유화)

자료: 저자 작성

WTO는 자유무역 체제 확립을 위해 각국의 시장 개방을 촉진한다. 시장 개방을 위해서는 각국의 시장 역무 체계를 동일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통신역무 역시 WTO가 새로운 분류 체계를 도입하게 된다.<sup>3)</sup> 따라서 1997년에는 WTO 체제에 맞추어 통신사업 분류를 변경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즉 WTO의 기본통신협상에 제출한 양허표에 따라 새로운 사업 유형이 출현하면서, 별정통신사업자 분류, 특히 외국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해 주기 위해 통신역무를 담당하는 사업자의 분류를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및 부가통신사업자로 삼분한 것이다. 이 시기의 개정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WTO 양허표에 따라 별정통신사업자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3) 1997년 WTO 통신사업 분류 체계 도입의 배경과 의미에 대해서는 강하연(2010. 3. 16), “융합시대의 방송통신 통상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가칼럼 참조.

〈표 2-3〉 1997년의 통신사업자 분류 체계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 업무 별로 사업자허가 예) 하나로통신 등 시내전화, 온세통신 등 시외전화
별정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 공, 등록제 적용 ※ 587개 사업자 등록 예) 음성재판매, 인터넷전화, 콜백서비스, 구내통신서비스 등
부가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 (기간통신업무 이외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

자료: 저자 작성

최근까지도 이러한 3분류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별정통신사업이라는 통신역무에 대해 문제가 제기된다. 설비 보유를 기준으로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를 구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더 큰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설비기반 경쟁 활성화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거대 별정통신사업자(삼성 네트워크 등)가 등장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와의 구별이 무의미해진 것이다. 또한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결합상품 등을 통해 별정통신사업 영역에 진출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기간통신역무의 의미와 범위에 대해서는 일부 변경이 나타나기도 한다. 기간통신역무는 전화, 가입전신, 인터넷 등의 역무로 다시 세분되어 있었으나, 2004년 7월 종래에는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하던 초고속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기간통신역무에 포함시키게 되고, 인터넷전화 역시 기간통신역무에 포함된다. 2007년 12월에는 전화역무, 가입전신역무, 인터넷 접속역무, 인터넷 전화역무를 '전송역무'라는 이름으로 묶어 기간통신역무에 포함시키게 된다. 2010년 3월 주파수 할당 및 제공 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역무까지 기간통신역무에 통합된다. 이는 수평적 규제 체계<sup>4)</sup>와 유사한 체계의 도입 시도라고도 풀이된다. 또한 2002년 정부가 KT 주식회사의 지분을 전량 매각함으로써, 통

4) 규제 체계의 문제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신역무에 대해서는 완전한 사화(Privatization)가 이루어지며 완전한 경쟁이 도입된 일 역시 통신 역무 분류 체계의 개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 다. 정보통신역무의 완전 사화 이후

통신 시장의 임무 자체가 완전히 민간 영역으로 이전된 이후에도 한동안 위의 분류 체계는 유효하게 작동하였다. 그러나 입법자는 2018년 12월 “모든 기간통신사업의 허가제를 폐지하여 등록제로 완화하고, 기간·별정통신사업자구분을 통합하여 기존 기간통신사업자를 대신할 새로운 규제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비통신사업자의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은 기간통신사업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전면 개정을 단행하였다. 이 개정을 통해 다시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이분류 체계로 통신역무 분류가 회귀하게 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11호는 기간통신역무를 “전화·인터넷접속 등과 같이 음성·데이터·영상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하게 하는 전기통신역무 및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송신 또는 수신 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대하는 전기통신역무”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통신서비스(제6호의 전기통신역무의 세부적인 개별 서비스를 말한다)”를 제외한 것이라고 정의한다. 부가통신역무에 대해서는 동조 제12호가 “기간통신역무 외의 전기통신역무”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근의 개정을 통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의 역무 유형도 법정화되었지만, 현재의 분류 체계에서는 기본적으로 통신역무가 이 두 가지로 분류된다.

〈표 2-4〉 현행 통신사업자 분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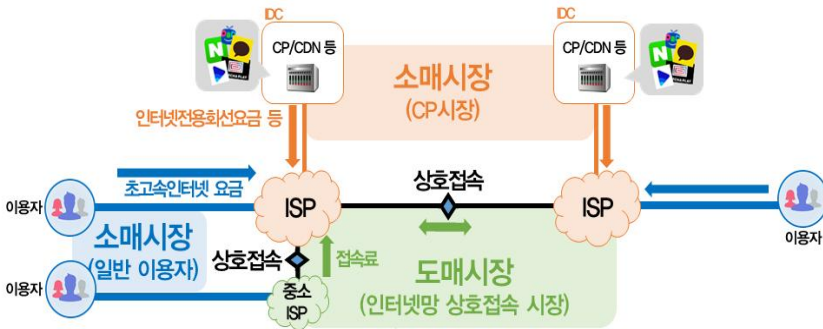
기간통신사업자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 원칙적으로 등록제 채택
부가통신사업자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의 규정 변경, 신고제 채택

자료: 저자 작성

### 3.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율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된 규율 대상인 인터넷 생태계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생태계는 [그림 2-1]에서 보듯 크게 세 개의 시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2-1] 인터넷 생태계 구조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2. 1. 11)

첫째로, 이용자 시장은 일반 이용자와 인터넷망 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 사이의 거래를 통해 성립한다. 일반 이용자가 인터넷 제공 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용자 시장에서 거래의 모습이다. 둘째로, CP 시장은 플랫폼 사업자와 같은 인터넷 기업 내지 콘텐츠 제공자들이 ISP와 법률상·사실상의 거래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성립한다. CP가 인터넷 전용 회선을 구입하여, 이 회선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고,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대급부를 납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상호접속 시장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통신망 이용자들 간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전기통신설비를 물리적으로 연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성립한다.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호접속이 필수불가결하다. 통신사업자는 - 특히 우월한 설비를 갖추고 있는 통신사는 - 경쟁사가 자신의 망을 이용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경쟁의 우위를 차

지하려 할 유인이 있다.<sup>5)</sup> 따라서 통신 규제 및 경쟁 정책은 이러한 상호접속을 어떻게 다루느냐의 문제와 일치하게 된다.<sup>6)</sup> 「전기통신사업법」은 상호접속에 대해 제 39조를 통해 규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9조(상호접속)**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을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의 범위와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협정을 체결하여 상호접속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설비를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  
 2. 기간통신역무의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상호접속 제도 역시 우리나라에서 많은 변경을 거쳐 왔다. 이는 기간통신사업자 간의 경쟁 환경과 시장 여건의 변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2004년 이전에는 상호접속을 제도화한 것이 아니라 사업자 사이의 자율협상에 의해 접속 및 정산 방식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2005년 이후 상호접속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이어진 상호접속 규정을 통해 인터넷망의 단절 또는 특정인에 대한 접속 거부를 금지하고(망 중립성), 라우팅 정보공개 및 중계접속을 허용하는 한편, 접속료 산정 원칙 및 접속조건을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로 규정하게 된다. 사업자의 망 규모에 따라 계위를 구분하여, 동일 계위 간에는 무정산(단, 당시 SKB와

5)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는 것을 통신규제의 목적이라고 바라보는 문헌도 있다. 정인준(2014),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규제정책 방향 - 이용약관 인가제를 중심으로 -”, 《경영법률》, 25(1), p.486 이하.

6) 상호접속 규제의 경쟁정책상 중요성에 대해 김태오(2014),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최종결정권과 사법심사 - 독일 연방행정법원(BVerwG)의 규제재량을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26(3),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p.115 이하.

LGU+는 동일 계위임에도 불구하고 유선망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KT에 정산료를 지급하였다), 차등 계위간에는 하위에서 상위로 접속료를 지불하도록 규정되었다. 접속 이용자에 대해서는 접속회선 선택의 자율권을 부여하였다.<sup>7)</sup> 이때 접속료 산정 기준은 실제 오가는 트래픽이 아니라 대역폭이었다.

2016년 이후에 상호접속 제도에도 변화가 발생한다. 즉 상호접속 대상 범위를 이동망까지 확대하고, 정산의 기준을 대역폭에서 트래픽 기반으로 변경한다. 또한 동일 계위끼리도 상호 정산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정산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트래픽 측정 및 정산소를 운영하였다.<sup>8)</sup>

2020년의 고시 개정을 통해 상호접속 제도는 다시 한번 변화를 맞게 된다. 먼저 동일 계위 간에 반드시 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조건을 갖추게 되면 정산 의무가 면제된다. 즉 트래픽 교환 비율이 1:1.8 이내일 경우에는 대형 ISP 3사 상호간 접속료를 정산하지 않는다.<sup>9)</sup> 또한 하위 계위 ISP의 접속료를 30% 인하하고, 사업자 간 상호 합의 시, 계위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한 것도 2020년 상호접속 제도 개선의 특징이다. 트래픽 교환 비율을 공개함으로써, CP 망 이용대가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시도하였다. 2022년에 다시 접속료를 최대 17% 인하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이 이루어졌으나, 무정산구간 등의 골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 4. 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의무, 그리고 탈퇴에 대한 규율

##### 가.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의 개념

규제의 대상으로서 기간통신역무와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우선 그 개념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간통신사업자의 정의는

7) 김희수 외(2010),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상호접속 대가산정 모형 및 정책방향 연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27 이하

8) 최종희(2020. 4. 7), “[이슈분석]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 변천사”, 《전자신문》.

9) 당시 ISP 3사의 평균 교환 비율은 1:1.5 정도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사실상 접속료 정산은 사라지게 되었다.

2018년 12월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전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회선설비를 이용”하는 사업자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2018년 12월의 개정 이후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확장된다. 즉 기존의 별정통신사업자의 개념이 통합된 것이다. 이러한 개념 변화로 인해 종래에는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에게는 있고, 별정통신사업자에게는 없었던 규제가 존재했으나, 규제상의 차이도 사라지게 된다.

〈표 2-5〉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특유한 규제

통신 공공성 관련	경쟁 보호	설비 규제
외국인 지분 제한, 공익성 심사, 진입 결격사유, 임원 결격사유 규정	인수합병 시의 인가 의무, 통신사업 외의 겸업에 대한 승인, 사업의 휴·폐지 승인, 보편적 서비스 관련 의무, 회계 분리 의무,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승인, 금지행위에 대한 처분	상호접속 의무, 설비 제공 의무, 가입자망의 공동활용 의무, 로밍 의무, 도매 제공 의무

자료: 저자 작성

대신 같은 기간통신사업자의 범주에 들어 있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등 사업규모나 필수설비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시행령 등으로 차등하여 규제하게 된다. 예컨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11조는 등록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구내통신 사업이나 일정 범위 이하의 주파수대역폭을 사용한 회선설비 보유사업 등을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위한 등록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등록을 요한다. 2018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종전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기간통신사업의 진입규제를 등록으로 완화한 것이다.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의 개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무선 전화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

렸고, 기간통신사업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설비 투자가 필요해 자연적인 진입 장벽이 이미 존재하므로, 진입장벽 완화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또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파’의 사용이 필수적이지만(등록 요건에도 규정), 전파법 제10조의 주파수 할당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주파수 할당을 받지 않더라도 전파법상의 무선국 개설허가가 필요하므로,<sup>10)</sup> 전파법과의 관계에서도 진입규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이용요금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같다)는 기간통신사업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자가 다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 이용자 보호계획
3.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24.>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은 법인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15.,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1항은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요건을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 2. 이용자 보호계획, 3.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 제7조 제1항 및 [별표1]은 등록을 위한 세부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10) 공물의 특별사용 관계를 원용하여 주파수 할당의 성격을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송시강(2010), “주파수이용권의 성질과 효율적 전파관리제도”, 《행정법연구》, 제28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p.10 이하.

〈표 2-6〉 기간통신사업 등록 세부 요건(시행령 별표1)

구분		등록 요건
1. 재정적 능력		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이라 한다): 「전파법」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주파수 할당을 받았을 것
		나. 회선설비 보유사업에서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 유선사업”이라 한다) 중 2개 이상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 대규모 유선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50억원 이상
		다. 회선설비 보유 유선사업 중 1개의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회선설비 보유 소규모 유선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라. 회선설비 미보유사업 중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교환설비(이하 “교환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교환설비 보유 재판매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납입자본금 3억원 이상 1)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제공의무서비스를 재판매하는 사업(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이라 한다) 중 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 2) 회선설비 미보유사업 중 교환설비 보유 재판매사업을 제외한 사업(이하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이라 한다)
		바. 구내(構內)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구내통신사업”이라 한다): 납입자본금 5억원 이상
		사.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납입자본금 30억원 이상
		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기간통신사업: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 계획이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이 있을 것
2. 기술적 능력	기술 방식	전기통신설비 및 서비스 제공방식이 전기통신망에 위해(危害)를 주지 않고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할 것

구분	등록 요건
<p>2. 기술적 능력</p>	<p>가. 「전파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둘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보통신기술사, 방송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이하 이 표에서 "정보통신기술사등"이라 한다) 중 3명 이상</li> <li>2) 통신설비기능장,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이하 이 표에서 "통신설비기능장등"이라 한다) 중 2명 이상</li> </ol>
	<p>나.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 또는 제12조에 따른 주파수할당을 받아 회선설비 보유 무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해당 규정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았을 것</p>
	<p>다. 회선설비 보유 대규모 유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정보통신기술사 등 중 3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p>
	<p>라. 회선설비 보유 소규모 유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정보통신기술사 등 중 1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p>
	<p>마. 교환설비 보유 재판매사업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교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만 해당한다)을 경영하려는 자: 정보통신기술사등 중 3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2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p>
	<p>바.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 및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교환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자만 해당한다)을 경영하려는 자: 정보통신기술사등 또는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p>
	<p>사. 구내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정보통신기술사등 중 1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p>
	<p>통신망 구축 계획 등</p> <p>회선설비 보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통신망 구축계획 및 장애 등 사고 발생 시 대책(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을 제출할 것</p>
<p>3. 이용자 보호계획</p>	<p>가. 1명 이상의 전담직원을 둔 상설 이용자 보호기구를 설치할 것</p> <p>나.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이용약관을 제정할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명시</li> <li>2)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 방안 명시</li> </ol> <p>다. 회선설비 보유사업 또는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사물과의 데이터 송신·수신만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할 것. 다만,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의 경우는 6) 및 7)의 사항은 제외한다.</p>

구분	등록 요건
3. 이용자 보호계획	1)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구 설치 및 임원급 이상의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보호,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정보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는 정보보호 업무처리 지침에 관한 사항 4) 24시간 고객응대시스템 구축 및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불만 처리 직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법 제83조제8항에 따라 이용자의 통신비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중대한 이용자 피해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기록 보관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를 대비한 이용자 보호조치계획에 관한 사항 라. 구내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이용자의 자유로운 통신사업자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통신망을 구성·운영할 것 마.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용자 보호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
4. 사업의 적합성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사업 수행의 필요성, 공익성 등의 측면에서 적합할 것(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 비고

1. 교환설비 보유 재판매사업을 등록한 자가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설비 미보유 재판매사업의 등록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하며,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3. 회선설비 보유 유선사업 중 서울특별시의 5개 구(區) 이상 또는 경기도의 5개 시(市) 이상에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은 회선설비 보유 대규모 유선사업으로 본다.
4. “구내(構內)”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 가. 하나의 건축물
  - 나. 하나의 부지(1명이 소유하거나 2명 이상이 공유한 경우로 한정한다)와 그 부지 안의 건축물
  - 다. 1명이 점유한 둘 이상의 건축물과 그 부지(건축물 상호 간의 직선거리가 500미터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건축물 또는 부지와 인접한 건축물 또는 부지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구역

등록의 법적 성질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강학상 수리를 요하는 신고 혹은 완화된 허가로 보는 것이 보통이다. 어떤 시각에 따르든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등록이 될 수 없고, 행정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수리 거부는 등록에 대한 거부 처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등록은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강학상 ‘등록’(예: 선거인 명부 등록, 부동산 등기 등)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진입규제의 한 유형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이 경우 그 조건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관에 대해서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등 행정의 일반 원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며 등록 절차가 시작된다. 일정한 서류를 갖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자격 확인이 있는 후에, 필요 시에는 보완 또는 보정 요구가 이루어진다. 등록요건이 확인되면 행정청은 등록증을 발급한다.

등록에는 제한 규정도 존재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가 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우선 등록은 법인만 가능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 또는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또는 외국 법인이 주식 소유제한(49%)을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는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다. 제16조에 따라 변경등록도 가능하며, 시행령 제19조 제2항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자신의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수적으로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고 그 요금을 청구하는 자(이용요금을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같다)는 기간통신사업을 신고”(제6조 제1항 제2문)함으로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업에 대해서는 등록 의무 대신 신고 의무만을 부여함으로써, 진입 규제를

한층 더 완화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기서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신고만으로 효력을 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입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1. 5. 19., 2013. 3. 23., 2014. 10. 15., 2015. 12. 1., 2017. 7. 26., 2020. 6. 9., 2022. 6. 10.>
1. 제22조의3제1항 및 「저작권법」 제104조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 1의2. 송신인의 전화번호가 변작 등 거짓으로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 계획(제2조제14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물적 시설
  3. 재무건전성
  4.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따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1. 5. 19.,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0. 15.>
1.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2.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 ⑤ 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는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 19., 2014. 10. 15.>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접수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 또는 제24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양수 등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 6. 10.>
- ⑦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5. 19., 2014. 10. 15., 2022. 6. 10.>

부가통신사업은 원칙적으로 진입규제의 대상이 아니며, 시장에서 사업자의 자유로운 사업이 보장된다. 원칙적으로 신고만으로 사업 영위가 가능하다. 또한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는 강학상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와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는 신고조차 면제된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에 대해서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한 등록이 필요하다. 웹하드, P2P 등을 통한 불법 콘텐츠, 저작권 침해 등의 문제와 문자메시지 발송 시스템을 통한 피싱 및 스미싱 등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입법자의 고려인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저작권법」 제104조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가통신역무  
나.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

라.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사업경영권

등록(예외적으로 신고)을 통해 시장에 진입한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사업의 경영권을 갖게 된다. 기간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해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일반적으로 이용 약관을 통한 계약). 또한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파수 할당 신청이 가능하다. 통신 영역에서는 사실상 기간통신사업자만이 주파수 할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 주파수 할당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15조 제1항).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할 권리 역시 취득하게 된다. 기간통신사업자에게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 보전할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수용 역시 가능하다. 단, 취득한 전기통신설비의 유지 및 보수는 사업자의 의무이기도 하다(제61조).

**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토지등의 사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및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이하 “선로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인공구조물과 수면·수저(水底)(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2020. 6. 9.>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 마. 기간통신사업자의 의무

##### 1) 보편적 역무의 제공

기간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Universal Service)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보편적 역무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역무를 직접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손실 보전을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통신역무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사인인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이러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 규정들은 다음과 같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10. “보편적 역무”란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를 말한다.

**제3조(역무의 제공 의무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은 전기통신사업이 원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제4조(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 ①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하거나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을 보전(補填)할 의무가 있다.

**제56조(전기통신역무의품질 개선 등)**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보편적 의무 개념은 통신의 공공성 및 시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통신은 개인 간의 협력과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현대인의 인격 발현과 생존에 필수적이다.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와 사회국가의 이념, 국가가 국민에 대해 갖는 생존 배려의 의무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적절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도 국가의 임무에 포함되는 것이다. 통신서비스가 사화(私化)된 상황에서는 ‘규제’라는 수단을 통해 이를 달성하게 된다. 또한 의무의 보편성은 모든 이용자가 통신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뿐만 아니라, 망의 설치 및 운영비가 그로 인한 수익을 넘는 지역의 이용자도 균일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보편적 의무가 법제화된 것은 1998년에 「전기통신사업법」을 통해 보편적 의무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면서부터다. 문제는 어떤 의무를 보편적 의무 범위에 넣을 것인가, 누구에게 보편적 의무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할 것인가 및 보편적 의무 조달을 위한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일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3항은 보편적 의무를 위한 고려사항을 다섯 가지(1.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통신업무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 증진, 5. 정보화 촉진) 제시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보편적 의무의 내용)** ①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편적 의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1.>

1. 유선전화 서비스
- 1의2.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의무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5. 31., 2017. 5. 8., 2017. 7. 26., 2019. 6. 11., 2022. 12. 9.>

1. 유선전화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 안의 전화 서비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가. 시내전화 서비스: 가입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다목의 도서통신(島嶼通信) 서비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 나. 공중전화 서비스: 공중용 전화를 사용하는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 다. 도서통신 서비스: 육지와 섬 사이 또는 섬과 섬 사이에 무선으로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 라. 인터넷전화 서비스: 인터넷을 사용하여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가목의 시내전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설비 등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서 시내전화 서비스를 대체하여 제공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1의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 현황, 보급 정도 및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여 속도 및 제공대상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2. 긴급통신용 전화 서비스: 사회질서 유지 및 인명(人命)의 안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화 서비스
- 가. 기간통신역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수번호 전화 서비스
- 나. 선박 무선전화 서비스: 기간통신역무 중 육지와 선박 사이 또는 선박과 선박 사이의 통신을 매개하는 전화 서비스
3.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장애인·저소득층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
- 가. 시내전화 서비스 및 통화권 간의 전화 서비스(이하 “시외전화 서비스”라 한다)
- 나. 시내전화 서비스 및 시외전화 서비스의 부대 서비스인 번호안내 서비스
- 다.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IMT-2000, 3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엘티이(LTE,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 라.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제1호의2에 따른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하 제5조제1항제3호의3을 제외하고 같다)
- 마. 인터넷전화 서비스(제1호라목에 따른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한정되지 않는다)
- 바. 삭제 <2020. 12. 8.>
- 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 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 서비스, 엘티이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 서비스로 한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3. 5. 31., 2014. 1. 7., 2015. 11. 30., 2017. 7. 26., 2018. 5. 15., 2019. 6. 11., 2021. 4. 6.>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장애인이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으로 한다.
  2.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는 그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로 한다.
  5.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및 4·19민주혁명회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18자유상이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으로 한다.
7. 「5·18민주유공자유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으로 한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이 경우 한 가구당 감면 대상 가구원의 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받는 사람
- 다. 삭제 <2014. 1. 7.>
- 라. 삭제 <2013. 5. 31.>
- 마.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바.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 경우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사. 「장애인연금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아.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차상위계층으로 등재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수급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자의 가구원을 포함한다). 이 경우 한 가구당 감면 대상 가구원의 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 5. 31., 2015. 11. 30.>
1. 제3항제1호 단서, 같은 항 제4호 단서 또는 같은 항 제7호 단서에 따라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가구의 가구원 중 감면 대상자 또는 세대주
  2. 삭제 <2015. 11. 30.>
  3. 제1호 외의 요금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감면 대상자(제3항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각각의 가구원을 말한다)
- ⑤ 제2항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 대상자에 대한 감면기준은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규모, 서비스 요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3. 5. 31., 2017. 7. 26.>
- [전문개정 2012. 2. 28.]

요약하자면 보편적 역무의 수단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망을 설치 및 운용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통신서비스에 대한 물리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요금을 낮추거나, 경제력이 약한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통신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입법자는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를 보편적 역무 제공의 의무자로 삼으면서도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 및 지역무선호출사업자는 제외하고 있고, 제4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전체 전기통신역무 총매출액의 1% 이하이면서 300억 원 이하인 사업자 역시 제외하고 있다. 결국 우리 법상 보편적 역무의 제공 의무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인 것이다. 통신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보편적 의무 개념 역시 확장되고 있으며, 그 제공 의무자도 중요성이 떨어진 기간통신사업자는 제외하고<sup>11)</sup> 일부 부가통신사업자들 로까지 확장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존재한다.<sup>12)</sup>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이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도 보편적 역무와 관련된다. 또한 통신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능정보서비스로 보편적 역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단순히 하드웨어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리터러시’에 대한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이하는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보편적 역무제공사업자가 보편적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

11) “시내공중전화를 보편적 서비스에서 제외하더라도 기존 이용자가 사회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을 기초로, 보편적 역무의 제공 의무자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문현으로 나상우·신민수(2024), “시내공중전화의 보편적 서비스 유효성에 관한 연구”, 《정보사회와 미디어》, 25(1), p.32 이하.

12) 대형 플랫폼사업자들에게도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위한 비용 부담을 요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박지성(2023. 8. 20), “부가통신사에 보편적 역무 부과…민형배 의원 법안 발의”, 《전자신문》.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자금을 그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시키는 것이다. 일정한 시내전화서비스, 시내공중전화서비스, 도서통신 서비스, 선박 무선전화서비스 등이 대상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시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 2) 요금 규제의 수법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요금규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한 약관 규제 및 소비자 보호 규제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 통신시장 역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만, 통신서비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별도의 규제 체계를 두고 있다. 이는 통신규제의 이른바 ‘전문 규제(sectoral regulation)’로서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가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 및 이용조건(이용약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상의 일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러한 요금규제의 근거는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에서 찾을 수 있다. 다른 공공서비스 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공공요금산정기준」에 따라 규율된다. 임무사화가 이루어진 통신시장의 경우 경쟁 강화 등의 방법으로 요금규제를 할 수 있으나, 자연독점 성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약관에 대한 규제를 통해 요금규제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장경쟁을 통해서도 가격 인하를 쉽게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법자의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요금규제가 목표로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 제3항이 추구하는 가치들, 즉 공평하고 저렴한 전기통신역무 이용,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 공급(신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서비스 공급) 및 전기통신사업의 원활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사업자에게 약관에 대한 인가를 요구하던 과거의 강력한 요금규제는 2020년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신고 및 유보부 신고로 완화된 상태이

13) 방송통신 영역에서 일반적인 규제와 전문규제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는 김태호 (2008), “방송통신시장 경쟁규제에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 간의 권한 배분”, 《경제규제와 법》, 1(2),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p.141.

다. 과거 비대칭규제(1위 사업자에 대해서만 인가 요구)가 존재하던 시기에는 1) 신고와 인가의 경우 제출 자료는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심사는 다르다는 점에서 신고를 자족적 신고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과 2) 제출 자료의 동일성 등으로 인해 신고제도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순수한 자족적 신고만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동조의 신고를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 개정으로 인해 이용약관 신고에 수리가 필요하다는 점이 명문으로 분명해졌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전년도 전기통신업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 보완이 완료된 날
2.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이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인 경우: 신고를 반려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날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약관의 포함사항 및 제5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의 누락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신고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고가 접수된 이용약관이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간통신사업자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접수한 날(제3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한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신고된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 6. 9., 2024. 1. 30.>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및 이용조건 등에 따라 특정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는 등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하는 대가에 비하여 불공정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0. 6. 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절차 및 반력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9.>

요금과 관련해 사전규제뿐만 아니라 사후규제도 존재한다. 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의 금지행위 중 부당한 요금 산정 혹은 요금에 비해 낮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이에 해당한다. 예컨대 동조 제1항 제4호의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등을 산정하는 행위” 혹은 제5호의 “이용약관(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바. 통신사업자의 시장 탈퇴

1) 기간통신사업의 경우

기간통신사업이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을 고려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를 위해서도 인가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9조 제1항).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혹은 폐지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며, 해석상 이때의 승인은 ‘강학상 인가’에 해당(형성적 행정행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단 매출액이 낮은 사업자의 경우 신고로 족하다. 별정통신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개념에 통합하며 작은 규모의 사업자에 대해 배려 규정을 둔 것이다. 동조 제2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휴지·폐지로 인하여 별도의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

고 판단하면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가입 전환의 대행 및 비용 부담, 가입 해지 등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통신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시장 탈퇴 외에 등록 취소를 통한 강제적 시장 탈퇴도 가능하다. 즉,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6. 1. 27., 2017. 7. 26., 2018. 12. 24., 2020. 6. 9.>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제2항과 제18조제5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간(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연장을 받은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4의2.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6. 제92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15.,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 취소는 유효하게 발령된 행정행위를 행위의 위법 또는 하자를 이유로 처분청이나 발령청이 직권으로 그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강학상 직권취소의 성질을 가지나, 다른 각 호의 요건에 따른 등록취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를 들어 장래를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인 철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등록취소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파악하는 것은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역시 행정행위(수리)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등록 취소 사유의 중대성에 따라 처분 기준이 달라진다. 등록취소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행령 별표2가 제시하고 있다.

2) 부가통신사업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의 휴업이나 폐업은 시장 주체의 자유 영역이지만, 서비스 이용자들을 배려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은 휴업/폐업을 30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휴업/폐업 신고 시 이용자에게 이를 통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첨부(시행령 제33조 제1항)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이용자 보호를 위해 1년 이상 사업을 휴업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폐업 명령을 내려야 한다(제27조 제1항 제3호).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등록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사업 정지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존재한다(제27조 제1항). 구체적 기준은 마찬가지로 시행령 별표 2가 제시한다.

5. 통신역무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규율

이미 살펴본 것처럼 「전기통신사업법」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의 적절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업활동 규제 의념적 근거가 된다. 제4항에서 살펴본 진입규제를 포함한 사업의 경영에 대한 규제 및 경쟁 촉진 등의 규제와 더불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역시 이러한 목적 규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대한 근거는 제32조가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 보호)**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0. 15.>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5.>

- ③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서 사본을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0. 15.>
- ④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이용자 등으로부터 미리 받고 그 이후에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하 “선불통화서비스”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용자 등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으려는 이용요금 총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의 재정적 능력과 이용요금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2020. 6. 9.>
- ⑤ 선불통화서비스를 하려는 전기통신사업자(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6. 9.>
1. 보증보험으로 보장되는 선불통화 이용요금 총액을 넘어 선불통화서비스 이용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것
  2. 보증보험의 보험기간 내에서 선불통화서비스를 제공할 것
- ⑥ 제4항에 따라 피보험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용요금을 미리 낸 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이용자 등에게 제4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5., 2020. 6. 9.>
-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의 평가 대상·기준·절차, 평가 결과 활용, 계약서 사본 송부 절차, 보증보험의 가입·갱신 및 보험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0. 15., 2020. 6. 9.>

경쟁 촉진만으로는 이용자 보호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으므로, 일정한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다. 먼저 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제32조 제1항). 이는 이른바 포괄적 원칙 규정(Catch-all Rule)으로서 다른 구체적인 의무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근거로 사업자는 구체적인 이용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sup>14)</sup> 혹은 제32조

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의무(제33조 제1항)를 지기도 한다. 물론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32조 제2항). 이는 이용자 보호 업무, 특히 이용자 의견에 대한 피드백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평가하고 공개하는 제도이다. 이용자 보호 업무에 대해 사업자 사이의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존재한다. 매년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발표한다.<sup>15)</sup>

이용자 보호의 일환으로 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통신사업자에게 계약서 사본 송부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도 존재한다.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이용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서 사본을 이용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부하여야 한다(제32조 제3항). 다만 이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의무로 한정된다(시행령 제37조의3).

선불통화서비스 보증보험 역시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의미를 가진다.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요금을 이용자 등으로부터 미리 받고 그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됨으로써 이용자 등이 입게 되는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받으려는 이용요금 총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14) 예컨대 설비 관리 하자로 통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이다. 여기선(2022. 11. 24), “[역사속 오늘리뷰] 11월 24일 KT 아현지사 화재 발생”, 《파이낸셜리뷰》.

15)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이용자보호업무평가를 기간통신사업자 21개사, 부가통신사업자 22개사 및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 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24. 5. 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것이다(제32조 제4항).

금지행위 규제(제50조) 역시 이용자 보호 규정의 성격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관계를 규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쟁 규제의 측면에서 금지행위를 적용하는 것도 간접적으로 이용자 보호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금지행위의 실질적인 위법성 요건으로 ‘공정한 경쟁’ 외에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어, 이용자 보호의 목적 역시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 밖에 요금 한도 초과 등의 고지(제32조의2)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차단(제32조의7) 역시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규제들이다. 후자의 경우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의무”(제22조의5)와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용자 보호 규제와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디지털 전환의 심화 및 지능정보 기술 도입으로 인해 변화한 통신 환경을 현재의 이용자 보호 규제 체계가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기술 발달에 따른 통신 환경 변화의 요소로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는 자동추천시스템 등을 통해 개인 맞춤형 서비스의 구성이 가능해졌다는 점, 정보의 빠른 송수신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합치가 쉬워지고 거래가 빨라졌다는 점, 타 산업과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점, 편향된 콘텐츠 공급의 가능성, 공행정 영역의 디지털화, 디지털 수단 사용의 차이로 인한 빈부격차 심화 등 사회 문제 양산 및 구독경제와 플랫폼 경제 등 새로운 형태의 산업 등장으로 인한 경제 구조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지능정보사회 확산에 따라 이용자 개념의 변화와 확장, 새로운 이용자 이슈들을 고려해 기존 사업자 중심의 이용자 보호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기존 규제 틀을 재정비하며, 정보통신 분야에서 지능정보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인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공지능 시스템의 활용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역무가 어떤 고려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찰이 인공지능 규제론과 통신 규제론의 양 측면에서 필요할 것이다.

## 6. 통신시장 경쟁 규제

### 가. 경쟁상황평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경쟁의 촉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의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의 조성을 위한 경쟁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기간통신사업에 대한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정한 경쟁시장에서 효율적으로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공익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통신규제의 목표를 반영하고 있는 제도이다.<sup>16)</sup> 위의 조문에서(밑줄은 저자가 작성)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규제정책을 비롯한 통신 정책의 전제로서 통신시장에서 경쟁 상황을 평가하는 것이다. 방송 영역에서는 같은 취지에 따라 「방송법」 제35조의5에 근거하여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시행한다.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에 따라 사전규제가 필요한 시장과 규제대상 사업자, 규제의 종류와 정도, 비경쟁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의무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경쟁상황 평가를 토대로 규제와 촉진 사이의 균형을 어디서 잡을지 결정하게 된다. 또한 개별적으로 경쟁 상황에 따라 규제 적용 여부를 차등적으로 결정하기도 한다(이른바 비대칭규제). 경쟁상황 평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는 설비 등의 제공(제35조), 상호접속(제39조), 전기통신설비의 공동사용(제41조), 정보제공(제42조) 등이 있다.<sup>17)</sup> 동조의 경쟁상황평가는 기간통

16) 경쟁상황평가의 목적에 대해서는 송태원(2018),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에 관한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p.156; 이희정(2008), “경쟁상황평가를 기초로 한 통신규제모델의 연구”, 이원우 편(2008), 『정보통신법연구 III』, p.1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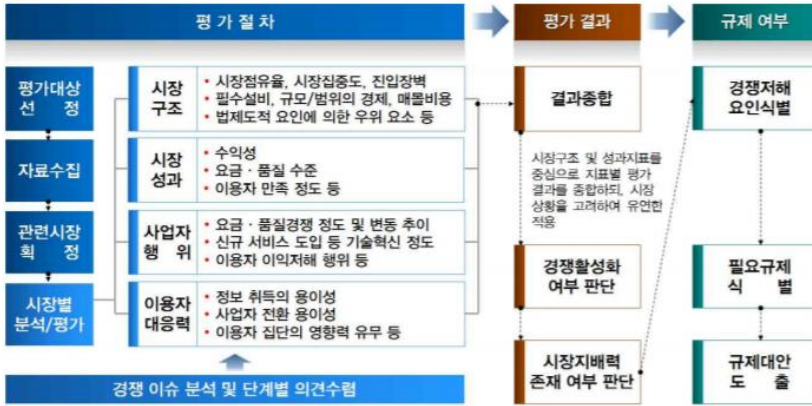
신사업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부가통신사업에 대해서는 유사한 취지의 ‘부가통신사업 실태조사’를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2).

현재 경쟁상황평가의 대상은 유선전화시장(시내외 전화 및 인터넷전화), 이동통신시장, 초고속 인터넷 시장, 전용회선시장 및 국제전화시장이다. 이들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여 우선 평가 대상이 되는 역무를 선정하고, 관련시장을 획정<sup>18)</sup>한 후, 경쟁상황 판단에 필요한 ‘주요 지표의 평가’를 거쳐, 경쟁상황에 대한 최종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 종합’을 작성하는 순서로 수행하게 된다. 다만, 평가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이 ‘기간통신사업’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세부적인 평가 대상 역무를 특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관련 시장들을 설정하여 평가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뚜렷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17) 이용약관에 대한 인가(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 역시 비대청규제 사항의 하나였으나, 2020년 6월 9일의 법률 개정을 통해 1위 사업자에 대한 이용약관 인가제가 모든 사업자에 대한 유보부 신고제로 전환되었다. 기존의 1위 사업자에 국한한 이용약관 인가제는 1996년에 도입되었으나, 오히려 통신요금 인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일찍부터 폐지 필요성이 거론되던 상황이었다. 정인준(2014),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규제정책 방향 - 이용약관 인가제를 중심으로 -”, 《경영법률》, 25(1), p.484.

18) 관련시장(relevant market)의 획정이란 기업과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거래대상, 거래지역 등의 범위를 획정하는 것으로, 경쟁법상 많은 문제들을 판단하기 위한 선결문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시장획정 방법론으로는 SSNIP(Small but Significant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테스트, 즉 가상적 독점기업이 “작지만 유의미하고 일시적이지 않은 가격 인상”을 시도했을 때 수요자들이 다른 상품으로 수요를 충분히 대체하여 수익손실이 나타나면 그 다른 상품을 동일 시장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이 방법론에 따라 작은 범위에서 출발하여 상품 시장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가상적 독점기업의 가격인상이 이윤증가를 나타낼 때까지 반복적으로 시행하여 관련 시장의 범위를 설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호영(2014), “독점규제법상 ‘관련시장’ 획정의 의미와 입법적 개선”, 《법조》, 제692호, p.65, 66, 75.

[그림 2-2] 경쟁상황평가 절차도



자료: 라성현 외(2023), p.558

[그림 2-3] 경쟁상황평가 평가 지표 종합 체계



자료: 라성현 외(2023), p.575

나. 인수합병 규제

인수 및 합병(Merge and Acquisition, M&A)은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기업이 법률적이나 사실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합치는 합병과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며 경영권을 획득하는 인수를 합한 개념이다. 「공정거래

법」은 ‘기업결합’이라는 용어로 인수합병을 정의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을 통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企業結合"이라 한다)로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系列會社의 資産總額 또는 賣出額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이하 "大規模會社"라 한다) 외의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12. 30., 1999. 2. 5., 2007. 8. 3.>

1. 다른 회사의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계속하여 會社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로서 任員 외의 者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다른 회사의 임원지위의 겸임(이하 "任員兼任"이라 한다)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다른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임차 또는 경영의 수임이나 다른 회사의 영업용고정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양수(이하 "營業讓受"라 한다)
5.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 외의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 나. 「상법」 제530조의2(會社의 分割·分割合併)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에 의한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러한 인수합병에 대해 아래와 같이 독자적인 개념과 규율을 갖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기간통신사업의 전년도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간통신사업자의 전년도 전기통신역무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18. 12. 24.>

1.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자

3. 등록된 기간통신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매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4.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소유하려는 자 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자
5.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 또는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6. 등록하여 제공하던 기간통신역무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

인수합병을 경쟁질서 차원에서 규제하는 이유는 기업의 결합으로 인해 관련시장의 구조를 독과점으로 전환시켜 경쟁사업자들 간의 담합 가능성이 커지고, 약탈적 가격설정 등이 나타날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통신사업의 영역에서는 자연적 진입장벽으로 인하여 위의 문제가 더욱 중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통신사업과 같은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사업은 진입 단계에서 공익성 심사(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 사유 참조)가 이루어지므로, 인수합병을 통해 공익성에 대한 훼손이 없는지 다시 판단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허가에서 등록으로 완화되었지만 인수합병에 대한 인가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인 것으로 보인다.

기간통신사업의 양수와 합병 등을 위해서는 우선 원칙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단,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제18조 제1항 단서 전단). 아울러 교환설비, 전송설비, 선로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외한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의 경우에도 신고로 갈음한다(제18조 제1항 단서 후단). 또한 인수합병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 일부의 생략이 가능하다(제18조 제2항 단서). 여기서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와 합병을 위한 인가의 법적 성질일 것이다. 일반적으로 강화상의 ‘인가’는 이른바 ‘보충행위’로서 “타인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sup>19)</sup> 그러나 실정법과 실무에서 통상적으로 인가가 강화상의 용어대로 사용되지 않고, 허가 및 승인 등과 혼용되기도 하며, 실제로 허가의 효력과 인가의 효력

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차이를 가지지 않는 경우도 많다. 행정행위의 효력에 대해 다툼이 생기는 경우 해당 행위를 명령적 행위인 허가로 보느냐, 형성적 행위이며 법률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인가로 보느냐에 따라 적법성 판단의 범위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의 인가가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기간통신사업의 양수와 결합의 인가는 거래 당사자 사이에서 이미 이루어진 인수합병에 대해 행정청이 의사표시를 통해 그 거래가 유효하게 성사되도록 하는 것으로서, 위에서 설명한 정의에 부합하므로 강학상의 인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20)</sup>

인가를 위한 심사의 기준과 절차는 제18조가 규정하며, 동조 제3항에 근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시의 형식으로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 인가 등의 심사기준 및 절차」를 제정하였다. 이 행정규칙을 통해 인가의 기준과 심사 절차를 상세히 규율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규칙임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를 보충하여 제한적으로 대외적 효력을 갖추게 된다.

19) 박균성(2024), 『행정법강의』, 제21판, 박영사, p.247. 다른 문헌들도 대체로 대동소이한 개념으로 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법률효과를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라고 정의하는 문헌으로 하명호(2024), 『행정법』, 제6판, 박영사, p.143; “타인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로 정의하는 문헌으로는 김남철(2023), 『행정법강론』, 박영사, p.186; “행정청이 직접 자신과 관계없는 법률관계의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보충행위”라고 정의하는 문헌으로는 정하중·김광수(2024), 『행정법개론』, 제18판, 법문사, p.205; “행정청이 제3자간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전체적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내용의 행정행위”라고 정의하는 문헌으로 김성수·이국현(2023), 『행정법』, 홍문사, p.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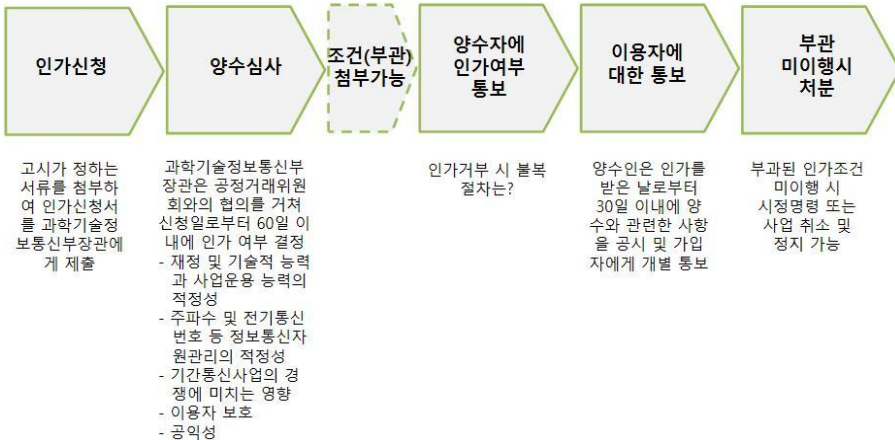
20) 같은 견해로 이상현(2017), “방송·통신 융합형 기업결합 규제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p.76.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등)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의 양수 및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등이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1. 재정 및 기술적 능력과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2. 주파수 및 전기통신번호 등 정보통신자원 관리의 적정성
3. 기간통신사업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4. 이용자 보호
5.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의 활용, 연구 개발의 효율성, 통신산업의 국제 경쟁력 등 공익에 미치는 영향

③ 제2항에 따른 심사 사항별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그림 2-4] 인수합병 인가 절차 및 절차별 내용



자료: 저자 작성

인가 신청이 이루어지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때 제18조 제2항 각 호의 여러 사항들이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인가에는 부관으로서 조건의 부과 가능하다. 살펴본 것처럼 인가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형성적 행위의 하나이기 때문에 부관을 붙이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인가 신청에서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림 2-4]에서 요약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기간통신사업자 사이 혹은 기간통신사업자와 IPTV 사업자 사이의 인수합병 여부가 사회적 화제가 된 바 있다. <표 2-7>은 최근 10년 사이의 주요 인수합병 관련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표 2-7> 인수합병 인가 또는 인가 불허 사례

사례	주요 내용
KT와 KTF 합병 인가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송통신위원회는 2009년 3월 19일 KT와 KT의 자회사인 KTF의 합병 인가</li> <li>-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사전 협의 → 방통위 내 실국 의견 수렴 → 사업자의견 수렴 → 전문가 의견 수렴(사업자에 대한 청문 실시) → 위원회 공식 의견청취 절차로 심사</li> <li>- 합병인가 심사에서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사업운용 능력, 정보통신자원 관리 적정성, 경쟁영향성, 이용자 보호, 전기통신설비 및 통신망 활용, 연거개발 효율성, 공익 영향성 등 검토</li> <li>- 인가 조건으로 변호이동절차 개선, 무선인터넷 접속체계 개선 등을 부여</li> </ul>
SKT와 CJ 헬로비전 합병 불허 (공정거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6년 7월 공정위는 이 기업결합이 유료방송시장, 이동통신 소매시장 및 이동통신 도매시장 등 방송 및 통신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불허함</li> <li>- 공정위는 유료방송시장을 23개 지역권역으로 나누어 획정하고,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이 중 21개 시장에서 합병법인이 1위 사업자가 되어 시장 지배적 지위를 형성할 것으로 우려</li> <li>- 인수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케이블TV와 IPTV 사업자 간 기업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이종 플랫폼 간의 경쟁구도가 형해화됨으로써 요금인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li> </ul>
SKB와 티브로드 인수합병 인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기부 장관은 2019년 12월 30일, SK텔레콤(이하 'SKT')과 태광산업(주) 등이 SK브로드밴드(이하 'SKB')와 (주)티브로드(계열법인 포함) 인수·합병을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2019.5.9)한 합병 및 주식취득 인가에 대해 조건을 부과하여 인가</li> <li>- SKB의 23개 권역(피합법인 티브로드 권역)에서 다른 이동통신사업자(KT, LG유플러스)에게 케이블TV 상품을 SKT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도 SKT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유무선 결합상품 제공</li> <li>-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 반환금(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함</li> </ul>

자료: 저자 작성

시장 진입 규제와 마찬가지로 부가통신사업의 인수합병 규제 역시 기간통신사업에 비해 완화되어 있다. 부가통신사업의 양수도 및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면 족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법인의 합병·상속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으로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5. 19.,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2018. 12. 24.>

1. 해당 사업을 양수한 자
2.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
3. 해당 사업의 상속인

부가통신사업 경영을 위한 신고를 자기완결적 신고로 해석하는 한, 인수합병을 위한 신고 역시 자기완결적 신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단,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반적인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 차원의 규제와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 7. 금지행위 규제

### 가. 금지행위 규제 개요

먼저 금지행위 규제가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의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은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경우에는 앱 마켓사업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 2018. 12. 11., 2020. 6. 9., 2021. 9. 14., 2021. 10. 19., 2024. 1. 30.>

1.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2.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3.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전부 또는 일부와 묶어서 판매하는 결합판매서비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5의2.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
- 5의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물 등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소유자 등 건물관리주체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 등을 점유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점유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을 체결하면서 점유자에게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이 경우 건물의 세부유형과 건물관리주체의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
7.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절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8.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
9.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10.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11.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

### 나. 금지행위 규정 체계의 문제점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의 위법성 요건은 ‘공정한 경쟁을 해할 것’과 ‘이용자의 이익을 해할 것’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규정 체계상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먼저 경쟁규제 차원의 규정과 이용자 보호 차원의 규정이 하나의 조문에 혼재되어 있어 체계상 혼란을 빚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더구나 금지행위 규제의 주무관청이 다른 경쟁 규정을 주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아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점도 금지행위 규정의 난맥상을 만들어 내는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보다 근본적이고 오랜 논란이 진행되었던 문제는 경쟁규제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 중복성 문제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원칙론으로서 일반적인 경쟁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하나,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경쟁 규제는 통신시장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제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공정거래법」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사이에는 몇 가지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접근 방식과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주 관심사는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시장의 경쟁을 저하하는가 여부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주 관심사는 공익에 도움이 되는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고려 요소와 관련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순수 경쟁 심사 방식을 취하는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다른 요건 판단과 더불어 부수적으로 경쟁제한 심사를 하게 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시장을 보는 시각 자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을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로 취급하는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을 일종의 공익재로 보게 되는 차이가 있다. 양자의 기능과 관점에 따라 규제의 근거도 달라지며, 동일 행위에 대해 다른 사유로 규제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쟁 관련 규정(특히 금지행위 규정)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원칙론에 충실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이 「공정거래법」에 대해 특별관계에 있다고 본다면, 「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행위 조항은 「공정거

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이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될 이유가 없어진다. 반면 양자가 보충관계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일반적·포괄적 조항인 「공정거래법」이 「전기통신사업법」이 구체화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열거주의로 볼 것인가, 예시주의로 볼 것인가도 문제된다. 예시주의에 따를 경우 각 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 이외에도 금지행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특히 법률유보)을 비롯하여 동 법 시행령 별표4가 금지행위의 유형을 세분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동조 각 호에서 규정하는 행위가 일반적 위법성 요건인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금지행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각 호의 금지행위 유형별로 요건 판단에 차이가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볼 만한 쟁점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 가운데는 ‘부당하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의 법률요건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제4호 내지 제5호의2의 경우 해당 요건 없음). 만약 ‘부당하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이 없다면, 그 행위 자체로서(per se) 위법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 요건으로 인하여 행위 자체만으로 위법한 것이 아니라 부당성 내지는 정당성에 대한 입증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추가 요건을 ‘부당하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로 규정하는 경우 입증책임에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 문언의 해석상 ‘부당하게’의 입증책임은 규제 당국이 부담해야 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의 입증책임은 그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립요건을 충족하기만 한다면 피규제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sup>21)</sup>

2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의 하나로 그 제1호에서 ‘부당하게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를 들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그 행위유형 또는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

### 다. 금지행위 규정 주요 내용

먼저 경쟁규제와 관련한 금지행위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제1호는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행위로 들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7-4호)을 통해 세부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일정 부분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제2호는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협정 체결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체결된 협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지정한다. 기업형 SMS의 상호접속 거부에 대해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sup>22)</sup> 그 밖에도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으로 알게 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 등을 자신의 영업활동에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제3호),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공동

---

라, 같은 법 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2호(다)목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유형의 하나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을 들면서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제2호(가),(나),(라)목에서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집단적 차별’에 대하여는 그러한 행위가 ‘부당하게’ 행하여진 경우에 한하여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되는 것으로 문언을 달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이러한 형태의 차별은 경쟁력이 없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들을 유지시켜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킬 소지가 커서 다른 차별적 취급보다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많으므로 외형상 그러한 행위유형에 해당하면 일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을 행위자에게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데에 있다.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 (밑줄은 저자가 표기함).

22)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제2008-44-222호

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제4호),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 제공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유지하는 행위”(제6호),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제7호) 등이 경쟁규제 차원에서 존재하는 금지행위 유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용자보호와 관련한 금지 행위로는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제5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제5호의2) 및 통신단말장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소프트웨어의 삭제 또는 삭제에 준하는 조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및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거나 이를 제안하는 행위(제7호)가 규정되어 있다. 제7호의 금지행위는 이른바 ‘선택삭제’를 제한하는 것이다.

#### 라. 이른바 인앱결제강제화방지법

최근 이른바 「인앱결제강제화방지법」(2021년 9월 14일자로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미한다)을 통해 금지행위에 포함된 인앱 결제와 관련하여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인앱 결제(In-App Purchase)란 이용자가 앱마켓에서 다운로드받은 앱 내에서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등을 유료로 구매함에 있어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일부 앱 마켓이 이러한 인앱 결제를 강제화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몇가지 금지행위 유형이 추가되기에 이르렀다. 즉 제9호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제10호에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제11호에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추가한 것이다. 인앱 결제에 대해 법률을 통해 규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고율의 수수료에 따른 소비자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점, 인앱 결제 강제화는 앱 마켓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 앱 마켓 간 공정경쟁 조성을 위해서는 앱 개발자가 콘텐츠 등록과 관련해 자유를 가져야 한다는 점 등의 논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서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수익 인정이 필요하고,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개발자에게 서비스 이용료를 받는 것은 영업의 자유 영역에 속한 일이며, 불합리한 행태의 경우 기존의 불공정거래 행위(공정거래법) 조항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이 반대 논거로 제시된다.

우선 인앱 결제 의무화 및 수수료 부과가 그 자체로서 「공정거래법」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앱 마켓사업자 역시 일정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라고 할 수 있고, 플랫폼 내에서의 서비스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자율 영역으로 볼 수 있다. 단 인앱 결제 의무화 혹은 수수료 산정의 과정에서 공정한 계약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위법 요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경쟁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콘텐츠 제공을 부당하게 금지하는 등의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차별, 부당한 거래 유인 혹은 강제 요건 등을 갖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제재하는 것이 가능하다.

「인앱 결제 강제화 방지법」이 국내 콘텐츠 산업 및 소비자 효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다면 인앱 결제 시행 시 산업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수수료율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인앱 결제 자체가 콘텐츠 사업자 본연의 사업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사업자의 생존, 나아가 소비자의 후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시해야 하는 것은 수수료율 산정에 있어서의 비례성 여부일 것이다. 앱에 대해서는 ‘상품’이라고 독일 연방 대법원도 밝힌 바가 있다. 따라서 상품 판매 시 수수료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와 앱 마켓의

수수료에 대한 논의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인앱 결제 의무화(혹은 인앱 구매의 구조 자체)가 인터넷 서비스의 다양성이라는 가치에는 배치되는 면이 있어, 문화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장기적으로 앱 마켓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 등이 문제 될 수 있으나, 인앱 결제 의무화 자체가 진입장벽을 만든다기보다는, 새로운 앱 마켓을 설치하기 어렵게 만든 구조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애플 혹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다른 앱 마켓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이다.

입법의 필요성이 다각도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금지행위 규정, 즉 「인앱 결제 강제화 방지법」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선 플랫폼에 대한 규제 방식과 체계 전반에 관한 문제와 연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주제로서, ‘인앱결제 의무화’ 등의 특정 행위를 기반으로 한 규제보다는 리스크 중심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정 행위에 대한 규제보다 리스크의 관리·감시·통제를 위한 거버넌스와 방식을 구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플랫폼과 가맹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 등 각종 행위의 공정성과 비례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인앱 결제 자체에 대해 규제하기보다는 그로 인한 리스크들을 개별적으로 도출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앱 결제 의무화 및 수수료 부과가 신규 앱 출시를 억제하거나 인터넷 서비스의 개방성을 현저히 저해한다는 리스크를 발생시킬 경우,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다. 또한 기존 앱 마켓사업자에 대한 규제보다는 앱 마켓을 활성화하고 사업자를 다변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 위주로 방향성을 잡아나가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아울러 인앱 결제 의무화라는 행위 한 가지만 살펴보기에는 단말기 시장, 앱 시장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가능하다.

#### 마.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사업자가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의결을 거쳐 일정한 제재 처분을 하게 된다. 즉 그 자체로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추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사실조사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려면 조사 7일 전까지 조사기간·이유·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의 사무소·사업장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사무소나 사업장의 관계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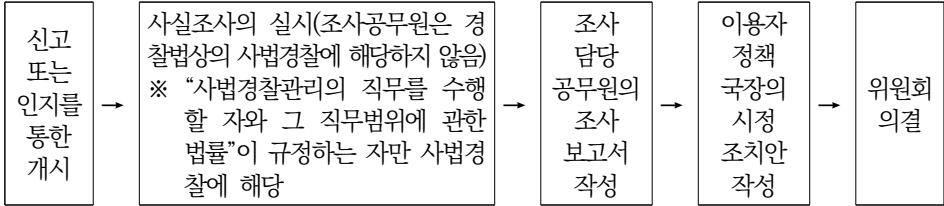
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소속 공무원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을 폐기·은닉·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나 물건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⑥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관한 자료나 물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1. 보관한 자료나 물건을 검토한 결과 해당 조사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조사 목적의 달성 등으로 자료나 물건을 보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금지행위 여부 판단과 관련한 세부 절차는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9-1호)이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그림 2-5]와 같다.

[그림 2-5] 금지행위 조사 및 결정 절차



자료: 저자 작성

금지행위가 인정되었을 때의 처분에 대해서는 제52조가 규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의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전기통신업무 제공조직의 분리
2. 전기통신업무에 대한 내부 회계규정 등의 변경
3.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4. 전기통신사업자 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5.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6. 금지행위의 중지
7.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8. 금지행위의 원인이 된 전기통신설비의 수거 등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 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9. 전기통신업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10.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아울러 제52조의2를 근거로 금지행위 관련 조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역시 가능하다. 이행강제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과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 규정 위반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과태료와는 달리 행정법상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해 당해 위반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해 부

과하거나 또는 사업의 취소와 정지에 같음하여 부과하는 금전상의 제재이므로 반드시 위반행위에 상응하여 매출액에 비례한 금액을 부과해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금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매출액 산정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해당 전기통신사업자 및 동종 유사 역무제공사업자의 재무제표 등 회계 자료와 가입자 수 및 이용요금 등 영업 현황 자료에 근거하여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아울러 일부 금지행위 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 부과도 가능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9조(벌칙)** 제50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제50조제1항제5호의 행위 중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및 같은 항 제5호의2의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제95조, 제95조의2, 제96조부터 제9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8. 통신시장의 설비 규제

가. 전기통신사업 설비의 의의와 설비규제의 필요성

전기통신사업 설비에 대해서는 복수의 법률에 정의 규정이 존재한다.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설비’를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제2조 제2호)라고 정의하면서, 그 하위 개념을 함께 정의하고 있다. 즉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제2조 제3호)로, ‘사업용전기통

신설비'란 “전기통신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제2조 제4호)이며, ‘자가전기통신설비’란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제2조 제5호)고 규정한다. 전기통신기본법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동일한 정의(제2조 제2호)를 하고 있지만, 개념상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방송통신설비’를 “방송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線路) 또는 그 밖에 방송통신에 필요한 설비”(제2조 제3호)로, ‘방송통신기자재’는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이라고 정의한다. 즉 이에 따르면 전기통신의 개념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의 방송통신의 개념에 포함되어, 그 설비 역시 같은 종속관계를 띠게 되는 것이다. 「정보통신 지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융합법’이라 한다)은 ‘정보통신장비’를 “정보통신 관련 장치·기계·기구(器具)·부품·선로(線路) 및 그 밖의 필요한 설비”라고 정의한다(제2조 제9호).

전기통신 설비 규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및 경쟁 규제와 별개로 전기통신역무를 위해 필요한 설비에 대해 특별한 공법적 규제라고 말할 수 있다. 전기통신 설비의 이용관계에 대해 특별한 공법적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현대 사회에서 전기통신의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중요성에서 찾을 수 있다. 현대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는 통신서비스 제공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고 유지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존엄의 유지라는 차원에서도 전기통신이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인격의 발현을 위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설비에 대한 규제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전기통신 영역에서 과학기술 응용 및 기술 진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설비에 대한 적절한 기술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는 면이 있으며, 망과 같은 기반시설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기통신 기반 구축을 위한 초기 자본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도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결국 전기통신 설비 규제의 의의는 국가경제의 관점에서 전기통신설비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사회경제적으로 타당성 있게 이용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와 운용에 관련한 규제가 필요하

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나.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규제

사업용 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에 제공하기 위한 전기통신설비, 즉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전기통신사업에 사용하는 전기통신설비의 적절한 설치와 운영을 관리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규제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전기통신설비의 유지·보수 의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부여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전기통신설비의 유지·보수)**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해당 전기통신설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보수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은 통신 역무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의무를 부여한 것은 공익적인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전기통신설비는 재난 상황 등 유사시 국민의 안전보장에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상적인 유지·보수가 더욱 중요하다. 동 조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기준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또는 승인 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2조(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 및 승인)**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전기통신기술방식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여기서 신고의 성질은 실질적으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실무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고를 위해 전기통신 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 명세서(통신망 구성도 포함) 및 전기통신설비의 보안 대책에 관한 서류(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1항)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와 별개로 신기술 적용 전기통신설비 설치 시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도 존재한다. 전기통신역무의 사회경제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새로운 기술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정부가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는 취지인 것이다. 이러한 승인은 전파법상의 무선국 개설 허가 제도와 비교할 수 있다. 전파를 이용한 무선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신고 내지는 승인뿐만 아니라, 전파법상의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즉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를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신고면 족하지만, 해당 설비가 '무선국'에 해당할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가 필요하다. 단, 이용계약 체결 시에는 허가가 의제된다.

**전파법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①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6. 13.,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2 및 제69조제1항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3., 2010. 3. 22., 2010. 7. 23., 2013. 3. 23., 2017. 7. 26.>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④ 삭제 <2010. 7. 23.>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2013. 3. 23., 2017. 7. 26.>

[제목개정 2010. 7. 23.]

전기통신설비의 공동 구축과 관련한 규제도 존재한다. 전기통신설비의 구축 비용을 감안한 규제이다. 규제권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설비 공동구축을 유도하는 한편,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전기통신설비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업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 협의를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5.>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 운영 절차 및 협의 대상설비·대상지역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0. 15.,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15., 2017. 7. 26.>

⑤ 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 10. 15.,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1. 제1항에 따른 협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기간통신사업자가 요청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 소유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에 관한 협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7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한 기간통신사업자와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 등의 사용에 관한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0. 15., 2017. 7. 26.>

다. 자가전기통신설비 규제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5호)를

말한다.<sup>23)</sup> 우선 설치 및 운영자와 이용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에 대해 적용되는 이용자 보호 규제와 경쟁 규제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익과 밀접한 통신설비라는 점, 설비를 통해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으로 인해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비해 느슨하기는 하지만 일정한 설비 규제가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자가망이 난립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를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하다. 여기서 신고의 법적 성질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중앙전파관리소가 자가망 설치의 적부심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51조의8이 규정하고 있다. 하나의 건물 및 그 부지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상호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로서 1명이 점유하는 둘 이상의 건물 및 그 부지(도로나 하천으로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및 부지만 해당한다) 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경찰 작전상 긴급히 필요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이에 해당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선방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 및 군용전기통신설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다.

23) 기업의 인트라넷, 지방자치단체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위한 자가망, 군경의 자가망 등을 들 수 있다.

자가전기통신설비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의 원칙적 금지라는 규제가 존재한다. 무엇보다 자가망을 ‘사업’을 위한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5조(목적 외 사용의 제한)** 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 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설치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경찰 또는 재해구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치안 유지 또는 긴급한 재해구조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와 업무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 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②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로·선조 등의 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설비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제44조(같은 조 제6항은 제외한다)·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0. 15.>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정지를 명한 사실을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2017. 7. 26.>

비상시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자가망의 설치·운영자에게 의무를 부담시키기도 한다. 다만 비상시 통신확보명령으로 인해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가 입게 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다는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재산권의 공용사용에 대해 법률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헌법 제23조 제3항) 입법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6조(비상 시의 통신의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전기통신업무나 그 밖에 중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해당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17. 7. 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제1항의 경우에 그 업무의 취급 또는 설비의 접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 다만, 자가전기통신설비가 전기통신역무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제공받는 기간통신사업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규제의 실효성 확보 수단들을 규정하고 있다.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형사 제재 역시 가능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7조(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시정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자가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변경 및 운용(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용한 경우를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② 시·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1.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4조제3항을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사용한 경우
3. 삭제 <2015. 12. 1.>

③ 시·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가 타인의 전기통신에 장애가 되거나 타인의 전기통신설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해당 설비의 사용정지 또는 개조·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12. 1.>

**전기통신사업법 제9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7.>

1. 제2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요금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한 자
2. 제6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변경한 자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3. 제64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
4.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설치한 목적에 어긋나게 이를 운용한 자
5. 제66조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업무나 그 밖에 중요한 통신업무를 취급하게 하거나 해당 설비를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접속하도록 하는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67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명령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7. 제82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위반한 자

형사별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형사별 외에 과태료 처분 역시 가능하다. 제64조 제3항에 따라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용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제104조 제5항)하다.

라.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규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영과 관련한 규제이다. 먼저 사회기반 시설 건설 시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대해 제한을 두게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8조(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자(이하 “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전기통신설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7., 2014. 1. 14., 2016. 3. 29.>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3.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6. 「공항시설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구역
7.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부지

② 기간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설치에 관하여 제시하는 의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로 설치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공동구 또는 관로 등의 제공에 관하여는 제35조, 제44조(같은 조 제6항은 제외한다) 및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0. 15.>

④ 시설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설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기간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아 조정을 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건축물에서의 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설치 규제 차원에서 유무선 통신 설비 설치 의무를 건축주에게 부여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구내용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는 구내용(構內用)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일정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 전기통신선로설비 등의 설치기준 및 전기통신회선설비와의 접속을 위한 면적 확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시설에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의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중 50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에 건설된 주택 및 시설
3.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종류, 설치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등을 위한 규제도 존재한다. 먼저 토지 등의 사용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토지의 매수 협의 혹은 수용 권한을 부여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2조(토지등의 사용)**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및 안테나와 그 부속설비(이하 “선로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한 건물·공작물과 수면·수저(水底)(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밖에 토지 등의 일시 사용(제73조), 토지 등에의 출입(제74조, 주거용 건물인 경우는 승낙 필요), 장애물 등의 제고 요구(제75조)도 보장된다. 단, 이 경우

사용 후 원상회복 또는 손실 보상이 필요하다.

전기통신설비의 보호를 위해 설비 파손 금지, 전기통신소통방해행위 금지, 전기통신설비 오손 및 설비측량표 훼손 금지, 기간통신사업자의 해저케이블 경계구역 지정 신청권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79조(전기통신설비의 보호)** ①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를 파손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접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기능에 장애를 주어 전기통신의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전기통신설비에 물건을 던지거나 이에 동물·배 또는 뗏목 따위를 매는 등의 방법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오손(汚損)하거나 전기통신설비의 측량표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기간통신사업자는 해저(海底)에 설치한 통신용 케이블과 그 부속설비(이하 “해저케이블”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정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해저케이블 경계구역의 지정 신청, 지정·고시의 방법과 절차, 경계구역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단,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설비이전 요구권을 부여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0조(설비의 이전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등이나 이에 인접한 토지등의 이용목적이나 이용방법이 변경되어 그 설비가 토지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간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해당 조치를 하는 것이 업무의 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가 아니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설비의 설치 이후에 그 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 제거에 필요한 조치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기간통신사업자는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설치할 때 보상금액, 설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토지등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1.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를 없애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경우

2.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가 다른 전기통신설비에 유익하게 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기통신설비의 이전이나 그 밖에 방해요소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
4. 사유지 내의 전기통신설비가 해당 토지등을 이용하는 데에 크게 지장을 주어 이전하는 경우

## 제 3 절 이용자 보호

### 1. 현행법의 체계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서 현행 법률은 불법 콘텐츠 유통을 방지하는 등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콘텐츠 규제’와 ‘요금 및 약관 규제’, ‘청소년 보호’,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포함하는 ‘정보보호 규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은 개별 법률에서 각각 해당 법률의 입법목적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전기통신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보호를 위하여 약관신고, 요금감면, 통신이용자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불법콘텐츠 유통방지, 청소년유해매체물 통제, 이용자의 정보보호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으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과정에서의 소비자 보호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유통법’)에서 다루고 있다. 이 외에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보호를 통하여 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있다. 개별 법률상 이용자 보호에 관한 규제의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8〉 현행법상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

법률명	세부내용	법률내용	
정보통신 망법	콘텐츠 규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 삭제·임시조치 (제44조의2 제2항 및 제4항, 제44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삭제조치] 권리침해자의 요청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조치 후 신청자에게 통지, 필요조치 사실에 대해서는 게시판에 공시</li> <li>• [임시조치] 권리침해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30일간 임시 차단조치</li> <li>• [임의의 임시조치] 유통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제44조의3)</li> </ul>
		일부 사업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막임자 지정(제44조의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일 매출액, 평균이용자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막 임자를 지정하여야 함</li> </ul>
		불법정보유통금지 (제44조의7 제2항 및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통위는 특정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심의위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음(제2항)</li> <li>•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대해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방통위는 심의위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시정 요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콘텐츠의 처리를 거부·정지·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함(제3항)</li> </ul>
	요금 및 약관규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 삭제·임시조치에 대한 약관 규정 (제44조의2 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의 삭제요청에 따른 삭제, 임시조치, 청소년 유해매체물 삭제조치 등에 대해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li> </ul>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의 약관신고(제5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고의무]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과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li> <li>• [변경권고] 과기부장관은 이용자 이익 침해 우려시 약관 변경을 권고할 수 있음</li> </ul>

법률명	세부내용		법률내용
정보통신 방법	청소년 보호	일부 사업자 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제42조의3)	• 일일 매출액, 평균이용자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
		표시위반 청소년유해 매체물의 삭제 (제44조의2 제4항)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표시방법 위반 청소년 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 접근 제한조치 없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 전시물 즉시 삭제
		대화형정보통신 서비스에서의 아동보호 (제44조의8)	•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일부 사업자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자 정보 보관 의무 (제43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자의 컴퓨터에 저장 또는 기록되지 않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정보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함
	개인정보 보호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제22조의2)	•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함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제23조의2)	•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등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음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 보급(제50조의5)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개인정보 보호법	요금 및 약관규제	개인정보처리방침 의 수립 (제30조)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제30조)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제30조의2)
	청소년 보호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제22조의2)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법률명	세부내용		법률내용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제3장, 제6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제4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의 규제사항(제3장)</li> <li>정보주체의 권리보장(제6장)</li> <li>안전조치의무(제29조)</li> <li>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제34조)</li> </ul>
전기통신 사업법	콘텐츠 규제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22조의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성범죄콘텐츠, 아동성착취물 등에 대한 유통방지 조치를 취하여야 함</li> </ul>
		특수유형부가통신 사업자의 불법정보 유통방지 (제22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가통신사업자 중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li> <li>기술적 조치의 관리실태를 기록, 보관하여야 함</li> </ul>
	요금 및 약관규제	부가통신서비스의 요금신고 (제22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의 경우 과기부장관에게 서비스 요금을 신고하여야 함</li> </ul>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의 신고(제2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년도 매출 일정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별 이용약관을 과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li> </ul>
		이용자 보호(제3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함</li> <li>일정 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체결 시 계약서 사본을 이용자에게 송부하여야 함</li> </ul>
		요금한도 초과 고지(제32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파수 사용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약정한 요금한도 초과시, 국제전화요금 부과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li> </ul>
	청소년 보호	청소년유해 매체물 등의 차단(제32조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를 차단해야 함</li> </ul>
	개인정보 보호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제83조) 및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받은 사실 통지(제83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등의 통신이용자 정보 열람 및 제출 요청에 응할 수 있음</li> <li>다만 이 경우 제공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함</li> </ul>

법률명	세부내용		법률내용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	거짓표시 전화번호로 인한 피해예방 조치(제84조의2)	• 전기통신사업자는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단말기유통법	요금 및 약관규제	지원금 연계 개별계약 체결 제한(제5조)	•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시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 지급 조건의 계약 금지

자료: 저자 작성

## 2. 주요 법률 규정 분석

### 가. 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의 일반적인 이용자 보호 의무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계약체결 시 계약서 사본을 이용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나. 정보통신기기와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보호

#### 1) 요금 및 약관 규제

##### 가)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의 요금 및 약관 규제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부가통신역무의 경우 과기부 장관에게 서비스 요금을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22조의4),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약정한 요금한도 초과시, 국제전화요금 부과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32조의2).

그리고 전년도 매출 일정 금액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서비스별 이용약관을 과기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8조).

##### 나) 「정보통신망법」상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의 요금 및 약관 규제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과기정통부 장관

은 이용자 이익 침해가 우려될 경우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법 제56조). 이를 위반하여 약관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 76조 제3항 제15호).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은 타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삭제, 임시조치 등에 관한 내용, 절차 등과 관련한 사항은 미리 약관에서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법 제44조의2 제5항).

한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재화등의 판매·제공의 대가가 발생한 때 및 대가를 청구할 때에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게 ① 이용일시, ② 구매·이용거래 상대방, ③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 금액 및 명세, ④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등을 고지하여야 한다(법 제58조 제1항). 또한 이용자에게 구매,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기록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sup>24)</sup>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58조 제2항 및 제4항).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하는 업무를 제공하는 통신과

24) 제66조의7(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약관 변경 방법)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법 제5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2. 거래금액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
  4. 거래일시
  5. 대금을 청구·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6.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7.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 ④ 생략

금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도록 증액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서비스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약관 변경 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약관변경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법 제58조 제5항 및 제6항).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이용자의 증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정정요구에 이유가 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그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법 제58조 제3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가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결제방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58조 제9항).

과기정통부 장관은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에게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대여·제공하는 자, ② 제50조를 위반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 등의 수단을 이용하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재화등을 구매·이용하게 함으로써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자,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등을 판매·제공하는 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 정지, 제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법 제61조),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법 제73조 제8호).

#### 다) 「단말기유통법」상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 및 약관 규제

전기통신사업자 중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는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

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이용자와 체결한 개별계약은 무효가 되며, 개별계약을 체결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해당 행위를 한 자가 대규모 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5조 및 제22조 제4항 제2호).

라) 「개인정보 보호법」상 요금 및 약관규제

개인정보처리자는 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②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③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④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⑤ 제23조 제3항에 따른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해당되는 경우), ⑥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⑦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에 따른 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 ⑧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⑨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 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⑩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 ⑪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75조 제4항 제8호).

2023년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평가는 ① 이 법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정하고 있는지 여부, ②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였는지 여부, ③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이루어진다(법 제30조의2 제1항).

## 2) 개인정보 보호

### 가)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일반적인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된다. 이 법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 있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개인정보를 수집 등 처리하는 경우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법률이다. 따라서 특정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시장진입 규제 등을 다루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정보주체의 권리의 내용과 보장방안, 개인정보 처리시의 의무사항, 분쟁해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주체에 대하여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신고 후 필요한 대응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나)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항목과 이유 등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지하여야 하는 항목 등의 정보는 다음과 같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법 제22조의2 제1항 및 제2항).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76조 제1항 제1호).

〈표 2-9〉 접근권한의 성격에 따른 고지 내용의 범위

구분	내용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li> <li>•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li> </ul>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li> <li>•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li> <li>•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li> </ul>

자료: 저자 작성

그리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제조업자,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있는 정보 및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22조의2 제3항).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76조 제1항 제1의2호).

한편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23조의2).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76조 제1항 제2호).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가 보이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자의 컴퓨터나 휴대인터넷·휴대전화 등과 같이 정보통신망에 연결되어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장치에 설치하려면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용도와 삭제방법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법 제50조의5 및 시행령 제6조).

#### 다. 콘텐츠 유통시의 이용자 보호

##### 1) 권리침해 콘텐츠에 대한 임시 또는 삭제 조치

「정보통신망법」은 이용자 보호 목적으로 사생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의 삭제와 임시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44조 제2항).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내용의 게재(이하 '삭제 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삭제 등'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 및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이를 신청한 사람과 해당 정보를 게재한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44조의2 제1항 및 제2항). 신청자가 권리침해에 따라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더라도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법 제44조의2 제4항).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임시조치를 실시한 경우 신청인과 정보게재자에게 알리고 임시조치를 한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당 게시판 등에 게시 등을 하여야 한다(법 제44조의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그 내용과 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삭제나 임시조치를 실시한 경우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법 제44조의2 제6항).

2) 불법정보 유통 방지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중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이하 ‘거부 등’이라 한다)하도록 명할 수 있다. 처리의 거부 등을 명할 수 있는 불법정보의 유형 및 관련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0〉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정보의 유형 및 규제

No.	불법정보의 내용(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제9호)	구분
제1호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처리 거부 등을 명할 수 있음
제2호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처리 거부 등을 명할 수 있음 * 단,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불가
제3호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처리 거부 등을 명할 수 있음 * 단,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불가
제4호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처리 거부 등을 명할 수 있음
제5호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처리 거부 등을 명할 수 있음
제6호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처리 거부 등을 명할 수 있음
제6의2호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	처리 거부 등을 명할 수 있음
제6의3호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	처리 거부 등을 명할 수 있음
제7호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 거부 등을 명하여야 함
제8호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 거부 등을 명하여야 함
제9호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 거부 등을 명하여야 함

자료: 저자 작성

단, 일부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처리의 거부 등을 명할 수는 없다(법 제44조의7 제2항). 그리고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불법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sup>25)</sup>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이 있었고,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리 ‘거부 등’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고,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①~③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처리 거부 등을 명령하여야 한다(법 제44조의7 제3항). 처리 거부 등의 명령을 위반하여 이를 이행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법 제73조 제5호).

한편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

25)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보통신서비스 제공자<sup>26)</sup>의 경우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불법촬영물 등’에 해당하는 정보는 ① 불법 촬영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 ② 허위 영상물(「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sup>27)</sup> ③ 아동성착취물(「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 
- 26) 제35조의2(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① 법 제44조의9제1항에 따라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같은 법 제2조제14호가목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
  2.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같은 법 제2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고 별표 1의2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27)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sup>28)</sup> 등이다.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76조 제2항 제4의4호).

### 3) 청소년 보호

#### 가) 「정보통신망법」상 청소년 보호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 중에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sup>29)</sup>을 제공하려고 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하는데(법 제42조),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는 것이 금지되는데(법 제42조의2),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법 제44조의2 제3항).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의 종류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sup>30)</sup>는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

28) 제2조(정의) 1.~ 4. 생략

5.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29)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2호 마목의 매체물(「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정보(「청소년 보호법」 제7조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30) ① 전년도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자, ② 정보통신

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해당 책임자는 사업자의 임원 또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에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 중에서 지정하며,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를 차단·관리하고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 보호계획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 보호업무를 하여야 한다(법 제42조의3). 이를 위반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제76조 제3항 제3호).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문자, 음성을 이용하여 사람과 대화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44조의8). 다만 이는 노력규정에 해당하여 아동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과태료 등의 제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나) 「개인정보 보호법」상 청소년 보호

「개인정보 보호법」은 청소년 보호에 관하여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보호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법 제22조의2).

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청소년 보호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과 전기통

---

서비스부문 전년도(법인의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자, ③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자로 ①~③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시행령 제25조)

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를 차단하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32조의7).

#### 라. 정보보호 관련 규제

##### 1) 정보통신망에 대한 보호조치

##### 가) 정보통신망 등의 보호조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데,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보호지침상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새롭게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계획 또는 설계에 있어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정보통신망법」과 다른 법률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으로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단순한 구입비용은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인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과 ② 과기정통부 장관이 신규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보호 사전점검기준에 따라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법 제45조의2 및 시행령 제36조의4).

한편 소프트웨어사업자<sup>31)</sup>의 경우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을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통지하여야 하고,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작한 날부터 1개월 이내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47조의4 제4항).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76조 제3항 제10호).

3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의미하며,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의미한다.

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대한 보안 및 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sup>32)</sup>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로 지정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면제된다(법 제45조의3 제1항).<sup>33)</sup>

32) 제36조의7(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 및 겸직금지 등) ① 법 제45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자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나.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나. 이사(「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한다)

다. 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33) 시행령 제36조의7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다.

가. 자본금이 1억원 이하인 자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개선 등의 업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산총액, 매출액 등이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sup>34)</sup>에는 다른 업무와 겸직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법 제45조의3 제3항 및 제4항). 요구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에게 다른 업무를 겸직하게 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76조 제1항 제6의2호 및 제6의3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주요 업무와 겸직이 금지되는 업무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1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주요 업무 및 겸직 금지 업무

구분	내용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선</li> <li>• 정보보호 실태와 관행의 정기적인 감사 및 개선</li> <li>• 정보보호 위험의 식별 평가 및 정보보호 대책 마련</li> <li>• 정보보호 교육과 모의 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ul>
겸직이 금지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에 관한 업무</li> <li>•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정보보호책임자의 업무</li> <li>•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업무</li> <li>•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li> <li>• 그 밖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이행</li> </ul>

자료: 저자 작성

-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해야 하는 개인 정보처리자
  -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하는 통신판매업자
- 34) 시행령 제36조의7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다.
- 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자
  - 나.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 중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자

다) 침해사고 시 조치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다. 이용자에게 요청하는 보호조치에 관하여 ① 이용자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유와 요청방법, ② 이용자가 하여야 할 보호조치의 내용, ③ 이용자가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 기간, ④ 이용자의 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이용자의 이의제기 및 배상 절차 등을 이용약관으로 정해두어야 한다(법 제47조의4 제3항 및 제5항, 시행령 제55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기정통부 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48조의3 제1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고대응, 복구 및 재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48조의4 제1항). 침해사고를 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76조 제1항 제6의6호).

그리고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 운영자<sup>35)</sup>는 침해사고의 유형별, 소통량, 접속경로별 이용 통계

35) 시행령 제57조(침해사고 관련정보 제공자) 법 제48조의2제2항제3호에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 및 제정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계획 및 보호지침의 적용을 받는 기관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침해사고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3.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할당받아 독자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등 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과기정통부 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48조의2 제2항).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 등과 관련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제조, 수입한 자에게 제품 취약점 개선 등 침해 사고 확대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법 제48조의5 제3항).

한편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거래의 안전성,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관리적 조치, 정보보호시스템 구축 등 기술적 조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57조). 관리적,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76조 제3항 제16호).

## 2) 기기 및 서비스 단계에서의 정보보호(개인정보 보호)

### 가) 접근 권한의 제한·관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제1항). 그리고 만약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제2항).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제3항). 이 경우, 개인정보취급자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 제4항). 이를 규제하는 이유는 다수의 개인정보취급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 하더라도 하나의 아이디를 공유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Traceability)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 나) 접근 통제

사업자, 공공기관 등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IP 주소 등을 통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을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 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기능,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 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1항). 또한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 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거나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5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P2P 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공개·유출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3항). 또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정보가 유출·변조·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4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권한 있는 개인정보취급자만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정정보 또는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조 제6항).

#### 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암호화 조치 안내서」 따르면, '암호화'란 일상적인 문자로 쓰이는 평문을 암호키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알아볼 수 없도록 기호 또는 다른 문자 등의 암호문으로 변환하는 것으로서, 개인정보가 비인가자에게 유출되더라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거나 어렵게 하는 보안기술을 의미한다. 주요 개인정보가 암호화되지 않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그대로 저장되거나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될 경우, 불법적인 노출 및 위·변조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암호화를 비롯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요구된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는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안전한 암호 키 생성, 이용, 보관, 배포 및 파기 등에 관한 절차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7조 제6항).

#### 라)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자 등의 접속기록은 개인정보의 입·출력 및 수정사항, 파일별·담당자별 데이터 접근내역 등을 자동으로 기록하는 로그 파일을 생성하여 불법적인 접근 또는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서는 접속기록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제1항).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고, 특히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제2항). 또한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

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8조 제3항).

마)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악성 프로그램 관련 정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발견된 악성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즉각 삭제 등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9조).

바) 관리용 단말기의 안전조치

‘관리용 단말기’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 운영, 개발, 보안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말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2조 제20호). 관리용 단말기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안전조치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관리용 단말기에 접근하여 임의로 조작하지 못하도록 하고, 본래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악성프로그램 감염방지 등을 위한 보안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0조).

3) 기반시설에 대한 보호조치

가) 취약점 분석 및 평가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국가안전보장·행정·국방·치안·금융·통신·운송·에너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의미하는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8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에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라고 지정한 것<sup>36)</sup>을 의미한다(법 제2조 제1호 및 제8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관리기관은 정기적으로 소관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①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별도의 취약점 분석·평가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실시하는 전담반을 구성하여야 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분야별로 설치된 정보공유·분석센터<sup>37)</sup>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에서 실시하도록 할 수도 있다(법 제9조 제1항~제4항).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않거나 취약점 분석·평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30조 제2항).

#### 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의 수립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라 소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및

36) 지정시에는 다음의 사항이 고려된다(법 제8조 제1항)

1.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국가사회적 중요성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의존도
3. 다른 정보통신기반시설과의 상호연계성
4.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안전보장과 경제사회에 미치는 피해규모 및 범위
5. 침해사고의 발생가능성 또는 그 복구의 용이성

37) 법 제16조(정보공유·분석센터) ① 금융·통신 등 분야별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공유·분석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1. 취약점 및 침해요인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정보 제공
2.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실시간 경보·분석체계 운영
- ② 삭제 <2015. 12. 22.>
- ③ 삭제 <2015. 12. 22.>
- ④ 정부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공유·분석센터의 구축을 장려하고 그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삭제 <2015. 12. 22.>

관리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 백업, 복구 등 물리적·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관리대책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수립한 보호대책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인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

과기정통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받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리고 확인한 보호대책의 이행 여부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법 제5조의2 제1항~제3항).

#### 다) 보호지침 권고 및 명령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하여 보호지침을 제정하고 해당 분야 관리기관의 장에게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법 제10조).<sup>38)</sup> ① 제출받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을 분석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과기정통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등이 통보한 보호대책 이행여부를 분석하여 별도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법 제11조). 2025년 1월부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호조치 명령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이 이를 대신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게 된다(법 제11조 제2항).

보호조치에 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30조 제1항 제1호).

38) 법 개정으로 2025년 1월 24일부터는 권고가 아닌 명령을 할 수 있게 된다.

#### 라) 침해사고 통지와 복구조치

관리기관의 장은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소관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교란·마비 또는 파괴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수사기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법 제13조 제1항), 해당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야 한다(법 제14조 제1항).

## 제 4 절 특수 규제

### 1. 분쟁해결제도

#### 가. 「전기통신사업법」

##### 1) 방송통신위원회 재정(제45조)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재정신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번만 90일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절차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재정절차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신청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같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정문서의 정본(正本)이 당사

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재정의 대상인 사업자 간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경우 또는 양쪽 당사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분명한 동의를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사건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알선을 할 수 있다(제46조).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①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 및 의견청취, ② 감정인에 대한 감정의 요구, ③ 분쟁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및 제출된 문서나 물건의 영치(領置)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제47조 제1항).

## 2) 통신분쟁조정

### 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45조의2)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한 다음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① 제33조<sup>39)</sup>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② 이용약관(제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한정되지 아니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③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

---

39) 제33조(손해배상)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제된다.

1.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되는 등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견이나 불만의 원인이 되는 사유의 발생 및 이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④ 전기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분쟁, ⑤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쟁, ⑥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 ⑦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분쟁 등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중 5명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②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③ 공인회계사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④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기통신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⑤ 그 밖에 전기통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다.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나) 위원의 신분보장(제45조의3)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제45조의4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 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45조의4)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③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④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

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한편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고,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라) 분쟁조정절차(제45조의5)

전기통신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up>40)</sup>을 기재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제시하고 조정 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40) 시행령 제40조의8(분쟁조정 신청 등) ① 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전자 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위임장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마) 직권조정결정(제45조의6)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직권조정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으며, 직권조정결정에는 ① 분쟁 원인행위의 중지, ② 손해배상이나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③ 같거나 유사한 분쟁 원인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직권조정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직권조정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권조정결정서에는 주문(主文)과 결정 이유를 적고 이에 관여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모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그 정본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권조정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 전술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 또는 거부 의사가 있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바) 분쟁조정거부 및 중지(제45조의7)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종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조정결정 또는 조정종결 사건에 관하여 다시 조정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신청의 내용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거부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 진행 중에 당사자 중 일방이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조정 개시 전에 이미 소가 제기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가 취하된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절차를 속개할 수 있다.

#### 사) 분쟁조정 효력 등(제45조의8)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 여부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당사자가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 전원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되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전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경우 조정서의 정보는 「민사집행법」 제56조<sup>41)</sup>에도 불구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주장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sup>42)</sup>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1)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42) 제44조(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①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이의는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
- ③ 이의이유가 여러 가지인 때에는 동시에 주장하여야 한다.

### 아) 조정의 종결(제45조의9)

조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결된다. ① 제45조의5 제5항에 따른 합의 권고를 통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②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조정사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45조의6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④ 제45조의7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을 거부한 경우, ⑤ 당사자가 제45조의8 제2항에 따라 지정 기간 내에 조정안에 대한 수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수락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⑥ 제45조의8 제3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된 경우, ⑦ 조정의 대상인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등이 그것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종결 사실과 그 이유를 적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 명예훼손 분쟁조정(제44조의10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를 두되, 그중 1명 이상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장은 위원 중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소집한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장이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의결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방청을 하게 할 수 있다.

다. 「개인정보 보호법」

1) 개인정보 분쟁조정

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제40조)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촉위원은 ①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경험하는 사람, ②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③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④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⑤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위원의 신분보장 및 제척·기피·회피(제41조, 제42조)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이 그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한 경우, ④ 위원이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위원은 제척이나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 다) 조정의 신청 등(제43조)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에 응하여야 한다.

#### 라) 처리기간(제44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기간연장의 사유와 그 밖의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마) 자료요청 및 사실조사 등(제45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료를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는 해당 조사·열람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조사·열람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나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바) 분쟁의 조정(제47조)

분쟁조정위원회는 ①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②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③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고,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조정の内容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사) 조정의 거부 및 중지(제48조)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이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를 진행하던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아) 집단분쟁조정(제49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 보호단체 및 기관, 정보주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피해 또는 권리침해가 다수의 정보주체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sup>43)</sup>에 대하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받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의결로써 아래의 집단분쟁조정의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그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여야 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그 분쟁조정의 당사자에 추가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신청을 받을 수 있고, 그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정보주체 중 일부의 정보주체가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중지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한 일

43) 제52조(집단분쟁조정의 신청 대상) 법 제4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건을 말한다.

1. 피해 또는 권리침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수가 다음 각 목의 정보주체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 가. 개인정보처리자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정보주체
- 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정보주체
- 다. 해당 개인정보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법원에 소(訴)를 제기한 정보주체
2.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부의 정보주체를 그 절차에서 제외한다.

집단분쟁조정 기간은 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단체소송

가) 단체소송의 대상 등(제51조)

① 「소비자기본법」 제29조<sup>44)</sup>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㉔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㉕ 단체의 정회원 수가 1천 명 이상일 것, ㉖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이거나, ②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sup>45)</sup>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100명 이상의 정보주체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㉕ 정관에 개인정보 보호를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

44) 제29조(소비자단체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비자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다.

1. 제28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수행할 것
2.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비자문제를 취급할 것
3. 대통령이 정하는 설비와 인력을 갖추어 것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것

②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소비자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5)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㉔ 단체의 상시 구성원 수가 5천 명 이상일 것, ㉕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등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집단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조정 결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 나) 전속관할 및 소송대리인 선임(제52조, 제53조)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 다) 소송허가신청(제54조)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①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② 피고, ③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송허가신청서에는 ① 소제기단체가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설명하는 자료와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라) 소송허가요건 등(제55조)

법원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 첫째, 개인정보처리자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둘째, 제54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등이다. 한편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 마) 확정판결의 효력(제56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제

51조에 따른 다른 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①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 경우, ②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1)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제34조)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과 관련한 분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저작권에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②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④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데이터 분야와 관련된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⑤ 그 밖에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은 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③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④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 36조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 및 제2항에 따른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 2) 분쟁의 조정(제35조)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

조정은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의결한 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행한다. 조정부의 위원은 사건마다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정안에는 신청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조정안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거부한 것으로 본다.

### 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제36조)

위원회의 위원은 ①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 ④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건의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척이나 기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 4) 자료요청 등(제37조)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5) 조정의 효력(제38조)

조정은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위원회에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에 성립한다. 위원회는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취하되거나 당사자 어느 한 쪽이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6) 조정의 거부 및 중지(제39조)

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 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7) 조정의 비용 등(제40조)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당사자에게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 1) 도입 목적 및 배경

#### 가) 목적

이 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이동통신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나) 배경

이동통신사업자의 불법 보조금과 가격 정보의 불투명성으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 고가 요금제로의 보조금 집중으로 과소비 및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 신규·번호이동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기기변경 가입자에 대한 혜택 미흡 등의 이동통신시장 상황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 2) 주요 규율 내용

#### 가) 개념(제2조)

① 이동통신서비스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말한다.

② 이용자란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이용자가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④ 대리점이란 이동통신사업자와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⑤ 판매점이란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⑥ 지원금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구매가격 할인, 현금 지급, 가입비 보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된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⑦ 장려금이란 ㉠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 또는 ㉡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대리점 또는 판매점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하여 제공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 나) 지원금 공시 및 준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지원금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하며, 공시한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

구체적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하여야 하는 내용은 가입기간, 요금제 등 세부기준별 ㉠ 단말장치명(팻네임 포함), ㉡ 출고가, 지원금,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액,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 등이다(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

한편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러한 공시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매일 1회 변경할 수 있다(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

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내용과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영업장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법 제4조 제5항 및 제6항).

#### 다)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 ㉡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 ㉢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사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3조 제1항).

공시한 동일한 공시기간 중에 동일한 이동통신단말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제안하는 경우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한다(시행령 제3조 본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인지 여부는 요금제별 지원금(무약정 가입자<sup>46)</sup> 기준)의 비례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3조 제1항).

이 경우 비례성은 약정기간 동안 동일한 조건에서 각 요금제의 지원율<sup>47)</sup>의 동일성 여부로 판단한다. 다만, 기대수익이 적은 요금제의 지원율이 기대수익이 많은 요금제의 지원율보다 높은 경우와 지원금을 일백원 단위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3조 제2항).

다만, ㉠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입 유형에 따른 지

46) 이동통신사업자와 별도의 약정없이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있는 가입자를 말한다.

47)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특정요금제의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의 가입자 당 기대수익(무약정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약정기간 동안 예상되는 요금수익)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급기준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소위 전환지원금의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요금제별 기대수익,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이동통신서비스별 요금제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한 지원금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이용자에게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시행령 제3조).

전환지원금과 관련하여 이동통신사업자는 기대수익<sup>48)</sup>, 이용자의 위약금, 심(SIM)카드 발급비용 및 장기가입혜택 상실비용 등을 모두 고려하여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3조) 그 상한액은 50만 원 이내로 한다(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3조).

#### 라)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

48)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2조(정의)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약금”이란 약정기간에 따른 지원금 또는 요금할인을 받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약정기간 종료 이전에 이동통신서비스의 해지 등을 하는 경우에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심(SIM; Subscriber Identification Module)카드”란 이동통신서비스가 가능한 통신단말장치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자 식별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거나, 이미 저장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용자 식별정보를 원격으로 다운로드하여 저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한다.
3. “전환지원금”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에게 영 제3조제1호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4. “장기가입혜택”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장기가입자 유치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쿠폰 등을 말한다.
5. “기대수익”이란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계약의 약정기간 동안 얻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요금수익 등을 말한다.

스 등의 일정 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이용자와 체결한 개별계약은 그 효력이 없다(법 제5조).

마)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혜택의 제공을 위한 이용약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를 준용한다(법 제6조 제1항).

구체적으로 이러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 제공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법 제6조 제2항).

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과 혼동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 표기하여 고지 및 청구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1항).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약관에 따라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광고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여서는 안되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할부판매하는 경우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부기간과 추가적으로 청구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한다(법 제7조 제2항 및 제3항).

사)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사전승낙제)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으며,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8조 제1항).

이 경우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한 때에는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법 제8조 제2항).

아)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하는 등 부당하게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급을 거절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려금을 제공할 때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과 협정을 체결할 때 대리점으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특정 부가서비스 또는 요금제 등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권유하도록 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리점과의 협정에 관하여 표준 협정서를 마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9조 제3항 및 제4항).

또한 이동통신사업자는 대리점·판매점 또는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부당하게 특정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의 유통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9조 제5항).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신고를 받거나 이를 인지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9조제6항)

자)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활성화 조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법 제9조의2 제1항).

구체적인 인증기준은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 시 개인정보 보호방안 등 이용자 보호 요건을 갖추는 것,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품질 및 가격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리 체계를 갖추는 것, ㉢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성능확인서 발급 및 반품·환불 절차 마련 등 판매 체계를 갖추는 것, ㉣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안심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갖추는 것 등이다(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 차)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수출 방지

누구든지 분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신고된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해외로 수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출을 목적으로 분실·도난 단말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0조 제1항).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단말장치가 분실·도난 단말장치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법 제10조 제2항).

#### 카) 긴급중지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의 차별지급 금지, 공시 내용과 다른 지원금 지급, 대리점 또는 판매점의 추가지원금,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동법의 내용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입유형별로 구분하여 그 행위의 일시 중지를 명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긴급중지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정명령을 기다려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거나 또는 위반행위가 현저하여 경쟁사업

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방해가 되거나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시정명령을 기다려서는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 타) 사실조사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지원금의 차별 지급 금지, 공시공시의 무, 추가지원금,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고지, 사전승낙제,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에 관한 동법의 내용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법 제13조 제1항).

#### 파) 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원금을 받지 아니한 이용자에 대한 혜택 제공,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 고지 등에 관한 동법의 내용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 포함),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공시공시의 무, 추가지원금,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고지, 사전승낙제,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에 관한 동법의 내용을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 ㉡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 위반행위의 중지, ㉤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

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㉞ 이행계획서의 제출 및 이행 결과의 보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2항).

#### 하) 과징금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 포함)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공시의무, 추가지원금,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고지, 사전승낙제,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 등에 관한 동 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 포함)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법 제15조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원금 차별 지급 금지, 추가지원금,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구분고지 등에 관한 동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5조 제2항).

### 3. 전파법

#### 1) 주요 개념

- ① ‘전파’란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 ② ‘주파수분배’란 특정한 주파수의 용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주파수할당’이란 특정한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인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④ ‘주파수지정’이란 허가나 신고로 개설하는 무선국에서 이용할 특정한 주파수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⑤ ‘주파수 사용승인’이란 안보·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⑥ ‘주파수회수’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하는 것을 말한다.

⑦ ‘주파수재배치’란 주파수회수를 하고 이를 대체하여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는 것을 말한다.

⑧ ‘주파수 공동사용’이란 둘 이상의 주파수 이용자가 동일한 범위의 주파수를 상호 배제하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⑨ ‘무선설비’란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⑩ ‘무선통신’이란 전파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기호·신호·문언·영상·음향 등의 정보를 보내거나 받는 것을 말한다.

⑪ ‘무선국(無線局)’이란 무선설비와 무선설비를 조작하는 자의 총체를 말한다. 다만, 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⑫ ‘무선종사자’란 무선설비를 조작하거나 설치공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70조 제2항에 따라 기술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⑬ ‘시설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부터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개설신고를 하고 무선국을 개설한 자를 말한다.

⑭ ‘위성망’이란 우주국과 지구국으로 구성된 통신망(위성주파수와 위성궤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총체를 말한다.

⑮ ‘위성궤도’란 우주국의 위치나 궤적(軌跡)을 말한다.

⑯ ‘전자파장해’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자재로부터 전자파가 방사(放射: 전자파에너지가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전도[전자파에너지가 전원선(電源線)을 통하여 흐르는 것을 말한다]되어 다른 기자재의 성능에 장애를 주는 것을 말한다.

⑰ ‘전자파적합’이란 전자파장해를 일으키는 기자재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가 제47조의3 제1항에 따른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보호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⑱ ‘방송통신기자재’란 방송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장치·기기·부품 또는 선조(線條) 등을 말한다.

⑲ ‘전파환경’이란 인체, 기자재, 무선설비 등을 둘러싸고 있는 전파의 세기, 잡음 등 전자파의 총체적인 분포 상황을 말한다.

## 2) 전파자원의 확보

### 가) 전파자원 이용효율의 개선(제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파자원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① 주파수분배의 변경, ②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 ③ 새로운 기술방식으로의 전환, ④ 주파수의 공동사용 등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파수의 이용 현황을 조사하거나 확인할 수 있다.

### 나)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제6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주파수분배가 변경된 경우, 주파수 이용실적이 낮은 경우 또는 주파수 대역(帶域)을 정비하여 주파수의 이용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수 있다.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다) 주파수 공동사용(제6조의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라)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등(제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주파수회수 또는 주파수재배치를 할 때에 해당 시설자와 주파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시설자등'이라 한다)에게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① 시설자등의 요청에 따른 경우, ② 국제전기통신연합이 모든 국가가 공통적으로 수용하여야 할 주파수 국제분배를 변경함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 ③ 주파수의 용도가 제2순위 업무(해당 주파수를 운용할 때에 제1순위 업무를 보호하여야 하고, 제1순위 업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업무)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손실을 보상한 경우 해당 주파수에 대하여 새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신규이용자')에게 보상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신규이용자가 시설자등에게 그 손실을 직접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손실보상 금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해당 시설자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가를 받고 할당한 주파수를 회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파수의 이용기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주파수할당 대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의 요청에 따라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이의신청 등(제7조의2)

시설자등은 손실보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손실보상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이의신청한 시설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바) 전파진흥기본계획(제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파이용의 촉진과 전파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전파방송기기 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전파진흥기본계획(‘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워야 하고, 기본계획을 세우거나 기본계획 중 주파수 분배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전파방송산업육성의 기본방향, ② 중·장기 주파수 이용계획, ③ 새로운 전파자원의 개발, ④ 전파이용 기술 및 시설의 고도화 지원, ⑤ 전파매체의 개발 및 보급, ⑥ 우주통신의 개발, ⑦ 전파이용질서의 확립, ⑧ 전파 관련 표준화에 관한 사항, ⑨ 전파환경의 개선, ⑩ 그 밖에 전파방송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이 그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 전파 이용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3)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 가) 주파수분배(제9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① 국방·치안 및 조난구조 등 국가안보·질서유지 또는 인명안전의 필요성, ② 주파수의 이용현황 등 국내의 주파수 이용여건, ③ 국제적인 주파수 사용동향, ④ 전파이용 기술의 발전추세, ⑤ 전파를 이용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주파수분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파수 용도가 제1순위인 업무와 주파수 용도가 제2순위인 업무를 구분하여 주파수분배를 할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주파수분배를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주파수분배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주파수분배에 따라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특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 유효기간과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 나) 주파수분배의 변경에 따른 이용자지원 등(제9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이용자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무선설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해당 무선설비의 이용자(제조·수입·판매자는 제외)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의 잔존가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으로 지원하거나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개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지원의 대상·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금전 지원의 경우에는 예고기간 및 내용연수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원을 한 경우 새로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다) 주파수할당(제1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①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② 「방송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의 용도로 정한 주파수를 특정인에게 할당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파수할당이 기간통신사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와 할당하는 주파수의 용도 및 기술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up>49)</sup>을 공고하여야 한다.

49) 제11조(주파수할당의 공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가산정 주파수할당의 경우에만 해당하고,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격경쟁 주파수할당(이하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이라 한다)에만 해당한다.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공고된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주파수할당을 하려면 주파수할당을 받을 자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전파자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한 수준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라)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제1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공고된 주파수를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등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 대가를 받고 주파수할당을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가격경쟁에 의한 대가를 받고 할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 미만으로는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없는 경쟁가격(“최저경쟁가격”)을 정할 수 있다.

#### 마) 심사에 의한 주파수할당(제1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공고된 주파수에 대하여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①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② 신청자의 재정적 능력, ③ 신청자의 기술적 능력, ④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

- 
2. 할당방법 및 시기
  3. 주파수할당 대가
  4. 주파수 이용기간
  5.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에 관한 사항
  - 5의2. 주파수할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6. 제13조제2항에 따라 붙이는 조건
  - 6의2. 가격경쟁주파수할당의 방법 및 절차
  - 6의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최저경쟁가격(이하 “최저경쟁가격”이라 한다)
  7. 그 밖에 주파수할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여 주파수할당을 한다.

바) 주파수할당의 결격사유(제13조)

①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② 기간통신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③ 종합유선방송사업이나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로서 「방송법」 제13조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나 전송망사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주파수할당을 받을 수 없다.

사) 주파수이용권(제14조)

대가할당으로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해당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주파수이용권’)를 가지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에도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승인을 하는 경우 제12조에서 규정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아) 주파수할당의 취소(제15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파수할당을 받은 경우, ②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방송법」 제18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의 허가나 전송망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③ 공고한 주파수용도나 기술방식을 위반한 경우, ④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그 대가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파수할당을 취소하여야 한다.

### 자) 재할당(제16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용기간이 끝난 주파수를 이용기간이 끝날 당시의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할 수 있다. 다만, ① 주파수 이용자가 재할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해당 주파수를 국방·치안 및 조난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국제전기통신연합이 해당 주파수를 다른 업무 또는 용도로 분배한 경우, ④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재할당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고, ① 주파수 이용자가 재할당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주파수를 국방·치안 및 조난구조용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재할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심사할당한 주파수를 주파수할당 대가를 받고 재할당하는 등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차) 주파수사용승인(제18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안보·외교적 목적 또는 국제적·국가적 행사 등을 위하여 특정한 주파수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파수 사용승인(위성주파수 사용승인의 경우 위성궤도의 사용승인을 포함)을 할 수 있다.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주파수 사용의 가능성 및 전파혼신 등을 심사하여 그 결과가 적합하면 주파수 사용승인을 하고, ① 전파의 형식, 점유주파수대역폭 및 주파수, ② 안테나공급전력[안테나의 급전선(給電線)에 공급되는 전력을 말한다], ③ 안테나의 형식·구성 및 이득 등의 사항을 포함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무선국 폐지 등으로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해당 주파수를 반납하여야 한다.

#### 4) 전파자원의 이용

##### 가) 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제19조)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그 무선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무선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자의 수와 전체 가입자의 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나) 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제19조)

①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② 수신전용의 무선국, ③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전기통신역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④ 「방송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으로서 국가 간, 지역 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인명안전 등을 목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아닌 무선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sup>50)</sup>을 개설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50) 시행령 제24조(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으로 한다.

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만, 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전파전문업무를 하는 수신전용 무선기기
3. 이동국·육상이동국용 무선설비 중 휴대용 무선기기. 다만, 차량·선박 등 이동체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sup>51)</sup>은 과학

4. 다른 일반지구국으로부터 주파수, 출력, 전파형식 등 송신의 제어를 받는 일반지구국의 무선기기
  5.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4,720메가헤르츠(MHz) 이상 4,820메가헤르츠(MHz) 이하 또는 28.9기가헤르츠(GHz) 이상 29.5기가헤르츠(GHz) 이하의 주파수를 이용하는 육상국·기지국 또는 이동중계국을 설치하는 자가 해당 무선국과 통신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이동국·육상이동국용 무선기기
  - ② 법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 본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
      - 가. 이동통신
      - 나. 휴대인터넷
      - 다. 위치기반서비스
      - 라. 무선데이터통신
      - 마. 서비스제공지역이 전국인 주파수공용통신 및 무선호출
      - 바. 그 밖에 국가간·지역간 전파혼신 방지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무선국의 설치장소, 운영시간, 주파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 등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
    2. 「방송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또는 같은 조 제13호에 따른 전송망사업을 하기 위한 무선국
  - ③ 법 제1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 위성방송보조국
    2. 지하·터널내에 개설하는 지상파방송보조국
- 51) 시행령 제25조(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법 제19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무선국을 말한다.
1. 표준전계발생기·헤테르다인방식 주파수 측정장치, 그 밖의 측정용 소형발진기
  2.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개인의 일상생활에 자유로이 사용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주파수를 이용하여 개설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기기
  3.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기기 외의 수신전용 무선기기
  4.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기기로서 다른 무선국의 통신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출력의

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다.

다) 무선국 개설허가 등의 절차(제21조)

무선국의 개설허가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허가(이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① 주파수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② 설치하거나 운용할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③ 무선종사자의 배치계획이 제71조에 따른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④ 제20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조건에 적합한지 여부 등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심사한 결과 그 신청이 적합하면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 신청인에게 무선국의 준공기한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sup>52)</sup>이 적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범위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용도 및 주파수와 안테나공급전력 또는 전계강도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기기

52) 시행령 제33조(허가증의 기재사항)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무선국의 허가증에 적을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2.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
3.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
4. 무선국의 목적
5.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을 말한다)
6.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7. 허가의 유효기간
8.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
9. 전파의 형식·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아마추어국 등 주파수 대역으로 표시가 가능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주파수 대역으로 표시할 수 있다)
10. 안테나공급전력
11. 안테나의 형식·구성 및 이득(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안테나 형식만 해당한다)
12. 운용허용시간
13.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

## 라) 시설자의 지위승계(제23조)

① 시설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그 사업과 관련된 무선국을 양도한 경우의 양수인, ② 시설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 ③ 시설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인, ④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 또는 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를 운항하는 자는 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또는 ④에 해당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을 승계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업을 위한 방송국 시설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인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 마) 검사(제24조)

무선국 개설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무선국의 개설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무선설비가 준공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준공신고를 하고 그 무선설비가 기술기준 및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

14. 무선국의 준공기한

15. 시험전파의 발사기간 및 내용(시험전파의 발사를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16. 무선기기의 명칭 및 기기일련번호(아마추어국의 경우에는 무선기기의 명칭만 해당한다)

대하여 검사(이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검사한 결과 그 무선설비가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하고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이 제71조에 따른 자격·정원배치기준에 적합하면 지체 없이 검사를 받은 자에게 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한 결과가 적합하지 아니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① 제21조 제4항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은 무선국, ② 제22조의2 제1항에 따라 개설신고를 한 무선국(제19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무선국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5년의 범위에서 무선국별로 대통령령<sup>53)</sup>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무선국이 있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외국에 출항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전파의 효율적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무선종사자의 자격과 정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

53) 제44조(정기검사의 유효기간) ① 법 제2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에 따른 무선국: 1년

가. 의무선박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의무선박국은 제외한다)

나. 의무항공기국(제2호다목에 따른 의무항공기국은 제외한다)

다. 실험국

라. 실용화시험국

2. 다음 각 목에 따른 무선국: 2년

가. 총톤수 40톤 미만인 어선의 의무선박국

나.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구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여객선 및 어선은 제외한다)의 의무선박국

다.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헬리콥터 및 경량항공기의 의무항공기국

3. 제3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무선국: 3년

4.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 5년. 다만, 인명구조 및 재난 관련 무선국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은 2년으로 한다.

경우에는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아 개설된 무선국이 사용승인서에 적힌 대로 개설되어 운용되고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 5) 전파자원의 보호

##### 가) 기술기준(제45조)

무선설비(방송수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주파수 허용편차와 안테나공급전력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무선설비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86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나)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등(제47조의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무선설비, 전기·전자기기 등(이하 ‘무선설비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①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② 전자파 등급기준, ③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 ④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⑤ 전자파 측정대상 기자재와 측정방법, ⑥ 전자파 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 ⑦ 그 밖에 전자파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그것이다.

무선국의 시설자나 무선설비등을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무선설비등으로부터 방출되는 전자파 강도가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을 초과하는 장소에는 취급자 외의 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안테나공급전력 및 설치장소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및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에 따라 전자파 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전자파적합성 등(제47조의3)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한 전자파장해 방지기준 및 보호기준(이하 ‘전자파적합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전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전자파적합성 여부를 측정하거나 조사할 수 있고, 측정·조사된 전자파가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의 전자파 저감 및 차폐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라) 무선설비의 효율적 이용 및 자연환경 보호 등(제48조, 제48조의2)

시설자는 무선국 무선설비(우주국 무선설비는 제외한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무선국 무선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위탁운용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자연환경 및 도시미관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자에게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할 것을 명하거나 자연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등 환경친화적으로 무선설비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마) 전파감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전파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혼신의 신속한 제거 등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전파감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전파감시 업무는 ① 무선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편차·대역폭(帶域幅) 등 전파의 품질 측정, ② 혼신을 일으키는 전파의 탐지, ③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의 탐지, ④ 제28조 제2항에 따른 통신, 허가받지 아니한 무선국에서 발사한 전파, 혼신에 관하여 조사를 의뢰받은 전파 등의 방향 탐지, ⑤ 제25조 및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준수 여부, ⑥ 그 밖에 전파이용 질서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말한다.

## 6) 방송통신기자재의 관리

### 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 평가(제58조의2)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아래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 자기적합확인 또는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제68조·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적합등록')하여야 한다.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를 스스로

시험하거나 지정시험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의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자기적합확인”)하거나 적합등록을 하여야 한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보관·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 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적합성평가표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①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②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③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의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수입·판매를 허용(‘잠정인증’)할 수 있다.

#### 나) 시험기관의 지정(제58조의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①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②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을 확보할 것, ③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시험 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시험기관은 지정시험 업무를 일정 기간 중지하거나 지정시험 업무의 일부를 폐지하는 등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정시험 업무의 전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또는 지정시험 업무의 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을 통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제58조의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할 수 있고,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해당 국가의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 적합성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 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 1) 주요 개념

①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호<sup>54)</sup>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②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

③ ‘민간데이터’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6호<sup>55)</sup>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아닌 자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5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란 컴퓨터, 통신, 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記述書)나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55) 1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④ ‘데이터생산자’란 데이터의 생성·가공·제작 등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⑤ ‘데이터산업’이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유통·거래·활용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행위와 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⑥ ‘데이터거래사업자’란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직접 판매하거나 데이터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와 구매하고자 하는 자 사이의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⑦ ‘데이터분석제공사업자’란 데이터사업자 중 데이터를 수집·결합·가공하여 통합·분석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 2) 기본계획(제4조)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①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 ② 데이터의 생산 및 보호에 관한 사항, ③ 데이터 거래 촉진에 관한 사항, ④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⑤ 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⑥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⑦ 데이터산업 관련 창업 및 성장 지원 등 데이터사업자 및 데이터 전문기업의 육성과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 지원에 관한 사항, ⑧ 데이터산업 관련 국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⑨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운영되는 데이터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 ⑩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의 생성, 수집, 관리,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반영한다.

### 3)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제6조)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②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③ 데이터산업 진흥 정책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운영되는 데이터산업 진흥 관련 계획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주요 시책에 대한 집행실적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보건복지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국토교통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및 데이터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위원 2명을 두되, 간사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된다.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4)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인정보,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에 관하여는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5) 데이터 결합 촉진(제1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데이터 간의 결합을 통해 새로

은 데이터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 간의 교류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결합 촉진을 위한 교류 및 협력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① 국내외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간의 연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 ② 산업 간 데이터 전문 인력의 교류 활성화, ③ 결합 데이터의 거래·활용을 위한 사업, ④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자금, ⑤ 그 밖에 데이터 결합 및 융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6) 데이터안심구역(제1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안전하게 분석·활용할 수 있는 구역(‘데이터안심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고, 데이터안심구역 이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개방데이터, 분석 시스템 및 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개방데이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법인 등에 데이터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 제공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데이터안심구역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데이터의 변경·훼손·유출 및 파괴, 그 밖의 위협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물리적·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7) 데이터자산의 보호(제12조)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데이터자산’)는 보호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데이터자산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데이터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데이터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데이터자산의 부정사용 등

행위에 관한 사항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8) 가치평가(제14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공공데이터는 제외) 가치의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평가 기법 및 평가 체계가 데이터 관련 거래·금융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유통되는 데이터에 대한 가치평가를 전문적·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데이터에 관한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된 평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 9) 데이터 이동의 촉진(제15조)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데이터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0)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제17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를 거래함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상호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데이터사업자 중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데이터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 거래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① 데이터 거래 시장에 관한 현황 분석 및 평가, ② 데이터 거래 관련 사업

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③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④ 그 밖에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11)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 구축(제18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 유통 및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데이터 유통과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유통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12) 데이터 품질관리(제20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데이터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 품질인증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데이터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3) 데이터거래사 양성(제23조)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다. 데이터거래사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sup>56)</sup>으로

---

56) 시행령 제22조(데이터거래사의 경력 및 자격 등 기준) 법 제2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데이터 거래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말한다.

1.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연구경력이 3년 이상(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3.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4.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4년 이상(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5.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에서 재직할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정하는 데이터 거래 경력 및 자격 등의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등록된 사람은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상담·자문·지도 업무 및 데이터 거래의 중개·알선 등 데이터 거래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14) 전문기관의 지정·운영(제32조)

정부는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기관(‘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전문기관의 업무로 정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과 데이터 유통·활용 촉진 및 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정부는 데이터산업 전반의 기반 조성 및 관련 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용자 등을 할 수 있다.

## 제 5 절 소 결

본 장에서는 국내 정보통신법제를 시장 규제, 이용자 보호, 특수 규제의 세 범주로 구분하여 현행 법령의 구조와 규율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각 규율 목적별로 뚜렷한 특색이 존재하는 한편, 규제의 중첩과 공백이 병존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우선 시장 규제 영역은 주로 「전기통신사업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통신망 기반과 사업자 진입·퇴출, 설비 제공, 상호접속 등의 요소에 대한 규제가 구조적으로 정비되어 있다. 그러나 기술 발전에 따라 통신 서비스의 제공 방식이 다변화됨에 따라 기존의 설비 중심 분류체계는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실체를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가통신과 기간통신의 경계 역시 점차 모호해지고 있다.

그리고 이용자 보호 부문은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통신비밀, 이용자 피해구제 등 다양한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통신서비스와 데이터 서비스의 융합, 그리고 플랫폼 기반 정보 유통의 확대에 따라 보호의 범위와 적용 대상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권리(예: 알고리즘 설명권, 자동화 결정 거부권 등)에 대한 규정은 아직 법제 내에서 충분히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특수 규제는 「단말기유통법」, 「전파법」 등 기술적, 산업적 특수성에 기초한 개별 규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제 목적이 명확한 반면, 일반적인 정보통신법 체계와의 정합성이나 통합성은 낮은 편이다. 특히 단말기 유통 및 전파 자유탈당 등에 있어 정책 일관성과 규제 중첩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이러한 각 규제 목적별 체계는 개별적으로는 정당한 입법 취지를 지니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 전반에서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난다. 첫째, ‘규제 중복’의 문제이다. 무엇보다,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의 규율이 중첩되어 동일 서비스 또는 동일 주체에 대해 복수 법령이 적용됨에 따라 해석뿐만 아니라 집행상으로도 충돌할 우려가 높다. 둘째, ‘규제 공백’의 문제 역시 존재한다. 기술 융복합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서비스 유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정의나 규율이 결여된 영역이 점증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정보통신법제 전반에 ‘감독 구조의 분절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주무 부처 간의 조정 미비로 인해 일관된 법 집행이 어렵고, 사업자 규제 비용도 증가하는 실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요컨대, 현행 정보통신법 체계는 기술 융합 생태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전면적인 구조와 규정의 개편이 절실하다. 규율 목적 중심의 법령 정비, 부처 간 기능 재편, 중복 규제 통합 및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포괄적 일반법의 제정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달성하기 어려운 숙제임에는 분명하다. 다음 장에서는 현행 정보통신법 체계와 기술 생태계 간의 부정합성을 확인하고, 법 규정 간의 부정합성을 더욱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일관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기 및 중장기의 입법 방향을 가늠하기로 한다.

## 제 3 장 디지털 융합 양상과 현행법의 대응 한계

### 제 1 절 디지털 융합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특징

이하에서는 네트워크 융합, 서비스 융합, 지능화 세 가지 관점에서 디지털 융합 양상에 따른 구조적 변화와 특징을 살펴본다.

#### 1. 네트워크 융합

##### 가. 융합 사례

##### 1) 클라우드화

최근 몇 년간 주요 글로벌 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의 핵심 기능을 클라우드로 전환하는 추세이다. 일본의 라쿠텐 모바일은 2020년 세계 최초로 완전 클라우드 기반의 모바일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이후 미국의 Dish, AT&T, 스페인의 Telefonica 등이 5G 모바일 네트워크를 클라우드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하였다.<sup>57)</sup> 이러한 추세는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방식의 발전에 따른 것으로, 하드웨어에 의존하던 네트워크 기능은 가상화를 거쳐 클라우드에서 기본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실행되도록 설계된 클라우드 네이티브(cloud-native)로 진화하고 있다.<sup>58)</sup> 클라우드 네이티브 네트워크는 인프라에서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함께 패키징할 수 있는 컨테이너 기능, 애플리케이션을 작은 단위로 구성하는 마이크로서비스 등이 특징이며, 이전보다 향상된 성능, 비용 효율성, 유연성, 확장성 등 이점을 제공한다.<sup>59)</sup>

클라우드의 확산은 네트워크 자산을 이용하는 방식도 변화시키고 있는데, 대표

57) Capgemini Research Institute(2023), p.2.

58) Ericsson. "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NFV) explained." 2024. 12. 13. <https://www.ericsson.com/en/nfv>.

59) Capgemini Research Institute(2023), p.4.

적인 사례는 서비스형 네트워크(Network as a Service, 이하 NaaS)이다. NaaS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리도구, 및 수명주기 서비스를 포함하는 운영비용(OpEx) 모델을 통해 소비되는 네트워크 인프라로 정의된다.<sup>60)</sup> 네트워크 사용자 입장에서 NaaS는 구독 모델을 통해 비용이 지불되므로, 재정적으로 기존 자본적 지출 대비 네트워크 비용의 예측 가능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 관리를 제 공업체에 이전하여 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기술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되어 새로운 기능에 더 빠르게 액세스할 수 있다.<sup>61)</sup>

## 2) 인프라 요소 간 결합

증가하는 IT 자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네트워크, 서버 등 인프라 요소는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통합되고 있다. [그림 3 - 1]은 전통적인 인프라 구조, 컨버지드, 하이퍼컨버지드, 클라우드 인프라 구조를 보여준다. 컨버지드 인프라는 컴퓨팅, 네트워킹, 스토리지를 결합한 것이며,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Hyperconverged infrastructure, 이하 HCI)는 컨버지드 인프라에 가상화가 적용되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모든 구성 요소가 완벽하게 통합된 단일 시스템으로 작동한다. HCI는 IT 자원을 중앙집중화하여 비용 절감, 간편한 사용 방식과 빠른 속도, 확장성, 데이터 보호 등의 이점을 제공하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지원을 위해 증가하는 IT 자원 수요에 대응하는 데 적합하다.<sup>62)</sup> HCI는 의료시스템, 온라인 banking 플랫폼, 소매 재고 관리 등 방대한 데이터 처리와 빠른 속도, 효율성, 확장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sup>63)</sup>

60) Butler, Brandon and Susan G. Middleton(2023), p.5.

61) Butler, Brandon and Susan G. Middleton(2023), p.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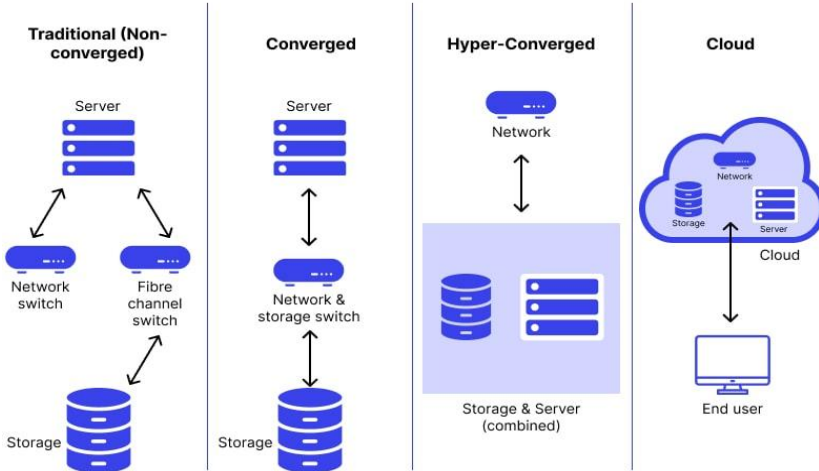
62) CISCO,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 소개”, 2025. 1. 13,

[https://www.cisco.com/c/ko\\_kr/solutions/data-center-virtualization/what-is-hyperconverged-infrastructure.html](https://www.cisco.com/c/ko_kr/solutions/data-center-virtualization/what-is-hyperconverged-infrastructure.html).

63) Schneider, Josh, and Ian Smalley(2024. 2. 12). “What is hyperconverged infrastructure?.” IBM, 2025. 1. 13,

<https://www.ibm.com/think/topics/hyperconverged-infrastructure>.

[그림 3-1] 인프라 구성 방식



자료: Beschokov, Mukhadin(2024)

#### 나. 구조적 변화

BEREC에 따르면 통신사업자와 클라우드 사업자가 상호작용하면서 시장역학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클라우드 시장은 IT 자원을 중앙집중형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특성상 상당한 매몰비용, 규모 및 범위의 경제, 생태계 효과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하이퍼스케일러(Hyperscaler)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sup>64)</sup> 하이퍼스케일러가 통신사업자와 상호작용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네트워크 연결과 관련이 있다. 하이퍼스케일러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데이터 센터 간 연결, 데이터 센터와 최종 이용자 간 연결을 필요로 하며,<sup>65)</sup> 특히 엣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자원을 최종 이용자 또는 장치에 가깝게 위치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통신사의 네트워크 자산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sup>66)</sup> 또한 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 운용의 효율성 향상 및 새

64) BEREC(2024a), p.21.

65) BEREC(2024a), p.39.

66) BEREC(2024a), p.38.

로운 사업을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상호의존적이다. 이에 대해 Plum Consulting and Stratix는 “통신 가치사슬의 클라우드화에 따라 하이퍼스케일러의 역할이 통신 분야에서 파트너, 중개자, 심지어 경쟁자로 자리매김하면서 다면적”이라고 분석하였다.<sup>67)</sup>

통신사업자와 클라우드 사업자의 협력 관계는 다양한 사업모델에서 확인된다. Kirchheimer and Mahony는 클라우드로 인해 촉진되는 통신사업자와 클라우드 간 사업모델을 Buy-from(구입처), 결합상품, 공동투자, 클라우드 마켓플레이스, CSP를 통한 판매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 클라우드가 통신사업자에게 클라우드 서비스를 판매하는 Buy-from 모델, 통신서비스와 클라우드를 고객의 수요에 따라 결합상품으로 제공하는 모델, 새로운 통합 서비스를 공동개발 및 출시하는 공동투자 모델은 통신 분야에서 클라우드 사업자의 파트너 역할을 보여준다. 하이퍼스케일러의 마켓플레이스에서 통신사업자의 연결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는 마켓플레이스 모델과 통신사업자(CSP)를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 재판매 모델에서는 클라우드 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가 서로 중개하는 역할을 나타낸다.<sup>68)</sup>

BEREC에 의하면 하이퍼스케일러가 자체 네트워크 구축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을 통해 통신사업자가 주도하던 시장에 진출하면서 기존 통신사업자와 경쟁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이퍼스케일러는 전 세계에 분산된 데이터센터 연결을 위해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한편, 데이터 트래픽 증가 대응, 서비스 통제 강화, 품질 안전성 등을 이유로 해저케이블, 광섬유, 위성 네트워크를 포함한 자체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하고 있다.<sup>69)</sup> 대형 콘텐츠 및 애플리케이션 사업자(large content and application providers, 이하 CAP) 또한 국제 해저케이블 구축에 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전통적으로 통신사업자가 주도하던 공급 구조가 크게 변화하였는데,<sup>70)</sup>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는 CAP인 동시에 하이퍼스케일러에 해

67) Plum Consulting and Stratix(2023), p.80.

68) Kirchheimer, Evan, and Richard Mahony(2023), p.15.

69) BEREC(2024a), p.40.

70) BEREC(2024b), p.35.

당한다. Submarine Telecoms Forum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3년 하이퍼스케일러의 영향을 받는 해저케이블 시스템 수는 24개로, 전체 해저케이블 시스템 102개 중 23.5%를 차지하였다.<sup>71)</sup> 하이퍼스케일러는 자체 네트워크 이용 목적 이외에도 통신 관련 서비스를 상품으로 제공하기도 하는데, AWS는 5G 사설 네트워크 영역에 진출하여 관련 서비스와 사설 모바일 네트워크를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 중이다.<sup>72)</sup>

## 2. 서비스 융합

### 가. 융합 사례

#### 1) 이종 서비스 간 융합

디지털 전환과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기술 발전 등에 따라, 사용자의 편의와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해 특정 영역에서 제공되던 개별 서비스 간 융합이 촉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홈은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제공되는 보안, 에너지 관리, 헬스케어, 엔터테인먼트 등 이종 서비스가 융합된 사례에 해당한다. 스마트홈은 집 안에 설치된 다양한 스마트홈 기기와 센서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센서에 의해 감지된 환경정보와 사용자 니즈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sup>73)</sup>

대표적으로 구글의 Google Nest, 애플의 HomeKit, 아마존의 Alexa, 삼성전자의 SmartThings와 같이 글로벌 IT 기업, 가전제품 제조사 등은 모바일 앱, 스마트 스피커 등을 통해 다양한 스마트홈 기기를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홈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sup>74)</sup> 이들 사업자는 서비스 확장성을 위해 자사 제품 이외에도 수많은 서드 파티업체들과 제휴하여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다. 구글의 스마트홈 관련

71) Submarine Telecoms Forum(2023), p.104.

72) Plum Consulting and Stratix(2023), p.81.

73) 김홍재(2023), p.6.

74) Justins, Adrian(2023. 5. 29), "How to choose between Apple HomeKit, Google Home and Amazon Alexa." *Financial Times*.

애플리케이션인 Google Home은 조명 및 플러그, 에너지 관리, 보안, 엔터테인먼트, 가전제품 관련 수천 개의 서드파티 기기와 호환된다.<sup>75)</sup>

## 2) 플랫폼 또는 앱 중심 서비스 융합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이하 CMA)는 디지털 시장 트렌드 중 하나로 디지털 플랫폼이 하나의 앱으로 서비스를 통합하는 추세이며, 단일 인터페이스로 더욱 표준화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슈퍼 앱’의 개발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소셜미디어 앱인 WeChat은 자체 결제 플랫폼과 메시징, 게임, 마켓플레이스 등을 결합하였으며, 320만 개 이상의 개발자 앱을 모두 WeChat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슈퍼 앱은 이 앱이 실행되어야 하는 미니 앱을 통해 앱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이며, 대부분 중국, 한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권에서 채택되었다.<sup>76)</sup> 서구권에서는 최근 미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X가 슈퍼 앱으로의 진화를 추진 중이다. 2022년 인수자인 엘론머스크가 X를 “모든 것을 위한 앱(the everything app)”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후, 2024년 유료 구독 서비스를 통해 음성, 영상 통화 기능을 도입하였으며, 향후 개인 간 금융거래 서비스를 추가할 예정이다.<sup>77)</sup>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모든 교통수단을 하나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Mobility as a service, 이하 MaaS)가 주목받고 있다. 이은영·오선주·강서은·최형원에 따르면, MaaS는 택시, 기차 등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대안 및 사용자 선호를 고려하여 이동계획, 예약, 전자 티켓팅, 지급결제 서비스를 하나의 디지털 플랫폼에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발전 중이다. MaaS는 현재 정보 또는 예약·결제의 통합을 제공하여 상용화 수준의 단계가 낮은 편이나, 스웨덴 Ubigo, 핀란드 Whim과 같이 유럽의 일부 서비스는 여러 이동서비스가 통합 제공되어

75) Google Home, 2025. 1. 15, <https://home.google.com/explore-devices/>.

76)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2023), pp.18~19.

77) 《이코노미스트》(2024. 2. 10), “머스크, X ‘슈퍼 앱’ 밀기 나섰다...“몇 달 안에 전화 번호 없앨 것”.

구독서비스 등으로 이용 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하였다.<sup>78)</sup> 모빌리티 분야에서 플랫폼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우버, 리프트 등 기존 공유차량 플랫폼 이외에도 완성차 업체, 구글, 애플 등 IT 기업 등이 직간접적 투자를 통해 참여하고 있다.<sup>79)</sup>

### 3) 중개서비스 융합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최근 자사 서비스 이용자, 콘텐츠와 크리에이터의 영향력을 기반으로 콘텐츠에 상품을 중개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서비스 영역을 전자상거래로 확대하고 있다. 유튜브는 미국에 이어 국내에서도 콘텐츠에 제품의 태그를 추가해서 시청자들이 태그에 표시된 링크를 통해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쇼핑 기능을 제공 중이다.<sup>80)</sup> 인스타그램은 2022년 이후 광고주와 협업을 희망하는 크리에이터를 연결해주는 크리에이터 마켓플레이스를 19개 국가에서 도입하였으며, 틱톡은 콘텐츠에 노출된 제품을 실시간으로 구매할 수 있는 라이브커머스 서비스인 틱톡샵을 운영하고 있다.<sup>81)</sup>

글로벌 OTT 서비스 사업자인 넷플릭스는 구글과 협업하여 2024년 콘텐츠 내 쇼핑 기능을 도입하였다. 이용자가 구글의 웹이미지 검색 기능인 구글 렌즈를 통해 특정 콘텐츠의 화면에서 이미지를 스캔하면, 배우가 착용한 스타일의 옷을 구입할 수 있는 특정 쇼핑 페이지로 이동하는 방식이다.<sup>82)</sup>

## 나. 구조적 변화

### 1) 플랫폼화

애플, 아마존, 구글 등 주요 디지털 기업들을 포함하여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78) 이은영·오선주·강서은·최형원(2023), pp.16~17.

79) 이은영·오선주·강서은·최형원(2023), p.25.

80) YouTube(2024. 6. 5), “크리에이터의 수익 창출을 돕는 새로운 유튜브 쇼핑 기능을 만나보세요!”, YouTube 한국 블로그, 2024. 12. 30, <https://youtube-kr.googleblog.com/2024/06/youtube-shopping-kr-update.html>.

81) 《브릿지경제》(2024. 6. 10), “SNS 본색은 커머스’… 유튜브·틱톡·인스타 쇼핑 기능 쏟아낸다”.

82) 《디지털투데이》(2024. 8. 16), ““에밀리가 입은 옷 뭐지?” 넷플릭스 속 의상, 구글 렌즈로 찾는다”.

다면적 플랫폼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OECD(2016), Busch, Graef, Hofmann, and Gawer(2021), Akman(2019)은 다면적 플랫폼의 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다면적 플랫폼은 거래비용이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플랫폼 없이는 당사자들이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없는 두 개 이상의 개별 사용자 집단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을 한다.<sup>83)</sup> 플랫폼의 다면적 특성은 한 그룹의 참여가 다른 그룹의 참여에 따라 달라지는 직간접적인 네트워크 외부성을 발생시킨다.<sup>84)</sup> 직접적인 네트워크 효과는 사용자 수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이러한 유형에 해당된다. 간접적인 네트워크 효과는 다면적 시장의 한 사용자 그룹의 이익이 시장의 다른 그룹 사용자 그룹의 참여에 의해 달라지는 경우 발생하며, 앱스토어가 대표적인 예이다.<sup>85)</sup> 네트워크 효과는 사용자 집단의 특성과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따라 가격구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예를 들어 검색서비스, 소셜미디어에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한편으로는 광고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또한 다면적 모델과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가 결합될 경우 ‘승자 독식’과 ‘생태계’에 기반한 경쟁이 나타날 수 있다.<sup>86)</sup>

앞서 스마트홈, 슈퍼 앱 등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플랫폼은 생태계를 형성하고 확장시키려 하는데, 데이터의 중요성 관점에서 플랫폼이 생태계를 형성하여 지배적인 플랫폼이 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Nicoletti, Vitale and Abate에 따르면 디지털 경제에서 데이터는 그 자체로 거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위한 투입물로 사용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온라인 플랫폼은 최종 이용자와 제품을 공급하는 제3자 간 중개를 하면서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으며, 플랫폼과 비즈니스 이용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 도달해야 하는 서로의 필요에

---

83) OECD(2016), p.11.

84) Akman, Pinar(2019), p.6.

85) Busch, Christoph, Inge Graef, Jeanette Hofmann and Annabelle Gawer(2021), pp.7~8.

86) Akman, Pinar(2019), p.6.

의해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지털 생태계’가 형성된다.<sup>87)</sup> Nicoletti, Vitale and Abate와 Busch, Graef, Hofmann, and Gawer에 의하면 플랫폼의 영향력의 핵심 요소는 앞서 살펴본 양면(다면) 플랫폼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주로 단일 플랫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싱글 호밍’의 경우 플랫폼은 특정 사용자 그룹에 대한 타사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다.<sup>88)</sup> 많은 가입자를 보유한 소셜네트워크를 통해서만 광고주가 이용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검색 결과를 통해 타사가 제공하는 콘텐츠, 제품, 서비스에 대한 접근도 제어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대규모 사업자 그룹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배적 위치를 확보한 플랫폼은 ‘게이트키퍼’가 된다.<sup>89)</sup> 게이트키퍼는 사용자의 방대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을 통해 개별 사용자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은 개인에 대한 추론이 가능한 소셜 데이터도 축적할 수 있다.<sup>90)</sup> [그림 3-2]는 게이트키퍼가 존재하는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데이터 흐름을 나타낸다. 게이트키퍼는 범위의 경계를 활용하여 기존 지배적인 시장에서 취득한 데이터를 관련이 없는 새로운 시장에서 활용하여 더욱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은 이처럼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를 형성하여 사용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단일 흐름으로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다.<sup>91)</sup>

---

87) Nicoletti, Giuseppe, Cristiana Vitale and Carolina Abate(2023), pp.13~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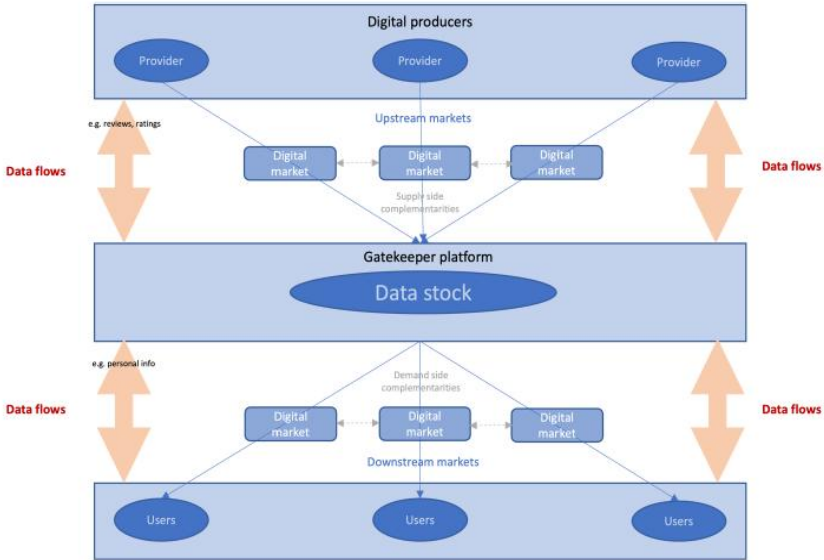
88) Busch, Christoph, Inge Graef, Jeanette Hofmann and Annabelle Gawer (2021), p.5.

89) Nicoletti, Giuseppe, Cristiana Vitale and Carolina Abate(2023), pp.13~14.

90) Busch, Christoph, Inge Graef, Jeanette Hofmann and Annabelle Gawer (2021), p.10.

91) Nicoletti, Giuseppe, Cristiana Vitale and Carolina Abate(2023), p.15.

[그림 3-2] 디지털 시장 생태계에서 게이트키퍼 플랫폼과 데이터 흐름



자료: Nicoletti, Giuseppe, Cristiana Vitale and Carolina Abate(2023), p.14

Busch, Graef, Hofmann, and Gawer는 온라인 플랫폼이 네트워크 효과의 영향을 받으므로 시간에 따라 그들의 전략도 진화한다고 설명한다. 초기에는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규모를 키우는 것이며, 성숙단계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수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앞서 소셜미디어 플랫폼들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가입자 기반의 성장을 추구한 이후, 가입자 수를 기반으로 전자상거래 기능을 제공하는 사례도 이러한 전략의 진화로 볼 수 있다.<sup>92)</sup>

## 2) 표준화

다양한 서비스가 융합됨에 따라, 표준화를 통해 상호호환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자발적으로 표준을 개발하고 채택하여 상호호환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92) Busch, Christoph, Inge Graef, Jeanette Hofmann and Annabelle Gawer (2021), p.6.

스마트홈 시장에서는 각 사업자가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각기 다른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플랫폼에 따라 기기가 호환되지 않아 서비스와 생태계가 확산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마존, 애플, 구글 등이 글로벌 표준 연합과 함께 2022년 오픈소스 기반의 스마트홈 연결 표준인 매티(Matter)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플랫폼의 경계가 낮아지면서 다양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스마트홈 확산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93)</sup>

메시징 서비스에서는 아이폰이 운영체제 iOS 18부터 안드로이드에서 채택한 이동통신업계 문자메시지 표준인 Rich Communication Services(RCS)를 도입하여 두 운영체제 간 메시징 서비스 호환성이 개선되었다. RCS는 SMS를 대체하기 위해서 개발되었으며, SMS보다 장문의 메시지 전송, 읽음 확인, 고해상도의 이미지 및 영상 전송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지난 5년간 안드로이드는 RCS를 채택한 반면 아이폰은 iMessage라는 독자적인 표준을 사용하여, 운영체제가 다른 단말기에서 메시지를 주고 받을 경우 SMS로 전송되어 이미지 품질이 저하되고 문자가 암호화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였다.<sup>94)</sup> 그러나 이번에 애플이 RCS를 채택하게 되면서 안드로이드와 iOS 운영체제간 메시지 전송서비스에서도 RCS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sup>95)</sup>

93) 김홍재(2023), pp.8~9.

94) *The Verge*(2024. 6. 11). "Apple is bringing RCS to the iPhone in iOS 18." 2025. 1. 15, <https://www.theverge.com/2024/6/10/24171315/apple-messages-rcs-ios-18-imessage-green-bubble>.

95) Apple(2024. 9. 16), "iMessage, RCS와 SMS/MMS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pple. 2025. 1. 15, <https://support.apple.com/ko-kr/104972>.

### 3. 지능화

#### 가. 융합 사례

##### 1) 인프라 및 단말기의 지능화

사물인터넷 기술은 사물이 센싱한 결과를 전송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원격에서 사물을 제어하는 ‘연결형’에서 센싱 후 전송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 지능적으로 분석, 진단하고, 의사결정 가능한 ‘지능형’, 사물이 지능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상호 소통 및 협업하여 인간의 개입을 최소로 할 수 있는 ‘자율형’으로 진화 중이다.<sup>96)</sup> James, Nayak and Singh에 따르면, 지능형 사물인터넷(Artificial Intelligence of Things, 이하 AIoT)은 센서, 인공지능, 통신, 데이터, 컴퓨팅 요소 등이 결합된 기술이며, 센서를 통해 사용자의 행동 및 선호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개인화된 추천 및 경험을 제공하고, 주변 환경에 지능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상황에 맞는 컴퓨팅 환경을 만든다.<sup>97)</sup> <표 3-1>과 같이 AIoT는 스마트 시티, 스마트 리테일,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 등 응용서비스에 활용되어 도시 및 건물의 운영 효율성 개선, 개인 맞춤형 서비스, 이상 감지 알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표 3-1> AIoT 응용 분야 및 사례

응용분야	사례
스마트 시티	센서, 조명, 계량기 등 스마트 기술은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설계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사용
스마트 리테일	스마트 카메라를 사용하여 쇼핑객의 얼굴을 인식하고 매장을 떠나기 전에 셀프 체크아웃에서 품목을 스캔했는지 감지
스마트 홈	스마트 가전제품은 인간과의 상호작용, 사용자 데이터를 통해 학습하고 사용자 습관을 이해하여 맞춤형 지원 제공

96)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20), p.194.

97) James, Anju, Hussain S Nayak and Nagendra Singh(2023), p.4.

응용분야	사례
스마트 오피스빌딩	사무실에 설치된 스마트 환경 센서 네트워크를 선택하여 사람의 존재를 감지하고 조명과 온도를 자동으로 변경하여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 얼굴 인식 기술을 통해 건물과 연결된 카메라와 AI를 사용하여 라이브 사진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외부인 출입 제어
기업 및 산업	제조업체는 스마트 칩을 사용하여 장비 작동여부와 부품 교체 시기 감지
자율주행차	여러 대의 비디오 카메라와 센서 시스템을 사용하여 주변 차량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주행 상황을 모니터링
헬스케어	의료 기기와 웨어러블은 실시간으로 건강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며 이상 발생 시 감지

자료: Yasar, Kinza, Alexander S. Gillis, and Gerry Christensen(2023)

조영빈에 의하면, AIoT 플랫폼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되며, 초저지연, 효율성 등을 위해 엣지컴퓨팅에 기반하여 데이터 처리 분산화가 공존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디바이스가 증가함에 따라 중앙집중형의 클라우드 방식에서는 부하와 네트워크 지연으로 인한 병목 현상이 유발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엣지 컴퓨팅 기술은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학습은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되, 지연 없이 빠른 결정을 위해 추론 부분은 엣지 클라우드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sup>98)</sup>

박종석·유지호에 따르면, 최근에는 인터넷 접속 없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AI 모델에 필요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On-Device AI)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온디바이스 AI는 서버에 전송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데이터를 수집 및 연산할 수 있어, 클라우드 방식 대비 저용량으로 비용 절감, 기기 사용자 데이터 보안 확보, 응답 시간 단축 등의 이점을 지니며, 기기 내 AI가 개인 데이터를 학습하면 개인화된 모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sup>99)</sup>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출시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는 세계 최초로 온디바이

98) 조영빈(2021), "AIoT 1탄, 가상과 실재를 아우르게 된 '지능형 사물인터넷', KT Enterprise, 2024. 12. 28, <https://enterprise.kt.com/bt/dxstory/925.do>.

99) 박종석·유지호(2024), pp.1~2.

스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실시간 통역, 음성 텍스트 변환 및 요약·번역, 사진 편집 등의 기능을 선보였다.<sup>100)</sup>

## 2) 서비스의 지능화

디지털 서비스의 정확성 및 효율성 개선,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표 3-2>는 최근 2년간 디지털 서비스 기업이 자체적으로 대규모 언어모델(LLM)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거나 생성형 AI를 적용하여 실제 서비스를 운영 중인 사례를 보여준다.

여행 플랫폼인 Expedia는 2024년 5월 여행사, 컨시어지, 개인 비서를 하나로 합친 인공지능 비서인 Romie를 공개하였다. Romie는 여행 계획 제안, 그룹 채팅 요약, 여행 일정 작성 등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목적지 비교, 고객 리뷰 요약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의사결정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sup>101)</sup>

전자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과 월마트는 수많은 상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추천하는 상품의 적합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Amazon은 고객이 입력한 검색어에서 검색엔진이 상식적인 지식을 추출하고 추론할 수 있도록 제품과 제품이 하는 역할(기능, 대상고객, 사용 위치 등) 간 상식적인 관계를 인코딩하는 그래프를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임산부용 신발’에 대한 검색어에서 임산부가 미끄럼 방지 신발을 원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sup>102)</sup> Walmart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온라인 쇼핑에서 카테고리가 세분화되면서 검색이 구체화될 때 각 카테고리와의 가장

100) 《한국경제》(2024. 12. 3), “세계 첫 ‘온디바이스 AI’…언어장벽 허물었다”.

101) Murthy, Rath(2024). “Traveling Just Got a Lot Smarter with Romie.” Expedia Group Technology, 2025. 1. 11, <https://medium.com/expedia-group-tech/traveling-just-got-a-whole-lot-smarter-with-romie-dfb9b21c07c5>.

102) Yu, Changlong, and Zheng Li(2024). “Building commonsense knowledge graphs to aid product recommendation.” Amazon, 2025. 1. 11, <https://www.amazon.science/blog/building-commonsense-knowledge-graphs-to-aid-product-recommendation>.

관련성이 높은 제품 유형이 식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sup>103)</sup>

디지털 콘텐츠를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콘텐츠 내용을 요약하고 관련 주제를 제안하는 기능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파일공유 플랫폼인 Dropbox는 파일 미리보기를 할 때 AI 기반으로 파일 내용 요약을 제공하며,<sup>104)</sup> Salesforce의 업무 플랫폼인 Slack은 생성형 AI를 통해 콘텐츠 요약 기능을 제공한다. Google과 Meta는 LLM이 시스템 사고를 요약하도록 하여 서비스 안전성을 위한 대응 시간을 단축하였다. 동영상 플랫폼인 Vimeo는 검색 증강 생성(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을 사용하여 영상 내용 요약과 이용자가 입력한 주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도록 주요 질문 리스트를 제공한다.<sup>105)</sup> LinkedIn은 LLM을 기반으로 게시물과 관련 있는 주제를 질문 형태로 제안하여 중요한 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도우며, 인공지능 비서를 통해 채용공고 적합성 평가 등 이용자에게 구직활동에 대한 조언을 제공한다.<sup>106)</sup>

---

103) Hassan, Adnan(2024). "Using Predictive and Gen AI to Improve Product Categorization at Walmart." Walmart Global Tech Blog, 2025. 1. 11, <https://medium.com/walmartglobaltech/using-predictive-and-gen-ai-to-improve-product-categorization-at-walmart-dc9821c6a481>.

104) Dash et al.(2024). "Bringing AI-powered answers and summaries to file previews on the web." Dropbox, 2025. 1. 11, <https://dropbox.tech/machine-learning/bringing-ai-powered-answers-and-summaries-to-file-previews-on-the-web>.

105) Faktor, Alon(2024). "Unlocking knowledge sharing for videos with RAG." Vimeo Engineering Blog, 2025. 1. 11, <https://medium.com/vimeo-engineering-blog/unlocking-knowledge-sharing-for-videos-with-rag-810ab496ae59>.

106) Bottaro, Juan Pablo and Karthik Ramgopal(2024). "Musings on building a Generative AI product." LinkedIn, 2025. 1. 11, <https://www.linkedin.com/blog/engineering/generative-ai/musings-on-building-a-generative-ai-product>.

〈표 3-2〉 LLM 또는 생성형 AI와 디지털서비스 융합 사례

산업	사업자	활용 사례
전자 상거래	Exped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여행 계획 조언, 상품 검색, 일정 등을 추천해주는 AI 비서 기능 제공</li> <li>생성형 AI를 목적지 비교, 고객 리뷰 요약, 고객지원 등에 활용</li> </ul>
	Amaz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물류센터에서 손상된 제품을 탐지하여 분리 및 제거하는데 활용</li> <li>추천 엔진이 상식적인 추론을 할 수 있도록 LLM을 사용하여 제품과 이용자 간 맥락 관계를 인코딩하는 그래프 구축</li> </ul>
	Walma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제품과 카테고리 간 관계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AI 기술인 Ghotok을 개발하여 제품 분류 개선</li> <li>제품 특성 추출(Product Attribute Extraction) 엔진을 활용하여 PDF에서 제품 특성 추출</li> </ul>
테크	Dropb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웹에서 파일 미리보기를 할 때 AI 기반 답변 및 요약 제공</li> </ul>
	Salesfor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성형 AI를 통해 비즈니스 업무 플랫폼인 Slack의 콘텐츠 요약 기능 제공</li> </ul>
	Goog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 보안 및 개인정보 관련 사고를 LLM이 요약하여 대응시간 단축</li> </ul>
	Me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LM 기반으로 시스템 사고의 근본 원인을 빠르게 식별</li> </ul>
소셜 네트워크	Linked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LM 기반으로 게시물 관련 주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질문 제안 및 응답 제공</li> </ul>
미디어 및 스트리밍	Vimeo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색 증강 생성(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을 사용하여 영상 내용 요약, 관련 장면에 대한 링크, 주어진 주제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질문 제공</li> </ul>
게임	Roblo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기반 자동 채팅 번역 기능 제공</li> </ul>

주: 1) 각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LLM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블로그, 논문, 또는 기사를 기반으로 함

2) 2023~2024년에 보도된 사례 중 일부 요약

자료: EVIDENTLY AI<sup>107)</sup>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GSMA에 의하면 통신사업자는 네트워크에 인공지능을 적용하여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고 정교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통신사업자는 인

107) EVIDENTLY AI. "ML and LLM system design: 500 case studies to learn from A database of 500 case studies from 100+ companies." 2025. 1. 11, <https://www.evidentlyai.com/ml-system-design>.

공지능을 네트워크 자원의 최적화 및 자동화를 위해 활용하는 한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공공 인프라 계획, 기후 변화 억제, 재난 및 전염병 관리 등을 지원하는 데이터 분석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KDDI는 센서, 사물인터넷 기기, 모바일 네트워크의 정보를 AI 기반 시스템에 통합하여 정부가 자연재해 대응을 최적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유럽의 Vodafone은 유럽에서 인구 통계 정보 및 이동 데이터를 분석하여 소매업체 위치 선정 등에 필요한 상권 정보를 제공 중이다.<sup>108)</sup>

#### 나. 구조적 변화

World Bank Group은 인공지능 특성상 선두 주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있으며, 잠재적으로 기업 간 역량 격차를 증폭시킬 수 있는 역동성으로 인해 소수의 기업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따른 혜택을 거두는 시장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인공지능 생태계는 미국과 중국의 특정 기업이 선도하고 있으며, 특히 빅테크가 자체 생태, 방대한 데이터, 막대한 자금을 활용하여 경쟁우위를 나타내면서, AI 제품 이용자가 기업과 국가 수준에서 종속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sup>109)</sup>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유럽, 미국 등 각국 규제기관은 생성형 인공지능서비스와 인공지능 파운데이션 모델 생태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공급 시장에서의 경쟁 관계를 검토 중이다.

EC는 생성형 AI 부문의 경쟁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시장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경쟁정책 브리프(Competition Policy Brief)에서 생성형 AI 관련 시장진입에 대한 잠재적 장벽의 발생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수행된 조사결과에 의하면 생성형 AI 시스템 개발 및 배포 과정에서 데이터, AI 가속기칩, 컴퓨팅 인프라, 클라우드 용량, 기술 전문 지식이 핵심적인 구성요소로 포함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각각의 요소가 다음과 같이 생성형 AI 시장 진입의 잠재적인 장벽 또는

108) GSMA(2023), pp.8~9.

109) World Bank Group(2023), p.91.

반경쟁적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AI 학습을 위해서는 대량의 고품질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하고 데이터 접근성이 제한된 스타트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AI 가속기칩, 컴퓨팅 인프라, 클라우드 이용을 위한 비용과 에너지 소비량이 매우 높은 편으로, 이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와 AI 신생 기업 간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주된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데이터 피드백 루프와 네트워크 효과가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거나 시장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인접한 AI 시장 경쟁에도 잠재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sup>11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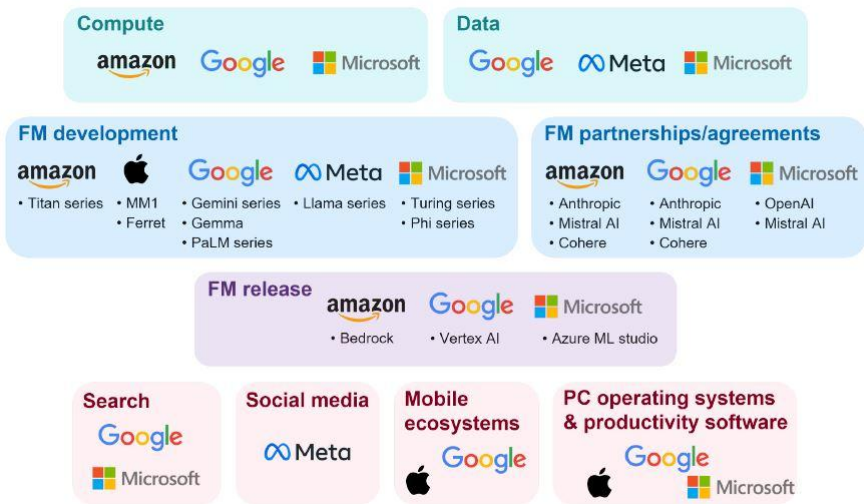
특히 주요 클라우드 사업자와 AI 공급업체 간 투자 및 파트너십이 증가하면서, 미국과 영국의 경쟁당국은 이러한 빅테크 주도의 파트너십이 AI 관련 시장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FTC는 2024년 1월 Microsoft와 OpenAI, Amazon과 Anthropic, Google과 Anthropic 간 형성된 수십억 달러의 투자와 파트너십이 새로운 시장의 혁신을 왜곡하고 공정경쟁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지 조사를 시작하였다. 생성형 AI에 필요한 데이터 입력 및 자원에 대한 경쟁, 시장 확장 및 거래의 경쟁적 영향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sup>111)</sup> CMA는 AI Foundation Model(이하 FM) 관련 가치사슬에서의 경쟁 상황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미 디지털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기술 기업이 FM 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장하여 경쟁을 위협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림 3-3]은 Google, Amazon, Microsoft, Meta, Apple(이하 GAMMA)의 FM 입력, 개발, 배포 등 FM 가치사슬 전반에서의 활동 영역을 나타낸다. 이미 검색, SNS 등 디지털 서비스 시장에서 영향력이 높은 GAMMA가 FM 가치사슬의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포함한 활동 영역을 확장하면서 수직 통합 수준이 높아지고

110) Kowalski, Klaus, Cristina Volpin, and Zsolt Zombori(2024), pp.4~5.

111) Federal Trade Commission(2024. 1. 25), "FTC Launches Inquiry into Generative AI Investments and Partnerships." 2024. 12. 11,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4/01/ftc-launches-inquiry-generative-ai-investments-partnerships>.

있으며, 파트너십, 투자, 전략적 계약을 통해 가치사슬 내 기업 간 상호연결성이 심화되고 있다.<sup>112)</sup> CMA의 조사 결과에서 2019년부터 GAMMA와 AI 가속기 칩 공급업체인 엔비디아가 FM 가치사슬 내 기업과 체결한 파트너십은 90개 이상이며,<sup>113)</sup> 컴퓨팅, 데이터, 유통, 투자 파트너십 형태로 관찰되었다.<sup>114)</sup>

[그림 3-3] FM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GAMMA 기업 현황



자료: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2024), p.29

112)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2024). p.28

113)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2024), p.30

114)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2024), pp.33-34

## 제 2 절 시장 생태계와 법체계 간의 부정합성

### 1.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의 부정합성

현행 법체계는 IT 산업이 시작되던 시점에서 마련되었거나 전통적인 인터넷 서비스 환경을 중심으로 법률이 구조화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IT 산업 초기의 사업이나 서비스의 유형에 따라 마련된 법률이 현재까지 적용되는 방식이다. 서비스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법률 개정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규제가 요구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국소적으로 대응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의 통신서비스 시장은 디지털플랫폼서비스와 같은 기존의 법률체계가 예정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 법제도가 시장의 현상과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례로 최근의 정보통신서비스는 하나의 사업자가 다양한 내용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동일한 공급망에서 서비스가 공급되는, 그리고 데이터가 특정 사업자에 의해서 통합되고 축적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지만 기존의 법률은 빠르게 변화하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형태 등에 유연하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은 모두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 목적은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구체적 규정들은 개별 규정에 따른 목적이 존재하므로 사실상 이용자 보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상거래법」은 모두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법률이 기능하고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고, 「전자상거래법」 또한 온라인상에서 상거래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소비자로서의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률로 기존의 상거래가 온라인으로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을 통제하는 것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같이 중개자로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 문제나 플랫폼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한 거래, 특히 정보가 불균형하게 혹은 계약조건을 불리하게 제시하는 거래 현상 등에 대해서는 현재의 개별 법률이 이를 적정히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디지털 융합 시대 디지털 시장의 가장 큰 변화는 서비스 거래 방식이 기존의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자의 1:1 관계가 아닌, 플랫폼서비스가 거래를 매개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플랫폼서비스 이용자는 전통적 서비스 이용자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거래하는 소위 ‘비즈니스 이용자’ 또한 이용자로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sup>115)</sup> 온라인플랫폼서비스가 데이터를 독점하거나 불투명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등 일반 이용자와 비즈니스 이용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시장 질서를 해하는 사례<sup>116)</sup>들이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고, 이미 유럽연합이나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이러한 온라인플랫폼서비스의 우월적 지위를 경계하기 위해 법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또한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대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하여 의무를 부담시키는 법률 제정을 시도하였지만 아직 입법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불투명한 알고리즘과 데이터 활용은 일반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선택권을 제한받게 된다는 점에서, 비즈니스 이용자

115) 선지원(2021),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방식에 대한 연구”, 《서울法學》, 29(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p.122

116) 대표적으로 아마존(Amazon)의 데이터 독점 사례를 들 수 있다. 글로벌온라인플랫폼사업자 아마존(Amazon)은 온라인으로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동시에, 마켓플레이스(MarketPlace)라는 온라인 몰을 운영하고 있다. 아마존은 비즈니스 이용자들이 자신의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면서 생성된 경쟁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자신들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이용한 바 있는데, 아마존과 마켓플레이스는 계약을 통해 비즈니스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비즈니스 이용자들에게 대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과 수집한 데이터의 이용조건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마존은 여러 비즈니스 이용자들이 동일한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 한 업체를 선정해 해당 상품을 노출시키고 있었는데, 상품의 노출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아마존이 수집한 비즈니스 이용자의 민감정보는 아마존의 전략에 반영되고, 자사 제품 판매에 활용되었다는 이유로 반독점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윤태영(2021),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중소·벤처기업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법학연구》, 15(3),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p.47

의 입장에서는 영업의 자유와 공정한 거래를 제한받는다든 점에서 법적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현행 법률상 데이터의 독점과 투명하지 못한 알고리즘의 활용 등에 대하여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의 형성’과 ‘소비자보호’라는 관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을 통해 가능하기도 하고,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통신사업자에 대한 관리 등의 방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 관점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통해서도 규율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을 통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등을 이유로 통제를 하기에 경쟁당국은 데이터와 알고리즘 등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고, 「전기통신사업법」 등은 온라인플랫폼사업자를 현재 부가통신사업자로 구분하면서 기간통신사업자와는 다르게 다소 낮은 규제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의 정보통신시장의 구조를 바탕으로 하여 법제도를 설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규제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또한 정보주체 권리 보호와 관련한 법적 요구사항(수집·제공 동의, 열람, 삭제권 등 권한 행사, 안전성보호조치 등)을 충족한 후에는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여러 법률이 관련되어 있는 상황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이 근거법 상의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적 근거가 미흡한 규제적 조치가 불가능함은 물론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거나 효과적이고 적합한 규제를 실시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규제당국이 서로 규제 근거가 있음을 이유로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대한 규율 시도를 하는 것은 이중적·중복적으로 사업자에게 비합리적이고 부당한 규제를 실시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타당하지 않기도 하다. 이는 결국 적절한 이용자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편 중개서비스라는 특징은 증가하는 콘텐츠의 불법성 등에 대해서도 대응을 적정히 하지 못하여 이용자 권익 침해가 발생하고 지속화되는 원인이기도 하다. 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콘텐츠의 생산, 게시, 배포 등을 실시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해당 플랫폼에서 제3자에 의해 생산, 배포되는 콘텐츠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적 책

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사실상 플랫폼을 통해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고 이용자에게 노출된다는 점이나 플랫폼이 이러한 콘텐츠 유통으로 인해 사실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적 통제가 요구된다고 보기도 하지만, 불법의 원인 제공이 아니므로 직접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법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명예훼손, 저작권 침해, 음란물 유포 등 이용자 권익 침해 문제들이 심화되고 있다.

## 2. 데이터 보호 및 활용 관점에서의 부정합성

데이터 보호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살펴보면, 동 법은 정보주체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통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개인의 동의에 의해 정보가 제공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정보활용의 가치적 문제는 규율 영역 밖에 존재하는데, 글로벌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법률의 규정을 모두 준수한 경우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 대해서 통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의 활용이 중요해지고 마이데이터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이른바 ‘감시자본주의(Surveillance Capitalism)’라는 개념도 등장하였다. 이는 이윤 창출의 핵심 목적을 가진 개인정보의 상품화를 중심으로 한 경제 시스템을 의미한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그 시스템의 고객 이면서 원재료가 되는 상황이고, 그 원재료인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고객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이다.<sup>117)</sup> 플랫폼 기업이 고객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지만 이용자는 플랫폼서비스가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이에 의존하는 상황으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으므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확장에 대한 우려에서 등장한 개념이다.<sup>118)</sup> 이와 같이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특정

117)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20), “개인정보 기반 수익화 감시 자본주의”

118) 박대석(2021. 10. 28), “데이터 주권과 감시 자본주의 시대”,  
<https://brunch.co.kr/@cosmobig/225>,(2023. 8. 29 접속)

사업자가 보유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현재 법률상으로 정보주체의 통제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자신의 정보가 스스로의 의지에 의해 제공되었고, 많은 양의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정보 활용에 동의한다면 데이터의 양에 따라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서는 통제할 근거가 없게 된다. 보유하고 처리하는 데이터의 양이 많을수록 정보주체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이용자와 사업자 간의 정보 불균형 문제, 사업자 간 경쟁력 차이 발생 문제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보주체는 법률에 의해 자신의 정보에 대한 통제권한을 부여받고 있지만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몇 개의 서비스가 글로벌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사실상 정보제공을 할 수밖에 없고,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제공해야만 하므로 법률상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용이한 상황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최근 플랫폼서비스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도 법률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인공지능기술이 개인의 선호도나 나이, 성별 등의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분석하여 민감한 영역의 정보도 확인하게 된다는 점이 프라이버시 침해를 심화시키고 있지만 인공지능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용자에 대해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은 물론이고,<sup>119)</sup> 생성형 인공지능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이전보다 더욱 침해하기도 한다.<sup>120)</sup> 온라인상에서 공개하고 있는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들(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게시하고 있는 일상정보나, 공개적으로 대화한 기록 등)은 사실상 개인정보임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율을 받고 있지는 못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가 특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 제공한 개인정보를 통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스스로 공개한 정보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를 취할 것인지, 이 경우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방식의 규제 수단을 선택할 것

119) 이호영 외(2019), 『지능정보화 이용자 기반 보호 환경조성 총괄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p.17.

120) 이에 대해서는 정완(2023), “Chat GPT의 법적 이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6(4),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를 참조

인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데이터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한 법제도는 데이터 보호 자체를 중심으로 관련 규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주체로서의 이용자에 대한 권익 보호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이용자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나 데이터에 대한 안전한 보호나 데이터를 제공받을 때의 적법성 등이 주된 법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과정에서의 투명성이나 그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한 이용자 권익 보호 등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기본적으로 통신망을 통해서 흘러가는 데이터와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활용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나 ‘불법 콘텐츠’ 등 데이터의 내용과 특성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부분을 규율하는 것에 그치고 대량의 데이터가 불투명하고 이익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루고 있지 않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용자의 측면에서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거의 유일한 법적 보호 수단인 데이터 제공 ‘동의’는 큰 의미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고, 오히려 데이터 활용 자체가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이동하고 공유되는 환경이라는 점 등을 고려한 법체계의 설계가 요구된다 할 수 있다.

### 제 3 절 법체계 내의 부정합성과 한계

#### 1.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의 부정합성

최근에는 하나의 서비스나 사업자가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융복합되어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공급망이나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동일한 수범자에 대하여 기존의 법률체계에 따라 나누어져 있는 각각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플랫폼, 기기, 서비스, 콘텐츠

가 융·복합되고 있으나 규율체계는 각각의 법률에 의해 분산되어 있으므로, 특정 사업자에 대해 여러 법적 지위가 부여되거나 각 법률상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sup>121)</sup> 따라서 동일한 사업자라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또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고 「정보통신망법」상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며, 「개인정보 보호법」상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된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된다. 동일한 수범자가 유사한 목적의 규제에 대해 각각 다른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구조이다. 그렇기에 현행 법률체계에 따르는 경우 규제의 중복 문제와 규제 집행 거버넌스의 혼란 발생 등과 같은 문제들이 야기된다. 이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지적과 비판이 있어왔지만<sup>122)</sup> 정보통신법제의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전히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규제체계의 혼선과 관련하여 집행기관 간 갈등을 빚은 사례도 존재하는데 2021년부터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 수요가 발생하고 해당 규제를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 기관이 해당 규제에 대하여 집행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갈등을 빚은 사례가 있다.<sup>123)</sup> 방송통신위원회는 플랫폼 서비스가 통신산업으로 전문적 규제는 ICT 부처가 종합 검토하여야 하고, 통신산업 이용자보호 정책의 관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총괄적 규율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 공정화 법체계의 일관성 확보와 경쟁당국과 산업규제당국 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OTT 서비스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

121) 이부하(2015), “ICT 법 체제 개선방안-현행 ICT 관련 법제를 고찰하며-”, 《과학기술법연구》, 21(3),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p.278

122)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문헌으로 선지원(2021),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방식에 대한 연구”, 《서울法學》, 29(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승민(2022),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복규제 방지 방안”, 《경쟁법연구》, Vol. 45, 한국경쟁법학회 등이 있다.

123) 《동아닷컴》(2021. 3. 19), ““양보 없다”...공정위·방통위 ‘플랫폼법’ 권한 다툼 장기전 조짐”, 2025. 1. 10,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10319/105963954/1>.

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규제 권한을 주장하며 각각의 법률체계에  
서 별도로 법률 제·개정을 시도한 사례도 있다.<sup>124)</sup> 동일한 법률에서 여럿의 규제  
주체를 개입시키기도 하는데 「단말기유통법」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서 사실조  
사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하  
서는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거버넌스의 산발적 운영은 관  
련 법률이 단절적이고 분절적으로 개별 규제사항을 각각 입법화하고 있기 때문이  
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한 법률에서 집행기관을 살펴보면 「전기통  
신사업법」상 전기통신사업자 시장진입과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관리를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저작권법」은 문화체육  
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다. 규제당국 간에도 담당 기관을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집행체계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수범자가 각각의 규제당국이 요구하는 의  
무사항을 모두 이행해야 하므로 규제 준수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는 문제를 발  
생시키게 된다.

현행 법률상의 내용상 중첩도 통신서비스 시장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결과  
로 발생하는 현상인데, 개별 법률들이 경쟁적으로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규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불법정보 유통방지 의무, 청소년보호 등을 목적  
으로 하는 콘텐츠 규제는 동일한 불법적 콘텐츠의 유통을 방지해서 이용자를 보  
호하고자 함이나 같은 목적의 규제적 사항이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청소년보호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의 사업 관리는 층위별 또는  
유형별로 구분해서 규율의 내용과 방식을 다르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용자의 정  
보보호와 관련하여서는 더욱 많은 중복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망법」은 사  
업자에 대하여 자신의 시스템과 정보통신망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정

124) 《전자신문》(2021. 12. 2), “OTT 자체등급분류제’ 관계부처 이견에 7개월째 공회  
전”, 2025. 1. 15, <https://m.etnews.com/20211202000159>.

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를 보호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재산과 정신적 이익을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과 관리 또한 시스템과 통신망을 보호함으로써 달성되는 부분도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같은 수범자에 대해 다른 법적 지위를 부여하면서 각각의 법률에서 유사한 의무사항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중에서도 ‘신용정보’와 같이 개별 분야별로 활용하는 주체와 활용되는 정보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호체계를 달리 구성하고 있기도 하다. 궁극적으로 법률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라는 관점에서 이 또한 사실상 관련 법률이 각각 같은 목적을 하고 같은 규제 내용을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 데이터 보호 및 활용 관점에서의 부정합성

현행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데이터 정책 컨트롤타워를 확립한다는 의미가 있다. 데이터 경제 시대에 공공과 민간 부문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국가 차원의 의사결정 기구 설립’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큰 상황에서, ‘데이터 기본법’은 범부처 데이터 지휘 본부로서 ‘국가데이터 정책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3년마다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국가 전체의 지휘 본부 확립과 중장기적인 범부처 정책 수립은 국민과 기업의 정책에 대한 예측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신속한 의사 결정과 투자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데이터 비즈니스 분야 사업자에 대한 법적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집행이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데이터 거래·분석제공 사업자에 대한 신고제 도입과 함께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며 데이터 관련 분야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도 역량강화 컨설팅과 사업화 등을 지원하도록 규율함으로써 데이터 관련 다양한 사업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데이터 산업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와 공정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자산보호·분쟁조정 위원회 등을 도입하여 데이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고 데이터 자산의 무단 취득·사용·공개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정책을 추진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 간의 중복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중복 문제가 데이터를 필수적인 전제로 하는 AI 분야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정부부처 간 합리적인 권한 배분·조정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부조직 개편의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데이터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구조를 마련하고 있으나, 기본법이라는 법명에도 불구하고 그 규율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 우선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 촉진에 관하여 규율한다고 하나 주로 데이터 가치평가를 통한 데이터 거래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생산이나 활용촉진의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규율은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면서 개인정보, 저작권 및 공공데이터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율방식은 향후 전개될 디지털 융합 시대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개인정보 측면에서는 데이터의 개념에 포섭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전적으로 일임하게 되는데 전체 데이터 중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의 생산 및 활용 범위·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국 데이터 활용 촉진에 대한 중요한 요소는 모두 「개인정보 보호법」이 결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띤다.

한편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가능성이 높고 그 경제적 가치가 상당하며, 이를 활용한 신규 데이터 비즈니스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면 데이터 경제에서 공공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 도, 공공데이터에 관해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민간데이터 활용과 공공데이터 활용이 서로 다른 법체계의 규율을 받게 되는 불완전한 구조를 띠고 있다.

이에 더하여 「데이터산업법」에서는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의 개념을 설정하는 한편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유통·거래·활용 등 일련의 과정과 관련된 행위와 이와 관련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데이터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는 이와 별개로 산업데이터의 개념을 설정하면서 이에 근거하여 산업데이터의 생성·활용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데이터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 중 산업데이터<sup>125)</sup>가 아닌 데이터를 의미한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현행 데이터 관련 규율체계는 데이터의 개념 및 적용범위 등 가장 기본적인고도 중요한 지점에서부터 부처 간 타협의 결과로 존재하는 바, 이러한 부처별 칸막이식 구분(갈라먹기식 분할)에 따른 법 적용 및 집행이 다가올 디지털 융합 시대에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가 따로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데이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

해당 영역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부처가 필요한 제도를 만들고 정책을 집행하는

125)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데이터”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에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 관련 산업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활동(이하 “산업활동”이라 한다) 과정에서 생성 또는 활용되는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것은 일견 필요해 보일 여지도 있을 것이나, 영역의 구분이나 설정이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데이터 관련 규율의 경우에 있어서까지 다양한 정부부처가 경쟁적으로 데이터 영역에 대한 관리·규제 권한과 체계를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3. 분쟁해결제도 관련 부정합성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분쟁조정,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분쟁조정,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분쟁조정, 「데이터산업법」상 데이터분쟁조정 등 다양한 분쟁조정제도 현황을 살펴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각각의 영역에서 제도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 융합 시대에는 과거에 일용 타당성을 가질 수 있었던 칸막이 개념 분류에 따른 역할분담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즉 통신분쟁, 데이터분쟁 및 개인정보분쟁 등을 구분해 낼 수 있는 기준에 대한 경계가 점점 더 희미해져가고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통신분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한 분쟁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경우 융합 시대에는 개인정보나 데이터와의 관련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과거 통신분쟁의 대상으로 삼던 것이 지금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편 디지털 융합 시대의 정보통신서비스는 AI·데이터·클라우드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연계되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러한 융합현상과 궤를 같이하여 분쟁해결에도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출발선은 근거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및 담당기관(위원회) 등의 통합·융합에 있을 것이다.

물론 이 문제는 형식적·획일적으로 논의하여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다만, 향후 정보통신 관련 법제의 통합과 재편을 논의함에 있어 중요

한 방향성으로 삼아야 할 이슈임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 4. 기타 특수 규제 관련 부정합성

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부당한 이용자 차별이 완화되고 이용자의 소비가 합리적인 형태로 변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이용자의 이용 패턴에 따라 최적요금제를 선택하거나 약정할인과 지원금 중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하는 것 등이 그러한 예이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경쟁이 위축되고 이용자가 휴대폰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즉 대리점 및 판매점이 투명하게 공개한 지원금 규모에 따라 정보취약계층도 동일한 가격으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고,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도 지원금에 상응하는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이용자 차별 해소에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는 반면, 추가지원금의 지급 한도 제약, 단말기 유통구조 환경의 변화, 선택약정 할인 중심의 이용자 선택 등 시장환경 변화로 인하여 지원금과 관련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특히 제조사를 규율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수단의 부재로 효율적인 규제효과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과 동시에 이용자에게 합리적 선택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 가지 모두 어느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정책목표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다양한 입법적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이동통신서비스가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이동통신 단말기에 관한 법적 규율은 다양한 방식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동통신서비스 이용형태나 시장상황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형태의 제도적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나. 「전파법」

전파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파이용과 전파에 관한 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전파 관련 분야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이 동법의 기본 목적이다.

전파통신의 기본이 되는 전파는 공물로서의 성질을 띠며 동시에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전파자원의 이용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목적에서 전파행정은 특정 주파수 대역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 사용권을 누구에게 부여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규율하여 전체 공동체의 이익이 증진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최근 전파정책은 이러한 전파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① 혼신 등을 방지하고 전파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규제, ② 특정 주파수대역의 사용용도를 정하는 주파수 배분 및 ③ 특정 용도의 주파수대역에 대한 사용권 부여에 관한 주파수할당 등을 중심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과거에는 규제기관에 의한 기술규제와 명령·강제 방식의 통제 위주의 전파관리가 주된 내용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국가와 사회의 협력에 의한 행정목적 달성이라는 유연한 수단이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시장을 통한 자율적 규제의 원리가 각국의 전파법제에서 주된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파의 이용 측면에서 무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본적 필수요소인 주파수 및 무선국에 대한 법적 규율을 설정한다. 주파수 분배 및 할당 등의 제도를 통해 유한한 자원인 전파의 효율적 관리를 꾀하고, 주파수 이용의 핵심요소인 무선국에 대한 개설규제 및 검사제도 등을 통해 혼·간섭 없는 안전한 전파이용이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각종 이동통신서비스의 활성화로 인한 전파의 이용증대에 따라 그 역기능의 하나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규율이 점점 더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다. 과거에는 전파법상 전자파장해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전자파장해를 다른 기기의 기능에 장애를 주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그 보호기준에 관한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이를 감안하여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에 관한 규정을 전파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논란이 되었던, 전자파로 인한 인체유해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등급기준, 전자파 강도 측정기준, 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 전자파 측정대상 기자재와 측정방법, 전자파 등급 표시대상과 표시방법 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는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전자파 문제를 관리하기 위하여 적합인증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전파법은 크게 보면 전파이용에 관한 주파수·무선국 관리에 관한 부분, 전자파 등 전파이용 환경에 관한 부분 및 전파산업 등 전파의 진흥과 관련한 부분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무선국 관리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주파수, 전자파, 산업진흥 등 복잡하고도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는 체계정합성의 문제와 아울러 기술규제와 산업진흥 등 이질적인 요소를 하나의 법률에 모두 담아야 하는 점에서 출발하는 한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향후에는 적절한 시기에 분법이라는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이러한 체계상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디지털 융합 시대를 견인하는 전파행정의 법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10월 1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전파 분야 법제도 개선사항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첫째, 전파를 통한 디지털 번영사회를 조기에 실현하고 전파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체계적인 전파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전파산업진흥법」을 제정한다. 이렇게 되면 현행 전파법은 가칭 「전파이용기본법」과 「전파산업진흥법」의 이원체제로 분화될 것이다. 「전파산업진흥법」은 산업진흥법제의 법체계를 고려하여 총칙, 기본계획 수립, 산업 지원·육성, 산업지원단지 조성 등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① 전파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의 책무규정을 신설하여 국가

는 전파산업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지자체는 국가시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② 인력양성·기업지원 등을 위한 재원조성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전파산업 진흥을 위한 전용 재원조성의 근거를 규정하고, 전문인력 및 기업지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및 방법 등을 명시하며, ③ 기술개발 후속 개발 신기술 상용화 촉진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④ 산업 진흥정책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파산업 정의를 신설하고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실태조사를 통해 디지털 시대의 전파산업 지표별 DB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무선국 허가·신고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이동통신 무선국 준공검사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무선국 관리역량이 확인된 시설자가 스스로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현장검사 없이 무선국 구축이 가능하도록 무선국 개설절차를 간소화한다는 것이다. 즉 구체적으로는 기술기준 등에 적합함을 직접 증명하고 준공신고 시 그 결과를 검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서비스 개시 및 사업자의 행정적 부담 완화를 꾀하는 것이다.

셋째, 주파수 공급체계를 개선한다. 이동통신 주파수 수요가 신산업·안전 등 다른 분야로 확산추세에 있으나 이동통신사업자 중심의 공급관행에 따라 다른 분야 수요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주파수를 공급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동통신 중심의 주파수 공급을 산업·공공 분야의 디지털 혁신용으로 확대하기 위한 주파수 공급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전파진흥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파법의 개정 방향은 대체로 타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디지털 융합환경에 대응한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전파법령 개정을 검토한다면 아래의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행 전파법은 그 전신인 전파관리법 시대부터 일관되게 전파를 관리의 대상으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규제 중심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공물인 전파를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고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 지금까지의 전파 관련 법령체계

는 그 임무를 잘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앞서 언급한 「전파산업진흥법」 관련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디지털 융합 시대에는 전통적인 규율 대상 사업(군) 중심의 관리·규율체계의 한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심화 시대에 우리 일상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하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는 전파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를 필수적인 요소로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파에 대한 수요가 전통적인 이동통신 등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이고, 이에 따른 적절하고도 효과적인 전파관리체계의 재정립이 요청되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전파관리는 주파수 할당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급자로서의 정부 중심체계로 이루어져 왔다. 사업용 주파수의 경우 사업자가 주파수를 이용하려고 하더라도 정부가 주파수를 시장에 공급하는 할당공고를 하지 않는다면 주파수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이러한 정부주도 전파관리 패러다임은 ‘수요’, ‘민간’, ‘시장’ 중심의 전파관리로 바뀌어야 한다. 향후에는 정부가 수많은 산업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전파에 대한 모든 수요를 세밀하게 통제할 수 없을 것이다.

## 제 4 절 소 결

디지털 융합 생태계의 구체적 양상을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의 세 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현행 정보통신 법제의 대응 구조를 점검한 결과, 현행 법제는 디지털 융합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여러 한계점을 내포한다는 점이 자명하게 드러난다.

첫째, 네트워크 중심 융합의 경우, 5G·6G 기반의 초연결 인프라 위에서 통신망·데이터망·사물망이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법체계는 통신망 중심의 수직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네트워크 기반 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규율 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 중심의 법령은 물리적 네트워크 인프라에 편중된 한계가 있다.

둘째, 플랫폼 중심 융합의 경우, 디지털 플랫폼이 통신, 콘텐츠, 유통, 금융 등 다수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며 사실상 새로운 '디지털 통신 질서'를 형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제는 이를 특정 산업 범주 내에서만 파악하는 규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 중개자 책임 문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명확한 정의와 일관된 규율 체계가 부재한다.

셋째, 콘텐츠 중심 융합은 생성형 AI, 가상현실,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이 콘텐츠 제작과 소비 방식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는 법령은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으며, 매체·형식의 경계가 사라진 콘텐츠 유통 환경을 포괄할 수 있는 체계적 법제 정비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융합 현상 전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행법의 대응 한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수직적 분화 체계의 경직성: 전통적 산업 구분을 전제로 한 규율 체계는 다기능·다매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
- 산재된 규율과 불일치: 동일 기술·서비스가 여러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법 간 정합성 부족으로 인한 규제 공백 또는 충돌 우려가 크다.
- 신기술 기반 서비스에 대한 정의·지위의 불명확성: 생성형 AI, 디지털 플랫폼, 엣지 컴퓨팅 등 신유형 서비스에 대한 법적 지위나 책임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 않다.
- 정책·감독 권한의 분산: 복수 부처 간의 기능 중복 및 관할 불명확성으로 인해 효과적 규제 및 산업 진흥 간 균형 확보가 어렵다.

결국, 디지털 융합 생태계에 적합한 규율 체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서비스 실태에 기초한 범용적 정의 정비, 산업 구조 재편 반영, 규제기관 간 조정체계 구축 등이 필수적이며, 궁극적으로는 정보통신법제의 근본적 구조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재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유럽연합과 미국 등은 법

제의 통합과 규제의 효율에 초점을 두고 기존 법령을 쇄신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다음 장에서는 국내 정보통신법제 재편 방향 제시에 앞서 선도적인 글로벌 입법 추세를 검토한다.

## 제 4 장 디지털 융합 시장 규율을 위한 입법론

### 제 1 절 비교법적 접근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의 신기술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디지털 서비스 산업을 재편하고 있으며, 이 점이 디지털 융합 시장을 지탱하는 유기적 구조의 뼈대를 이룬다.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경제 질서는 기존 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광범위한 디지털 융합 시장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변적이면서도 유기적인 디지털 융합 시장을 규율하기 위한 ‘동적 입법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플랫폼 경제의 부상은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강화로 이어졌고, 국내에서도 양대 플랫폼 기업이 금융, 미디어,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으로 진출하며 플랫폼을 통한 산업 간 융합을 가속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산업별 규제 체계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정보통신법 차원에서도 규제의 모호성과 중복을 낳았다. 이에 따라 국내외를 불문하고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 체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서비스와 데이터의 융합 국면이나 AI 특유의 속성을 법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규율 체계를 수립하는 노력이 경주되었다.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제정은 가장 대표적인 입법례에 해당한다. 이를 비롯한 최근의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사전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온라인 서비스 시장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그러한 흐름을 반영한다. 둘째, 개인정보 및 산업 데이터에 관한 보호(규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데이터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추세를 보인다. EU에서 제정한 「데이터 거버넌스 법(Data Governance Act)」과 「데이터 법(Data Act)」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셋째, AI의 투명성과 설명가능성 확보도 중

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EU AI법」, 미국의 「알고리즘 책임 법안(Algorithmic Accountability Act)」 등의 입법례에서 이용자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둔 AI 투명성 확보 수단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 밖에도 융합 서비스에 대한 유연한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해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과 같은 혁신 촉진 제도가 도입되고 있기도 하다.

나아가 디지털 융합 경제의 초국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글로벌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OECD의 디지털세 도입 합의는 이러한 국제 공조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강화 움직임 속에서도 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일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요컨대, 디지털 융합에 따른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법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대한 선결 과제가 될 것이다.

## 제 2 절 법체계의 진화 양상

### 1. 이용자 보호 체계의 통폐합

정보통신서비스에 있어서 이용자 보호는 이용자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식으로 법제도가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럽연합은 2023년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 Act)」을 마련하였는데, 현재 정보통신시장에서 디지털플랫폼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에 따라 이용자 보호의 필요성이 증대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정하게 된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용자가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활용하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해서 불법정보를 삭제하고 차단하는 등의 소비자 및 이용자 보호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중개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인데, 소비자에게 불법제품이나 서비스를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는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 플랫폼이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며, 다크패턴과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시키고 있으며, 맞춤형 광고나 추천 시스템 등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화되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이용자의 기본권리 보호가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으며, 예측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위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와 상품, 서비스 콘텐츠 등을 제공하는 자를 연결하는 중간 매개역할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정보주체나 이용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보나 데이터의 흐름, 그 내용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플랫폼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는 시장 환경에서 이용자가 법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법제도가 변화하고 있다.

## 2. 새로운 데이터 거버넌스 수렴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에 대한 정보통신법제의 규율방식은 사업자가 데이터 활용에 따른 영향과 위험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의 데이터 보호법제는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 시스템, 기기, 데이터 등을 구분하여 분절적으로 보호체계를 형성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보통신망이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등에 대하여 강화하는 내용으로 별도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으며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방식인데 일반적인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한 정보보호와 군사기밀이나 산업비밀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데이터를 관리하는 체계, 그리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체계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주체에 따라 신용정보나 의료정보 등으로 분류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 방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 데이터가 복합적으로 처리되고 저장되는 상황에서 그리고 서비스가 중첩되고 융합되어 제공되는 상황에서 같은 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각각의 법률에 의해 실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분절적인 보호방식은 데이터가 생성, 공유, 저장, 파기되는 일련의 과정이나 데이터가 활용되는 흐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체

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다.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이전하기도 하고, 사업자와 사업자 간 이동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국경을 전제로 하는 개별 사업자를 전제로 하는 보호조치는 효과를 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해외 주요국들은 데이터를 보호하는 법제를 변화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데이터영향평가’나 ‘데이터에 대한 위험관리’를 요구하는 것인데 개인정보나 데이터의 활용으로 인해 이용자(정보주체)의 권리나 자유에 대한 침해 위험이 높게 나타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업자에게 이러한 위험을 인식하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데이터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해 현재 법제도는 법률에서 요구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거나, 금융 또는 신용정보나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 등과 같이 데이터의 특성과 주체에 따라 보호조치가 강력하게 요구되는 정보,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과 같이 시스템에 위협이 발생하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데이터의 양이 법적 수준에 미달하지만 보호 필요성이 높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서비스가 등장하거나,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사건과 같이 법률이 예정하지 못하였지만 데이터 침해가 발생하고 그 영향이 상당하게 발생하는 상황 등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게 된다.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업자 등이 자신이 생성·수집·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특성에 따라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과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조치가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인지, 보호의 수준과 정도는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여야 하는지, 데이터 침해 위험 등에 대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는 어떻게 취하는 것이 필요한지 등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설계된다면 데이터 보호의 규제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의 규제체제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영향평가와 같은 규제방식은 EU의 「일반데이터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대표적인데 데이터 처리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높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기

업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데이터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데이터의 활용이 합법적인 것인지, 데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는 이유와 해당 데이터가 사용되는 것이 합리적인지, 개인의 여러 기본권들에 대해 침해되는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허용하면서도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조치들을 고민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에 실효적으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률상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이용자 보호에도 적합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법률상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준수하는 것으로 데이터 보호체계를 구성하는 것보다 적절한 보호조치와 수단을 선택해서 데이터 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에서도 요긴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의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규제체계의 큰 변화는 공급망 전체에 대한 보안을 요구함과 동시에 데이터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 등 정보통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공격이나 위험이 일상적·상시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사고나 침해로 인한 심각성과 침해 영향 기간을 감소시키는 능력, 빠르게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인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보안 위협을 사전에 식별하고 방어하며, 위협(공격)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복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 보안 프로세스와 통제 효율을 극대화하는 것이 사이버 복원력의 목표이다. 보안 사고를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예방뿐만 아니라 신속한 탐지와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복원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3년 ‘국가사이버보안전략(National Cybersecurity Strategy)’을 통해 국가사이버보안 5대 전략 중 하나로 사이버보안과 복원력 증진을 제시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해서 이를 강조하고 있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복원력 강화를 위한 지원

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4년 「사이버복원력법」을 통과시켰다. 제조사를 포함한 제품의 공급망 전체와 제품의 수명주기 전반에서 보안을 강화하도록 요구하는 것인데,<sup>126)</sup> 소프트웨어를 비롯한 정보통신제품, 원격 데이터 솔루션 등과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의 구성요소에 대해 적용된다. 제품을 기능, 사용목적, 영향범위 등에 따라 분류하고 위험이 높은 제품 등에 대해서는 적합성 평가 등을 통해 보안조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관리방식은 보안조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제품의 취약점으로 인한 위험 비용은 주로 전문사용자나 소비자가 부담하므로 제품 제조업체가 보안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고, 이용자에 대해서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사이버 복원력을 강화하는 방식의 데이터 보호체계는 데이터에 대한 위험이 발생한 이후에 적절한 조치를 빠르게 취하도록 하여 위험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과, 데이터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제품이나 서비스의 공급망 전체를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 오류나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대응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이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외 주요 국가들은 데이터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정보통신서

---

126) 공급망(Supply-Chain)이란 판매 제품의 생산, 유통, 유지에 요구되는 모든 부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개별 기업들의 집합을 의미하는데, 정보통신기술이 전 세계에 세분화되고 복잡한 망을 통해 상호연결되면서, 정보통신기술의 전송망 프로세스에 기존의 공급망 개념을 차용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개발·배포 등 정보통신서비스의 공급망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가 다양화되고 있고, 정보통신서비스나 제품에 다양한 조직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한 보호체계가 확립되기 어려운 반면 보안 위험이 공급망을 가로지르는 서비스나 제품 내의 취약성이나 노출을 악용하는 위협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공급망 전체에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급망 주체에 대한 보안 위험이 정보통신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국한되지 않고, 공급망 내 모든 조직과 부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나 제품 등의 제조, 유통, 공급, 배포 등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데이터나 서비스 등에 대한 위험이 발생할 것을 전제하여 공급망 전체에서 관리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비스와 제품 공급을 위해 시장과 산업의 구조 변화에 따라 데이터를 비롯한 정보 통신서비스 전체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제 3 절 법적 수단의 쇄신

데이터 보호 및 활용 관점에서의 법체제는 기존 규정의 개선사항과 향후 새롭게 설계되어야 하는 법제도의 개선사항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의 데이터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한 법제도는 데이터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요구사항을 설계한 관계로 데이터 활용이 기본이고 일상인 현재의 상황과는 적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게 되자 법제는 보호체계를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포함하는 법률<sup>127)</sup>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미 데이터 보호를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의 틀 내에서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들이 존재한다. 보호체계에 따르는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데이터 활용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데이터 활용 관련 법제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과 함께 보호체제는 디지털 융합 시대의 기술환경이나 데이터 활용 방식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 동의제도를 들 수 있다. 디지털 서비스나 기술은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이 사실상 필수적이므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의 수단으로써 사전적 수집 동의는 형해화된 지 오래다. 서비스 이용의 전제로 데이터 제공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보주체의 자율적 결정을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적·현실적 상황이 도래한 것은 꽤 오래되었고 그에 따라 동의제도가 형해화되었다는 비판이 오랜 기간 지속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전 동의제와 더불어 여러 제도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제시

127)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이 대표적이다.

되고 있다. 사전 동의제도가 무의미하다는 점, 기술 환경의 변화로 동의제도가 비현실적이라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의 목적이 정보주체의 통제권 확보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전 통제수단을 완화하고 다른 통제수단을 통해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이다. 즉 사전 동의 제도를 사후 통제제도로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수집단계에 동의 등으로 방점이 찍혀있는 법체계를 이용단계에서 통제수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사후 통제의 대표적 방식으로 언급되는 것이 옵트아웃 제도의 활용인데,<sup>128)</sup> 데이터 활용이 필수적이고, 동의제도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점, 데이터의 내용이나 중요도, 특성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동의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전 및 사후 동의제도와 포괄적 동의도 허용하는 등 다양한 동의방식을 활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데이터 보호 및 활용 법체계의 이슈 중 최근에는 개인정보 활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에서 나아가 저작권 침해 문제도 함께 등장하고 있다. 인공지능기술이 활용하는 데이터에는 개인정보와 더불어 저작물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성형 AI와 같은 인공지능시스템이 대규모 데이터 학습을 빠르게 진행하고, 그림, 영상, 음악 등의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어 학습 대상인 저작물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의 이슈도 데이터 법제도의 과제가 되었다. 현재 데이터 보호체계의 보호 대상이자 객체는 개인정보나 정보 자체일 뿐 저작권리의 보호 객체로서 저작물이나 저작권자의 법적 이익 보호 등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다. 저작물은

128) 권영준(2016),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36(1),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pp.718~722; 이 외에도 동의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비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주영선(2022), “개인정보 동의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42(2),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원준(2023),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실질화 방안 연구”, 《고려법학》, 제108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김현경(2020),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동의’ 제도의 딜레마”, 《성균관법학》, 32(3),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황보연(2023),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 제도의 개선 방안”, 《정보법학》, 27(3), 한국정보법학회 등을 참고.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구조화되어 있고 저작물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 학습 대상으로의 데이터에 저작권자의 저작물도 포함된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데이터 보호체계의 권리주체에 정보주체뿐 아니라 저작권자까지 포함하여야 하며, 마찬가지로 보호 대상범주도 개인정보 및 각종 데이터 외에 저작물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저작물도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나,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저작물에 대한 등록제도가 전부 의무적인 것이 아니고, 저작권자를 표시하는 것 또한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자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권리가 있는 저작물인지를 선별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며, 학습하는 데 해당 저작물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이용료 등의 보상수준과 보상방법이나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 영국의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OpenAI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 바 있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인공지능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리 침해가 지속·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sup>129)</sup> 저작권자의 권리침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해외에서는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EU는 AI법에서 범용 AI 모델 공급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 중의 하나로 EU의 저작권법을 준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에 관한 ‘충분히 상세한 요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일반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Article 53 1.(c)&(d)). 미국의 경우에도 2024년 하원에서 「생성형 AI 저작권 공개법안(Generative AI Copyright Disclosure Act of 2024)」을 발의하고, 생성형 AI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학습용 데이터 세

---

129) UK Parliament(2024. 2. 2), Communications and Digital Committee Large language models and generative AI, 1st Report of Session 2023-24, 2025. 1. 15,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ld5804/ldselect/ldcomm/54/5402.htm>; OpenAI(2023). “written evidence(LLM0113)”, UK Parliament, 2025. 1. 15, <https://committees.parliament.uk/writtenevidence/126981/html/>.

트의 작성자 또는 주요한 변경자에 대해(작성자의 경우) 학습용 데이터 세트에 이용된, 또는(주요한 변경자의 경우) 학습용 데이터 세트를 변경하기 위해 이용한 모든 저작물에 대한 ‘충분히 상세한 요약서(sufficiently detailed summary)’를 저작권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sup>130)</sup> 저작물에 대한 보호체계도 인공지능 학습의 대상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호체계를 개선하고, 저작권자의 권리 보장을 실질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데이터 보호 및 활용 법제도는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 보호 등 전반적으로 데이터와 관련한 위험을 확인하고 감소시킬 수 있는 전체적인 관점의 데이터 보호체계로 변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데이터영향평가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구현 가능한데, 데이터영향평가는 데이터의 활용이 정보주체 등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 데이터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영향을 판단하고 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위험요인(개인의 권익 침해, 오용에 의한 가치 훼손, 데이터 유출 등의 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데이터를 활용하는 주체가 직접 그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특성에 맞추어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법률상의 요구조건들은 충분히 준수하고 있는지, 법적 요구조건 준수에도 불구하고 위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보호조치의 수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해당 데이터 활용으로 발생 가능한 위험은 무엇인지와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사항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 이는 데이터 보호 기준이나 방식을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실질적으로 데이터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극복하는 데도 효과적이며, 합리적 데이터 보호체계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

130) H.R.7913 - Generative AI Copyright Disclosure Act of 2024

## 제 4 절 시사점

현재의 정보통신법제는 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사업자에 대해 진입요건과 시장에서 금지 또는 허용되는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을 통해 준수사항을 요구하고 해당 의무만을 이행한 것으로는 이용자 보호가 충분히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개인정보 보호를 비롯하여 플랫폼사업자와의 거래 관계에 있어서 보호조치와 관련한 법률이 각각 역할을 하고 있지만 프라이버시 등을 비롯한 이용자의 권리 침해 문제 등을 온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각각의 법률이 새로운 이슈나 현상이 발생할 때마다 규제를 시도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은 하지 못하였고, 사업자는 유사하고 중복되는 내용으로 각 법률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효과성이 없는 규제가 사업자와 집행기관의 피로도만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서비스 융복합이 발생함으로써 규제체계가 중첩되고 각각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규제집행은 수범자는 물론 집행기관 당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혼란만 야기하는 상황이다.

디지털 융합 시장에서 소비자(이용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위험성 평가 및 관리'에 초점을 두고 규범과 기술 양 측면을 고려하여 법체계, 규제 거버넌스, 법적 수단을 재정비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현실적으로 가장 중차대한 과제는 규제 거버넌스를 효율화하는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와 기존의 산업과의 융합 현상이나 기존 형식의 정보통신서비스가 아닌 새로운 방식이나 내용의 서비스가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보통신서비스 규제의 내용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조직과 기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보통신서비스는 필연적으로 분야의 융복합을 동반하므로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규제 거버넌스가 충돌되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다. 향후 데이터·AI 기반의 정보통신서비스가 우리 사회 전역에서 필수적 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정보통신 분

야 규제 거버넌스를 재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법체계를 통합하고 수단을 재편해 나가야 할 때이다.

## 제 5 장 정보통신법제의 새로운 지형 구상

### 제 1 절 디지털 융합에 부합하는 법체계 통합 및 재편 방향

디지털 융합시장에서 대형 시장주체가 기존 산업 간의 경계를 능동적으로 허물고 있는바, 이러한 융합 생태계에서는 규제의 목적과 대상(수범자)을 중심으로 분산된 법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생각건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절된 법령을 시장 규제, 이용자 권익 보호 및 규제, 데이터 보호 및 활용, 특수 규제 4대 축으로 재편하고, 기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통합적 규제 메커니즘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법조문의 통합을 넘어, 디지털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규제 인프라의 혁신을 말하는 것이다.

#### 1. 법체계 융합과 행정조직 개편

지난 40년간의 정보통신법제는 개별 정보통신서비스가 각자의 고유한 영역을 확보하여 확연히 구분지을 수 있고, 차별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유효한 대응 차원에서 다양한 규제의 틀을 설정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보호하고 개별 산업의 공정한 경쟁과 건전한 시장육성을 도모하는 구조 아래 발전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디지털 융합 환경은 AI·데이터·클라우드·데이터센터 등으로 대별되는 각각의 기술·서비스 및 관련 산업이 단편적·분절적으로 존재하고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시장 생태계 내에서 융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을 보일 것임이 대체적인 전망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디지털 융합이라는 규범현실을 반영하고 이에 대응하여야 하는 법제도 역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체계와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이러한 총론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별 입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각론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충분한 사회적 숙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이므로 현시점에서 정답을 도출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이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방향성은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디지털 융합 환경에 부응하는 행정조직의 변화가 요구된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디지털 융합이라는 키워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다양한 정부부처의 소관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국가적 대응은 개별 부처별로 자신의 업무관할이라고 보이는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별 정책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많은 부분에서 중복·중첩·갈등이라는 문제를 양산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중복·중첩·갈등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일정한 경우에는 효율성·효과성은 도외시한 채 그대로 존치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합리적인 분석이나 검토 없는 범부처 차원의 결단을 통해 어느 특정 부처가 전속적으로 관할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접근의 폐단은 하나의 사업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다양한 부처의 유사한 규제를 중복해서 적용받거나 또는 일부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규제가 없는 소위 공백상태를 불러오기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융합' 시대에 걸맞은 행정조직의 '융합'이 요청되며, 그 융합의 방식으로 기능적 융합의 한계가 아닌 물리적·조직적 융합 내지 통합의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입법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는 앞서 설명한 행정조직의 변화와 궤를 맞추어야 하는 문제이다. 즉, 행정권한이나 규제기능의 통합을 전제로 관련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 규율대상을 모든 융합환경을 포섭할 수 있는 체계로 변모시켜야 한다. 예컨대 데이터에 관한 규율을 한다면 데이터에 관한 규율내용이 일관성 있는 법체계 내지 법원칙 하에서 통일적으로 적용·집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구체적인 입법을 하는 경우 소위 '다른 법률과

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여 결정함으로써 손쉽게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근절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적용되는 규율이 복수로 존재하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는 것이 아니라 규율체계 간의 관계 설정이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 간 유기적 해석·적용·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증거에 기반한 입법이 필요하다. 특정한 법제도를 구체화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도설정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하여 증거에 기반한 치밀한 분석이 필수전제가 되어야 한다. 막연한 위험이나 영향에 근거하여 제도를 설계하거나 사건·사고에 대한 임시방편적인 대응조치로서 입법을 양산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른바 규제영향분석제도나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더 한층 고도화시켜 이를 입법시스템의 중추적인 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신중하게 접근하느라 제도설정이 지연된 결과가 불러올 폐단과 성급하게 만들어진 불완전·불충분한 제도가 일으킬 피해는 둘 다 지양되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신중한 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넷째,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디지털 융합 시대의 다양한 특징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다양성·가변성·역동성이다. 이러한 속성에 비추어 볼 때 획일적이고 고정적인 제도나 규율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타당성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디지털 융합 시대를 이끌어 가는 민간·시장의 능동적인 참여 구도가 제도나 규율에 투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소위 민관협력, 자율규제 등으로 표현되는 협력 시스템을 법제도 분야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시장을 단순히 규율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디지털 융합 생태계를 성장·견인하는 주체임과 동시에 협업·관리의 주체로서 이중적 성격이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접근은 현대 행정의 발전 과정과 궤를 같이하면서 동시에 정부 주도의 기능적 한계를 획기적으로 극복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 2. 규제 기능 분담과 기술적 수단 활용

이용자 보호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수단은 데이터, 통신망, 시스템, 단말기 등을 구분하여 각각의 영역에서 규제적 조치를 요구하는 방식보다는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를 제조·공급·유통하는 주체에 대해 해당 기술과 서비스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가 글로벌 단위로 적용되고 공유됨으로써 개별 국가에서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리 요구사항을 부담시키는 것은 규제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와 기술이 영역을 불문하고 융합되고 있고 하나의 사업자에 의해 융복합된 기술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단절적으로 법적 규제를 부담시키는 것은 규제의 공백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수범자에 대해 중복적 규제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법률상 경직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방식의 규제체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화되는 기술과 서비스를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결국 해당 서비스에 의해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이용자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서비스의 내용이나 방식, 층위나 영역 등을 불문하고 당해 기술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에 대해 자신의 서비스 등으로 인한 위험을 관리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이 적절하고 합리적인 규제수단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은 최근 여러 법제도에서 도입하고 있는 위험관리체계나 위험에 대한 영향평가 등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기술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해당 기술과 서비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무엇인지 예측하고 위험의 수준을 평가 및 결정하고 위험의 수준에 따라 어떠한 조치들이 효과적으로 위험을 감소 또는 해소할 수 있는지,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어떠한 절차로 대응하고, 그 대응이 적절한 것인지 평가하고 환류하는 등으로 이루어지는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제도는 해당 위험관리체계의 구축 의무 대상자를 선별하는 것과 함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의 기준 등, 예를 들어 평가요소, 평가방법, 평가주체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위험은 사전에 관리를 통해 예방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발생할 가능성 자체가 높고 그 양상 또한 예측 불가능하게, 그리고 다양하고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술과 서비스가 공급된 이후에도 공급자에 의해 해당 위험의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적시에 조치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제도와 같은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법체계는 대부분의 경우 사전적으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기술과 서비스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법체계는 위험이 발생한 경우 위험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험을 감지하도록 하고,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한 대응조치를 미리 기획하도록 하는 방식의 규제체계가 적합하다.

한편 정보통신기술과 서비스가 모든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으므로 각각 분야별로 나타나는 새로운 유형의 위험을 대응하는 방식 또한 고려가 필요하다. 인공지능기술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분야별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정보통신기술이나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제는 분야별로 나타나는 현상과 특성을 고려하여 설계되는 것이 요구된다. 그리고 특정한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와 방식, 서비스화되는 과정에서 서비스의 내용, 대상 이용자의 특성, 활용하는 데이터의 차이 등으로 인해 위험이나 이용자 권익 침해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표준이나 인증제도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술표준이나 인증제도는 각각의 기술의 활용 방식이나 분야의 특성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전에 최소화한다는 점에서도 이점이 있고, 안전한 기술의 활용을 요구함으로써 기술 및 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도 유발할 수 있다. 기술과 서비스가 글로벌 차원으로 통합되고 있다는 점, 개별 기술과 서비스의 융복합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도 인증제도나 표준기술의 활용 의무화 등은 효과적으로 위험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다.

## 제 2 절 다원적·다층적 규제 거버넌스 모색

### 1. 디지털 융합 시대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디지털 융합 생태계와 현행 정보통신법 체계 간의 괴리와 수단적 한계점을 검토한 결과, 우리 정보통신법제의 연한이 이미 도과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경직되고 분산된 법률 중심의 규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서비스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는 규제의 공백 또는 중복을 초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혁신을 저해하고 이용자 보호에도 실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시장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되면서 개별 국가 차원의 규제만으로는 애초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국경을 초월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해 각국이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할 경우, 규제의 효과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여 시장경쟁을 위축시키고 이용자 보호에 충실을 기할 것을 기대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융합 시장 생태계의 특성과 국내 이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 즉, 서비스의 융합, 글로벌화, 기술 변화 가속도 등을 고려한 유연하고 효과적인 규제 거버넌스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2. 새로운 규제 거버넌스 수립 방향

디지털 융합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규제 거버넌스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첫째, 위험성(risk) 관리 중심의 접근법을 도입해야 한다. 기존의 경직된 법률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서비스 제공자가 자신의 기술과 서비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위험 평가 및 대응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전 예방과 상시적 관리의 균형을 추구해야 한다. 신기술의 위험은 완전히 예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사전적인 위험성 평가 및 예방 조치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사후적 대응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셋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설계가 필요하다. 기술 표준과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각 분야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규제 접근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는 융합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인 위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될 것이다.

넷째, 국제 협력 및 조화를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표준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를 국내 규제에 반영하는 한편, 국가 간 규제 정보 공유 및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글로벌 차원의 일관된 규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규제 거버넌스를 내실 있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 행정조직 자체의 통폐합을 고려하는 것과 더불어 — 주체와 방식 면에서 다원적이고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①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 융합 시장에 대한 정부 주도의 규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민관 협력 기반의 자율규제 체계를 활성화함으로써 규제의 정당성과 효과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②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분담 및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하고 규제 정보 공유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 또한 디지털 융합 서비스의 안정적 출시를 위한 효과적 장치가 될 수 있다. 끝으로, ③ 수직적·수평적 규제 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해야 한다. 부처 간 규제 조정 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며, 융합 분야 규제에 대한 통합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규제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융합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다원적인 규제 거버넌스는 여러 실천과제를 내포한다. 위험성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및 보급, 상시적 모니터링 및 대응 체계 관련 법제도 정비, 분야별 기술 표준 및 인증제도 개발 지원, 법 집행을

위한 국제협력 전담조직 설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규제 거버넌스 플랫폼 운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기술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규제 체계에 근접해 갈 수 있다. 디지털 융합 시대의 규제 거버넌스는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혁신과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포괄적이고 유연한 규제 거버넌스의 정착을 위해서는 기술 생태계와 법체계를 대조하여 부정합성을 진단하고 이를 기민하게 해소할 수 있는 ‘동적 입법 체계’가 필수적이다. 다원적·다층적 규제 거버넌스도 그러한 법체계 위에서 사회 각 계층이 협력하여 규범적·기술적 수단을 활성화하고 최적화하는 데 그 실질이 있다.

## 제6장 결론

본 연구는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디지털 융합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보통신법제가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여 향후 법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현행 법령을 규율 목적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제3장에서는 네트워크, 플랫폼, 콘텐츠를 축으로 한 디지털 융합 양상을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개별 법령 간 중복과 공백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제5장에서는 해외 입법례를 바탕으로 우리 법제 개선의 실마리를 모색하였다. 이를 종합한 결과, 현행 법체제는 급변하는 디지털 생태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전면적인 재편이 필요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현행 정보통신법제는 산업 간 경계를 전제로 한 수직적 규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과 부가통신을 이분화하고,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중심으로 한 규제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방송법」, 「전파법」, 「단말기유통법」 등 다수의 특수 법령이 개별 기능에 따라 각각의 규제 틀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디지털 서비스는 통신, 플랫폼, 콘텐츠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며, 예컨대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복합 플랫폼은 정보 유통, 네트워크 자원 활용, 광고·결제 기능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율하는 법령은 분산되고 중첩되어 있다. 이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적용 법령이 다수에 걸쳐 불명확하며, 규제당국 역시 효율적이고 일관된 집행이 어렵다.

둘째, 기술융합의 진전에 따라 기존 법체계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이 등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의와 법적 지위가 명확히 설정되지 않고 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서비스는 기존의 방송법이나 저작권법상 정의에 명확히 포섭되지 않으며, 가상현실 기반의 인터랙티브 콘텐츠

츠 역시 기존의 매체 중심 규제에서는 규율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AI 챗봇을 통한 의료 상담 서비스는 정보통신서비스, 의료행위, 개인정보 처리라는 복합적 성격을 지니지만, 각 영역의 법제는 이를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셋째, 동일한 서비스가 복수의 법령에 의해 중복적으로 규율되거나, 반대로 특정 서비스가 아무런 법적 기준 없이 운영되는 규제 공백 현상도 존재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각각의 의무를 부담하나, 그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한다. 반면, 디지털 광고 중개 플랫폼과 같은 신유형 서비스는 기존의 공정거래법 또는 정보통신 관련법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경쟁 제한이나 이용자 기만 행위에 대한 규제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넷째, 부처 간 정책·감독 권한의 분산으로 인해 규제 일관성이 부족하고, 디지털 정책의 통합적 집행도 어렵다. 예컨대, 통신망 및 설비에 대한 규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방송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관할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플랫폼 독점 문제와 같이 복합적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통일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법체계 재편을 제안한다.

첫째, 전체 정보통신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적 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는 디지털 네트워크, 플랫폼, 데이터, 인공지능 기술 등을 포괄할 수 있는 포괄적 개념들을 제시하고, 공통적인 규율 원칙과 권리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기본법은 개별 법령의 상위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며, 유연하고 일관된 규제 체계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둘째, 기존의 규율 목적 중심의 체계에서 벗어나, 실제 서비스 기능과 이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한 규율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예컨대, ‘데이터 기반 서비스’ 또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이라는 기능 단위로 규제 체계를 설계함으로써, 기술적 중립성을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위험에 기반한 규제가 가능해질 것이다.

셋째, 기술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자체의 동태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특정적인 조항 대신, 위험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을 바탕으로 한 범용 규율 원칙을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규제 샌드박스, 탄력적 법령 위임 등 유연한 입법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다기관 체제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정책과 법 집행을 총괄하는 상설 조정기구 또는 단일 컨트롤 타워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규제와 진흥, 감독과 지원 기능이 통합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특히 플랫폼과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글로벌 수준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제 개편은 단순한 규제 정비를 넘어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사회적 기본권과 공공성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알고리즘 설명 가능성, 정보접근권, 차별 방지 등 디지털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와 집행 메커니즘이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현행 정보통신 법체계는 디지털 융합 시대의 복합적인 기술·서비스 환경을 따라가기에는 구조적·내용적 측면 모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제는 단편적인 법령 개정이나 부처별 조치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법체계 전반을 디지털 시대의 원리에 맞추어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본 연구가 이러한 개편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하고, 향후 정보통신법제의 지속 가능하고 일관된 발전을 위한 정책적·입법적 논의의 활기에 일조하기를 바란다.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강하연(2010. 3. 16), “융합시대의 방송통신 통상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  
가칼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2022. 1. 11), “'22~'23년 인터넷망 상호접속제도  
시행방안 마련”.
- 권영준(2016),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제도에 대한 고찰”, 《법학논총》, 36(1),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pp.673~734.
- 김남철(2023), 『행정법강론』, 박영사.
- 김성수·이국현(2023), 『행정법』, 홍문사.
- 김태오(2014), “방송통신 규제기관의 최종결정권과 사법심사 - 독일 연방행정법원  
(BVerwG)의 규제재량을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 26(3),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pp. 107~142.
- 김태호(2008), “방송통신시장 경쟁규제에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 간의  
권한 배분”, 《경제규제와 법》, 1(2),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pp. 136~  
161.
- 김현경(2020), “정보주체의 권리보장과 ‘동의’ 제도의 딜레마”, 《성균관법학》, 32(3),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pp. 93~133.
- 김홍재(2023), “모든 것이 연결되는 똑똑한 집, 스마트홈”, 《Tech Focus》, Nov.,  
Vol. 1, pp. 4~9.
- 김희수 외(2010), 『통신환경 변화에 따른 상호접속 대가산정 모형 및 정책방향 연  
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나상우·신민수(2024), “시내공중전화의 보편적 서비스 유효성에 관한 연구”, 《정보사회와 미디어》, 25(1), pp. 23~49.
- 나선경·박민(2013), “행정 관련법령상 등록과 신고의 개념적 유형화”, 《공법연구》, 41(3), 한국공법학회, pp. 341~364.
- 《동아닷컴》(2021. 3. 19), ““양보 없다”…공정위·방통위 ‘플랫폼법’ 권한 다툼 장기전 조짐”, 2025. 1. 10, <https://www.donga.com/news/It/article/all/20210319/105963954/1>.
- 《디지털투데이》(2024. 8. 16), ““에밀리가 입은 옷 뭐지?” 넷플릭스 속 의상, 구글 렌즈로 찾는다”.
- 라성현 외(2023),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2023년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박균성(2024), 『행정법강의』, 제21판, 박영사.
- 박대석(2021. 10. 28), “데이터 주권과 감시 자본주의 시대”, <https://brunch.co.kr/@cosmobig/225>.(2023. 8. 29 접속).
- 박종석·유지호(2024), 『생성형 AI 열풍으로 성큼 다가온 온디바이스 AI』, LG경영연구원, 2024. 4. 8.
- 박지성(2023. 8. 20), “부가통신사에 보편역무 부과…민형배 의원 법안 발의”, 《전자신문》.
-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24. 5. 22), “방통위, 2024년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계획 확정”.
- 《브릿지경제》(2024. 6. 10), “SNS 본색은 커머스’… 유튜브·틱톡·인스타 쇼핑 기능 쏟아낸다”.
- 선지원(2021),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 방식에 대한 연구”, 《서울法學》, 29(2),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pp. 117~159.
- 송시강(2010), “주파수이용권의 성질과 효율적 전파관리제도”, 《행정법연구》, 제28호, 행정법이론실무학회, pp. 1~25.
- 송태원(2018), “인터넷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에 관한 법적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박사학위논문.

- 어기선(2022. 11. 24), “[역사속 오늘리뷰] 11월 24일 KT 아현지사 화재 발생”, 《파이낸셜리뷰》.
- 오승한(2006), 『전기통신시장의 사전규제 및 역무분류제도의 개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윤태영(2021),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중소·벤처기업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법학연구》, 15(3),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pp. 40~63.
- 이부하(2015), “ICT 법 체계 개선방안-현행 ICT 관련 법제를 고찰하며-”, 《과학기술법연구》, 21(3),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pp. 273-302.
- 이승민(2022),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중복규제 방지 방안”, 《경쟁법연구》, Vol. 45, 한국경쟁법학회, pp.3~42.
- 이상현(2017), “방송·통신 융합형 기업결합 규제에 대한 행정법적 고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대학원 법학박사학위논문.
- 이원우 편(2008), 『정보통신법연구 III』.
- 이은영·오선주·강서은·최형원(2023),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의 미래: M.I.L.E.”, 《Paradigm Shift》, Vol. 4, PwC Korea, 2023. 2.
- 《이코노미스트》(2024. 2. 10), “머스크, X ‘슈퍼 앱’ 밀기 나섰다…“몇 달 안에 전화번호 없앨 것””.
- 이호영(2014), “독점규제법상 ‘관련시장’ 획정의 의미와 입법적 개선”, 《법조》, 제 692호, pp.64~102.
- 이호영 외(2019), 『지능정보화 이용자 기반 보호 환경조성 총괄보고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희정(2008), “경쟁상황평가를 기초로 한 통신규제모델의 연구”.
- 《전자신문》(2021. 12. 2), ““OTT 자체등급분류제” 관계부처 이전에 7개월째 공회전”, 2025. 1. 15, <https://m.etnews.com/20211202000159>.
- 정보통신기획평가원(2020), 『ICT R&D 기술로드맵 2025 통신·전파』.

- 정완(2023), “Chat GPT의 법적 이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6(4),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pp. 329~355.
- 정원준(2023),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실질화 방안 연구”, 《고려법학》, 제108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pp. 293~330.
- 정인준(2014),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바람직한 규제정책 방향 - 이용약관 인가제를 중심으로 -”, 《경영법률》, 25(1), pp. 481~510.
- 정하중·김광수(2024), 『행정법개론』, 제18판, 법문사.
- 조영빈(2021), “AIoT 1탄, 가상과 실재를 아우르게 된 지능형 사물인터넷”, KT Enterprise, 2024. 12. 28, <https://enterprise.kt.com/bt/dxstory/925.do>.
- 주영선(2022), “개인정보 동의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42(2),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pp. 109~138.
- 최종희(2020. 4. 7), “[이슈분석]인터넷망 상호접속 제도 변천사”, 《전자신문》.
- 하명호(2024), 『행정법』, 제6판, 박영사.
- 《한국경제》(2024. 12. 3), “세계 첫 ‘온디바이스 AI’…언어장벽 허물었다”.
- 황보연(2023),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 제도의 개선 방안”, 《정보법학》, 27(3), 한국정보법학회, pp. 119~150.
- Apple(2024. 9. 16), “iMessage, RCS와 SMS/MMS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Apple. 2025. 1. 15, <https://support.apple.com/ko-kr/104972>.
- CISCO, “하이퍼컨버지드 인프라 소개”, 2025. 1. 13, [https://www.cisco.com/c/ko\\_kr/solutions/data-center-virtualization/what-is-hyperconverged-infrastructure.html](https://www.cisco.com/c/ko_kr/solutions/data-center-virtualization/what-is-hyperconverged-infrastructure.html).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20), “개인정보 기반 수익화 감시 자본주의”.
- YouTube(2024. 6. 5), “크리에이터의 수익 창출을 돕는 새로운 유튜브 쇼핑 기능들을 만나보세요!”, YouTube 한국 블로그, 2024. 12. 30, <https://youtube-kr.googleblog.com/2024/06/youtube-shopping-kr-update.html>.

[외국 문헌]

Akman, Pinar(2019). *Competition Policy in a Globalized, Digitalized Economy*. World Economic Forum. 2019. 12.

BEREC(2024a). *BEREC Report on Cloud and Edge Computing Services*. 2024. 10. 3.

\_\_\_\_\_(2024b). *BEREC Report on the entry of large content and application providers into the market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2024. 10. 3.

Beschokov, Mukhadin(2024), “What Is Converged Infrastructure? Guide By Wallarm.” Wallarm, 2025. 1. 13,  
<https://www.wallarm.com/what/what-is-converged-infrastructure-guide-by-wallarm>.

Bottaro, Juan Pablo and Karthik Ramgopal(2024). “Musings on building a Generative AI product.” LinkedIn, 2025. 1. 11,  
<https://www.linkedin.com/blog/engineering/generative-ai/musings-on-building-a-generative-ai-product>.

Busch, Christoph, Inge Graef, Jeanette Hofmann and Annabelle Gawer(2021). *Uncovering blindspots in the policy debate on platform power*. European Commission.

Butler, Brandon and Susan G. Middleton(2023). *2023 Enterprise NaaS State of the Market: As Adoption Continues, Benefits of As-a-Service Models Crystallize*. IDC.

Capgemini Research Institute(2023). *Networks on cloud: A clear advantage*.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2023). *Trends in Digital Markets: A CMA Horizon Scanning Report*. 2023. 12. 14.

-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2024). *AI Foundation Models- Technical update report*. 2024. 4. 16.
- Dash et al.(2024). “Bringing AI-powered answers and summaries to file previews on the web.” Dropbox, 2025. 1. 11, <https://dropbox.tech/machine-learning/bringing-ai-powered-answers-and-summaries-to-file-previews-on-the-web>.
- Ericsson. “Network Functions Virtualization(NFV) explained.” 2024. 12. 13, <https://www.ericsson.com/en/nfv>.
- EVIDENTLY AI. “ML and LLM system design: 500 case studies to learn from A database of 500 case studies from 100+ companies.” 2025. 1. 11, <https://www.evidentlyai.com/ml-system-design>.
- Faktor, Alon(2024). “Unlocking knowledge sharing for videos with RAG.” Vimeo Engineering Blog, 2025. 1. 11, <https://medium.com/vimeo-engineering-blog/unlocking-knowledge-sharing-for-videos-with-rag-810ab496ae59>.
- Federal Trade Commission(2024. 1. 25), “FTC Launches Inquiry into Generative AI Investments and Partnerships.” 2024. 12. 11, <https://www.ftc.gov/news-events/news/press-releases/2024/01/ftc-launches-inquiry-generative-ai-investments-partnerships>.
- Google Home, 2025. 1. 15, <https://home.google.com/explore-devices/>.
- GSMA(2023). *The Mobile Industry and AI*.
- Hassan, Adnan(2024). “Using Predictive and Gen AI to Improve Product Categorization at Walmart.” Walmart Global Tech Blog, 2025. 1. 11, <https://medium.com/walmartglobaltech/using-predictive-and-gen-ai-to-improve-product-categorization-at-walmart-dc9821c6a481>.
- James, Anju, Hussain S Nayak and Nagendra Singh(2023). *Future of connected world with AIoT*. Wipro Lab45 Think Tank. 2023. 12.

- Justins, Adrian(2023. 5. 29). "How to choose between Apple HomeKit, Google Home and Amazon Alexa." *Financial Times*.
- Kirchheimer, Evan, and Richard Mahony(2023). *The Future of Telcos and the Cloud: New Business Models and Paths to Growth for 2030*. Omdia. 2023. 2.
- Kowalski, Klaus, Cristina Volpin and Zsolt Zombori(2024). "Competition in generative AI and virtual worlds." *Competition Policy Brief, No. 3/2024*.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pp. 1~13.
- Murthy, Rathi(2024). "Traveling Just Got a Lot Smarter with Romie." Expedia Group Technology, 2025. 1. 11, <https://medium.com/expedia-group-tech/traveling-just-got-a-whole-lot-smarter-with-romie-dfb9b21c07c5>.
- Nicoletti, Giuseppe, Cristiana Vitale and Carolina Abate(2023). *Competition, regulation and growth in a digitized world: Dealing with emerging competition issues in digital markets*.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752, OECD. 2023. 3. 14.
- OECD(2016). *Digital Convergence and Beyond: Innovation, Investment and Competition in Communication Policy and Regulation for the 21st Century*. OECD Digital Economy Papers, No. 251. OECD Publishing.
- OpenAI(2023). "written evidence(LLM0113)", UK Parliament, 2025. 1. 15, <https://committees.parliament.uk/writtenevidence/126981/html/>.
- Plum Consulting and Stratix(2023). *Study on the trends and cloudification, virtualization, and softwarization in telecommunications*. BEREC. 2023. 12. 7.
- Schneider, Josh, and Ian Smalley(2024. 2. 12). "What is hyperconverged infrastructure?." IBM, 2025. 1. 13, <https://www.ibm.com/think/topics/hyperconverged-infrastructure>.

- Submarine Telecoms Forum(2023). “2023/2024 Industry Report, Issue 12.” 2023. 10. 25.
- The Verge*(2024. 6. 11). “Apple is bringing RCS to the iPhone in iOS 18.” 2025. 1. 15,  
<https://www.theverge.com/2024/6/10/24171315/apple-messages-rs-ios-18-imessage-green-bubble>.
- UK Parliament(2024. 2. 2). “Communications and Digital Committee Large language models and generative AI, 1st Report of Session 2023-24,” 2025. 1. 15, <https://publications.parliament.uk/pa/ld5804/ldselect/ldcomm/54/5402.htm>.
- World Bank Group(2023). *Digital Progress and Trends Report 2023*. 2024. 3. 5.
- Yasar, Kinza, Alexander S. Gillis, and Gerry Christensen(2023). “artificial intelligence of things(AIoT).” TechTarget, 2025. 1. 11,  
<https://www.techtarget.com/iotagenda/definition/Artificial-Intelligence-of-Things-AIoT>.
- Yu, Changlong, and Zheng Li(2024). “Building commonsense knowledge graphs to aid product recommendation.” Amazon, 2025. 1. 11,  
<https://www.amazon.science/blog/building-commonsense-knowledge-graphs-to-aid-product-recommendation>.

## [법령·판례 등]

-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19234호, 2023. 3. 14., 일부개정]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833, 판결.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법률 제18475호, 2021. 10. 19., 제정]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제2008-44-222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50호, 2024. 1. 30., 일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20151호, 2024. 1. 30., 일부개정].

「전파법」[법률 제20067호, 2024. 1. 23., 일부개정].

「정보통신기반 보호법」[법률 제18870호, 2022. 6. 10., 일부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60호, 2024. 2. 13., 일부개정].

「H.R.7913 - Generative AI Copyright Disclosure Act of 2024」.

## [웹사이트]

공공데이터 포털, <https://www.data.go.kr>.

# Abstract

## ■ Title

A Study on the Integration and Reorgan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Law in the Era of Digital Convergence

## ■ Purpose of Research

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Korea's dual ICT legal framework, which has been maintained for approximately 40 years through incremental amendments. As digital convergence accelerates across network, system, service, and data layers, the current fragmented regulatory system creates overlapping regulations and regulatory gaps for emerging digital services. The research seeks to analyze the convergence patterns of networks, data, and services from both technological and regulatory perspectives, and propose directions for integrating and restructuring Korea's ICT legal framework to reflect the evolving digital ecosystem structure.

## ■ Main Outcomes of Research and Policy Implications

The study will provide a comprehensive analysis of digital convergence

ecosystem characteristics and examine seven key ICT laws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Data Protecti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ct on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Data Industry Promotion Act, Mobile Device Distribution Improvement Act, and Radio Waves Act) to identify regulatory inconsistencies and instrumental limitations. Based on this analysis, the research will propose a restructured legal framework that categorizes digital convergence ecosystem components as regulatory subjects and systematizes effective legal instruments for each domain. This research will serve as the foundational step for reflecting digital convergence ecosystem changes in positive law, offering directions for consolidating fragmented ICT regulations and eliminating redundant or obsolete provisions while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regulatory framework suited to the digital convergence market.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기본연구 안내

### ■ 2022 기본연구

- 기본연구 22-01 탈통신시대, 통신기업 성장 전략 효과 분석: 인수합병을 중심으로 (김민희)
- 기본연구 22-02 지리공간적 측면을 고려한 5G 시대의 주파수 관리 정책방안 연구 (박지현)
- 기본연구 22-03 방송법 내 다양성 정책의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성욱제)
- 기본연구 22-04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설계의 쟁점과 정책방향: 분산원장기술 적용의 영향과 디지털 금융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설계 방향(박동욱)
- 기본연구 22-05 ICT 투자가 지역 균형 발전에 미치는 영향(장재영, 박소연)
- 기본연구 22-06 디지털 전환기 일자리의 변화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문아람, 김미경, 조유선)
- 기본연구 22-07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데이터 채택 영향요인 연구 (한은영, 김나연)
- 기본연구 22-08 특허데이터를 활용한 ICT 부문 기술정책 제언: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노희용, 박지원)
- 기본연구 22-09 TV 시청 관습의 변화 및 영상콘텐츠 이용행태의 다양화에 대한 연구 (김남두, 이소은)
- 기본연구 22-10 OTT 시대의 방송·미디어시장 공정경쟁 환경 조성 방안 연구(황유선)
- 기본연구 22-11 기술패권 경쟁시대의 글로벌 디지털 의제 분석 및 우리나라 ICT 외교의 시사점 연구(강하연, 김병우)
- 기본연구 22-12 이동통신 미래 시장환경변화 예측 및 산업 활성화 요소 연구(여재현, 김지환, 조수정, 장희선, 박의환)
- 기본연구 22-13 통신 이용자보호를 위한 이용정보 제공 강화 방안 연구(염수현, 강인규, 황정현, 전주용, 최현홍)

### ■ 2023 기본연구

- 기본연구 23-01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역할분담과 정책 개입영역 연구 (윤성욱, 박소연)
- 기본연구 23-02 해외 주요국 신규 사업자 이동통신시장 진입 효과 분석(김민희)
- 기본연구 23-03 유사국 사례를 통해 본 북한 통신시장 발전 방안 연구(임동민, 서소영,

이종화, 조대근, 서홍수)

- 기본연구 23-04 메타버스 시대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인격권 논의를 중심으로 (권은정, 한혜지, 계인국, 김법연, 이승민)
- 기본연구 23-05 디지털화폐 생태계 변화에 대응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정책 연구(박동욱)
- 기본연구 23-06 ICT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임금격차(최지은, 이은영, 최세림, 이현옥)
- 기본연구 23-07 데이터 생산·관리 역량 평가를 위한 성숙도 모형 개발 연구(노희용, 장신재, 박지원)
- 기본연구 23-08 인터넷 생태계 환경 변화에 따른 네트워크 인프라 비용 분담에 관한 연구(염수현, 강인규, 이상규, 김태오)
- 기본연구 23-09 미디어 이용 조사의 모드 효과 비교(신지형)
- 기본연구 23-10 방송미디어분야 자율규제 제도화 방안 연구(이종원)
- 기본연구 23-11 이동통신 네트워크 인프라 산업 생태계의 전환 방향 연구(여재현, 박지현, 윤도원, 장희선, 김선우, 정인준, 박의환)

## ■ 2024 기본연구

- 기본연구 24-01 AI 반도체 생태계 조사(윤성욱, 김민식, 민대홍)
- 기본연구 24-02 인공지능 감시에 의한 권력의 확대와 그 규범적 대응방안 연구 (문광진, 허진주, 전민경)
- 기본연구 24-03 시청각미디어 콘텐츠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수익 배분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강준석)
- 기본연구 24-04 온라인 광고 시장의 경매 경쟁에 대한 연구(백소성)
- 기본연구 24-05 기술진보에 따른 산업별 업무 변화 연구(서영선)
- 기본연구 24-06 5G 요금제 특성이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단말기와 요금제의 결속을 중심으로(박진환)
- 기본연구 24-07 방송 프로그램 장르 구분의 타당성 검토: 방송법과 방송사업자 및 수용자의 장르 분류 기준 차이를 중심으로(황현정)
- 기본연구 24-08 생성형 AI가 미디어 분야에 미칠 영향에 대한 탐색적 연구(곽동균, 김남두, 주성희, 황현정, 강하연, 김예빈)
- 기본연구 24-09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물자산토큰(Real World Asset) 시장의 탈중앙화 금융 알고리즘 적용 가능성 연구(김 찬)
- 기본연구 24-10 AI 반도체 정책의 효과성 제고 방안 연구(정현준, 김민식, 오정숙)



● 저 자 소 개 ●

---

권 은 정

-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서울대 법학과 석사
- 서울대 법학과 박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 지 원

- 한양대 법학과 졸업
- 한양대 법학과 석사
- Universität Regensburg 법학과 박사
- 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법 연

- 광운대 법학과 졸업
- 광운대 법학과 석사
-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공학박사,  
법학과 법학박사
- 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연구교수

박 상 미

- 경희대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 경영학과 석사
- 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김 지 훈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고려대 법학과 석사
- 고려대 법학과 박사
- 현 법무법인(유) 세종 수석전문위원

기본연구 25-04

디지털 융합 시대 정보통신법제의 통합과  
재편에 관한 연구

---

2025년 2월 일 인쇄

2025년 2월 일 발행

발행인 김 정 연

발행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정통로 18

TEL: 043-531-4114 FAX: 043-535-4695~6

인 쇄 인 성 문 화

ISBN 979-11-7000-421-9 93320

---

<비매품>